

2017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PART. 3

아시아 · 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수입규제 조치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우리 경제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하여 전 세계 수출 6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4강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를 기치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과 인도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新남방·新북방정책 등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산업·에너지·통상을 연계한 통상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한·미 FTA 개정협상,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도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무역장벽보고서(제1권)와 분야별·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된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해외현지 공간으로부터 수집된 전 세계 94개국 통상제도와 동향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각국의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본서를 읽고 계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안과 최신 정보 공유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 윤 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Contents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중동

• 중 국	2
• 일 본	144
• 뉴질랜드	171
• 대 만	184
• 라오스	199
• 말레이시아	216
• 몽 골	254
• 베트남	270
• 스리랑카	308
• 싱가포르	323
• 인 도	342
• 인도네시아	367
• 카자흐스탄	443
• 캄보디아	470
• 키르기스스탄	492
• 타지키스탄	501
• 태 국	510
• 투르크메니스탄	525
• 파키스탄	549
• 파푸아뉴기니	569
• 필리핀	585
• 호 주	604
• 홍콩	617

3

아시아·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중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중국 경제현황

2017년 1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6.9%로,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양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6.5%를 훨씬 웃도는 성적이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3차 산업이 7.7% 증가했으며, 공업생산 증가치는 하이테크 산업과 장비 제조업이 각각 13.4%, 12%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유형별로는 소매가 예상보다 낮은 9.5% 성장한 반면, 온라인 소비는 25.5% 증가하면서 소비를 주도했다.

중국 경제는 1980~2015년까지 35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이어오는 등 양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급과잉, 지방정부 부채 확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2017년 중국 경제정책방향을 확대재정 및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결정했으나, 기업부실, 1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 과열, 유동성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미국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긴축적 통화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과열양상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3선 및 4선의 중·소규모 도시는 부동산 재고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對 중국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는 2008~2010년 사이 급증 이후 2015년부터 재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 회담 후 양국이 ‘100일 계획’ 협상기간에 진입했으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중국 무역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는 곧 중국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 농산물 수입 제한 등 무역 제재뿐 아니라, 중국내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 제재 등 보복조치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가 6%대 성장 속에서 연착륙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유동성 개선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월 24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A1은 한국(Aa2)보다 두 단계 아래 등급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도가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향후 5년의 잠재성장률이 약 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전고후저(前高後低) 양상을 띠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앞두고 목표치인 6.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운용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종합방안」 및 「인터넷 +」를 발표하고 정보화·스마트화·핵심기술 위주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상해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에 이어 광둥, 천진, 복건성을 추가 FTZ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50% 이상을 축소하는 등 시장개방 실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중 FTA와 중·호주 FTA 타결 및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국가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국내 중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인프라·

금융협력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000억 달러), 실크로드기금(400억 달러)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북경-천진-하북성 일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상해에서 충칭에 이르는 장강경제벨트 등 지역 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경제는 공급측 구조개혁, 투자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을 둔화로 경기하방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안 및 시장변동성 등이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및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성장방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기조에 따라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외국인 투자 정책을 통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사용, 세금 및 직원교육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동부 연해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한 토지용도를 상업, 관광 및 양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경쟁당국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수입수요 감소, 중국의 대외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마련된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IT, 보건의료, 환경, 금융,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집약, 중소 제조업,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소비, 서비스 중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기업 진출 전략을 전환하고,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징진지 협동발전 등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 중국경제 주요지표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7.7	7.4	6.9	6.7
	GDP	억 위안	568,845	636,463	676,708	744,127
	1인당 GDP	US\$	6,569	7,485	8,026	8,126
	정부 부채	억 위안	86750.5	-	-	273,300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0	1.4	2.0
	민간소비증가율	%	13.1	12.0	10.5	10.4
	도시등기 실업률	%	4.1	4.1	4.05	4.1
대외 경제	수출실적	억US\$	22,096	26,428	22,750	21,353
	수입실적	억US\$	19,504	19,602	16,820	15,247
	무역수지	억US\$	2,592	3,825	5,930	6,106
	외국인투자금액	억US\$	1,175.9	1,195.6	1,262.7	1,260
	총 외채	억US\$	8,631.0	8,955	14,162	14,207
	외환보유고	억US\$	38,200	38,400	33,304	30,105
	이자율	%	6.0	6.0	4.35	4.35
	환율	US\$	6.0969	6.1190	6.4936	6.9182

주 1) 2015년부터 중국은 외채통계방식을 변경하여 '전면적 외채' (全口徑外債)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2) 이자율은 1년 만기 대출금리 기준임.

3) 환율은 인민은행이 공시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중간가 기준임.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CEIC(글로벌데이터베이스), 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 등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6년까지 64억 달러에서 2,114억 달러로 약 33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약 77배가 증가했다. 다만 2016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7.0% 감소하였다.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유가하락, 글로벌 생산거점 이동, 중국내 과잉 생산,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인해 2015년 대비 9.3%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어려워진 양국관계, 우리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대중 수출이 2016년 동기 대비 8.1% 감소하였다(2017년 10월 누계 기준). 이와 같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를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2단계 협상(2013년 10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중 FTA은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역·투자협력 외에도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기업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된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지재권·인력·검역·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2017년 대중국 투자는 상반기 신고기준으로 12.9억 달러였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의 대중국 투자 누적금액은 76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누적액(1992~2016)은 556.4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2위 투자대상국이다. 한중 수교(1992) 이후 저임노동력 활용 목적의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중국의 임금 상승, 선별적 투자유치정책(2005~)으로 최근 3년간(2014~2016) 연평균 31.4억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부 집계기준으로, 누계 7,704개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전체 진출기업의 30.2%에 해당하며, 베트남·인니 등 아세안국가로 투자가 분산되는 추세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 중 대중 투자비율은 37.7%였으나, 2016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반면 아세안의 경우 2005년 9.9%에서 2016년 12.6%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거 2000년 산동, 천진, 요녕, 길림 등 진출 업체 비중이 전체 투자기업의 55%(누적 집계)를 차지한데 비해, 2014년에는 37%(누적 집계)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강소성, 상해 등 동남지역으로의 진출과 섬서성 등 중서부지역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0년대 당시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업체 수 기준)이 각각 86%와 9.8%이었으나 2013년에는 각각 77%와 20%로 두 업종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대중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기업 규모별 투자 누적금액은 대기업이 308억 달러로 중소기업(200억 달러)에 비해 약 1.5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4년부터 대기업 투자 금액이 중소기업을 추월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의 투자보다 약 2배 더 많다. 넷째, 중국의 임금상승, 세금혜택 축소,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도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9.8억 달러, 2016년에는 2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비중은 적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금융거점을 경유한 중국기업의 투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1~2014년 동안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금융·유통·문화콘텐츠·전기전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의료·문화콘텐츠·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물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세율은 HS 8단위기준 2014년 760개, 2015년 749개로 축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787개, 2017년에는 822개로 증가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805개로 축소 예정), 평균 잠정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7년 관세조정방안에서 혁신과 발전의 이념과 국내수요가 많은 선진설비, 중요부품과 에너지원재료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잠정세율방식으로 집적회로시험선별설비, 항공기용 압축작동기, 고해상도디스크방식디지털영화상영기부품, 열분해로, 천연 코르크마개 등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또한 중국소비자의 구매선택 다양화를 위해 금붕어, 북극새우, 크랜베리 등 특색식품과 조소품 원료 등 문화소비재의 수입관세도 인하하였다.

또한 중국민의 의료와 건강관심을 반영 항암약생산에 필요한 주목피와 줄기, 당뇨병치료약에 필요한 아카보탄수화물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다. 관세가 국내산업 보호작용을 발휘함을 고려 국내산업발전과 기술진보 상황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잠정세율 적용받던 제3나트륨폴리머, 변화 기능이 있는 반도체구조, 변성에탄올 등 상품의 수입관세세율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다. 2017년부터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및 천연흑연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하며, 삼원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적절히 인하하였다. 따라서 크롬철 등 213종 수출상품에 수출관세를 징수하며, 이중 50종은 잠정세율이 '0%'이다.

또한 소맥 등 8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수입관세율은 불변하였고, 이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환준세를 적용한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기, 방직, 목재 등 여러종의 상품에 적용하였다.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17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7개로 증가하였고, 세목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¹⁾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다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FTA실시와 관련 2017년 중국은 25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이 중 중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의 FTA에 따른 관세인하를 하였으며, 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이 변화 없는 중국과 싱가포르, ASEAN, 칠레의 FTA 및 APTA도 있다. 동시에 홍콩, 마카오의 영관세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ECFA에 따른 상품범위와 세율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중국이 2016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일부정보기술상품(ITA상품)의 최혜국세율 최초 인하는 2017년 상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제2차 인하를 실시하며 총 280여 상품에 적용된다. 세율인하 상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1) 중국의 품목분류항목 수 현황: 2013년 8,238개, 2014년 8,277개, 2015년 8,285개, 2016년 8,294개, 2017년 8,547개.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의료기자재, 계측기기 등이다. 2017년에도 APEC 환경상품 관세양허에 따라 수입 잠정세율을 계속 실시하며, 최빈 국가 영관세우대를 지속 적용하였다.

➡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	
1993.12	35.9	16.8	2,898
1996. 4	23.0	35.9	3,371
1997.10	17.1	26.0	4,900
1999. 1	16.7	2.4	4,874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
2002. 1	12.0	21.5	3,462
2003. 1	11.0	8.3	5,332
2004. 1	10.4	5.4	3,000
2005. 1	9.9	4.8	2,414
2006. 1	9.8	0	900
2007. 1	9.8	0	143
2008. 1	9.8	0	47
2009. 1	9.8	0	45
2010. 1	9.8	0	16
2011. 1	9.8	0	6
2012. 1	9.8	0	8
2013. 1	9.8	0	
2014. 1	9.8	0	
2015. 1	9.8	0	

자료: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중국 정부는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볼 때 MFN보다 낮은 잠정세율에 해당되는 품목(HS코드)이더라도 중국세관에서 해당 품목분류에 예외사유를 들어 잠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년 11월부터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터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화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 제3차 관세인하가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4,28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있었고, 발효 이후 매년 관세인하가 지속되어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기준), 90.7%(중국수입기준)에 대해 관세 0%가 실현될 예정이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성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월 1일부로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 관리방법(機電產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 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

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產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년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부터는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 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임시수출입화물관리방법(海關총서령 제212호)」에

근거하여 전시용 (임시)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고 기계 · 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產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1998년 11월 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질검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2016년 1월 1일 발효)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5)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리,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입항지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6)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 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2014년부터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그리고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2002년 1월 1일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중국은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3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 중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돌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한 7가지 품목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관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은 PVC, ECH(에피클로로히드린), 비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다. 이 중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2003년 7월 1일 반덤핑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두 번째의 일몰재심을 거쳐 13년째 반덤핑 조치가 실시 중이다.

또한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인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스타이렌모노머(SM), 니트릴고무(NBR)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덤핑 관세 부과제품 중 아크릴 섬유는 현재 중간재심 중이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정교해진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2016년 7월 방향성 전기강판의 반덤핑에 대한 판정결과가 최종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변경되는 등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가)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 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는 없어졌다.

▶ 중국의 세목

구분	내용	관련 세금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房産稅), 도시재산세(城市地方産稅), 차량선박세 등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차량취득세, 인지세, 계약체결세 등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등
목적세류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도시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교육세 등

(나)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 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특별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 소형저이윤기업: ① 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원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원 이하, ② 비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원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000만원 이하
- 소형저이윤기업은 2017년까지 소득의 50%를 감면하고 20%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한·중조세조약 제23조)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되지만,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 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이자·배당·특별배당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3,500위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800위안)액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산재보험비, 고용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3~45%)을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5~35%의 누진세율

▶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5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라) 부가가치세(增值稅)

중국은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세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 5월 1일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면전환을 실시하였다.

○ 과세대상

- 중국 내 과세재화 판매 또는 수출, 과세용역 제공,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

○ 세율

- 6%, 11%, 13%, 17%로 상이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국외에 제공하고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영세율 또는 면세
- 소규모 납세자 또는 부동산 임대는 3% 또는 5%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비용처리만 가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 · 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도 다수의 AP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는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種類表)’ 또는 ‘지방종류표(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제도 실시

(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가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25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195개 국가지정 시험기관이 있다.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

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전동 기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8. 오디오·비디오 설비
9. 정보기술장비	10. 조명기기	11. 자동차 제품 및 부품	12. 타이어
13. 강화유리	14. 농기구	15. 통신단말제품	16. 소방제품
17. 방범 제품	18. 무선 제품	19. 장식용, 인테리어 제품	20. 완구

중국 정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6월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년 6월 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CFDA)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오토바이 헬멧, 전기 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을 12월에는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를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현재 CCC 인증대상 품목은 20개 분야 161개 품목이다.

다만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로 CCC 인증을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7년 8월에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LED조명 기기에 대한 CCC인증서가 발급되었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 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Rohs의 특징은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초과해도 관계 없으나 관련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7년 3월부터 전자정보제품은 제품 포장에 6대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마킹을 해야 하며 설명서에 관련 내용 기재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 적용대상이 백색가전을 포함한 전체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추후 중국 당국에서 마련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CFDA의 화장품위생허가

2008년 국무원 기구 개혁·화장품 위생감독관리 직책이 위생부에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SFDA)으로 바뀜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로 SFDA가 허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2013년 SFDA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总局, CFDA)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동 업무를 CFDA가 맡고 있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CFD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CFDA는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CFD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CFDA의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이 행정허가는 9706.1/16886/0505 등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 감찰국(SESА)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설비에 대해 중국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 (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7)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NAL은 중국 산업정보부(MII)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에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된 바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8)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가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하였다. 2009년 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법(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하였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

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하여 실행하며, 법정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이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되어 아직 미제정된 국가 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9) 에너지효율라벨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04년 8월 13일에 발표된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의인증

(1)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자율인증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 자율인증을 받는다.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CQC라는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받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CQC인증은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으면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CQC 인증을 획득하면 CCC인증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중국안전기술방법인증중심(CSP)

중국안전기술방법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은 「중화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법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기술 방법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 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 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최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338개 지급 이상 도시 중 84개 도시의 공기 질은 환경기준에 도달하였고, 이는 전체 도시의 24.9%에 달한다. 반면 254개 도시의 공기 질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75.1%를 차지한다. 338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균 우량 날씨 비율은 78.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대비 2.1% 증가된 수치이다.

강우모니터링은 전국 474개(구·현)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산성비 도시 비율이 19.8%이고 산성비 빈도는 12.7%로 나타났다.

전국 지표수 1,940곳에 대한 조사결과 I급·II급·III급·IV급·V급과 하위 V급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2.4%, 37.5%, 27.9%, 16.8%, 6.9%와 8.6%로 나타났다. 한편 6,124곳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결과 매우우수·우수·비교적 좋음·비교적 나쁨·매우 나쁨범위에 각각 10.1%, 25.4%, 4.4%, 45.4%와 14.7%가 해당되었다. 지급 이상 도시의 897곳의 집중 생활식수 수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811곳이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90.4%에 해당한다. 봄철과 여름철 제1유형 해수수질 기준에 도달하는 해역 면적은 중국 관할 해역 면적의 95%를 차지하였으며, 연안 해역의 417개 점위를 I급·II급·III급·IV급·하위IV급 으로 분류한 결과 각각 32.4%, 41.0%, 10.3%, 3.1%와 13.2%로 나타났다.

한편 322개 지급 도시에 대하여 지역별 낮 소음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평균치는 54.0 데시벨이고, 320개 도시의 낮 도로교통 소음 모니터링 결과 66.8 데시벨로 나타났으며, 309개 도시에 대한 기능별 소음모니터링 결과 낮 모니터링 기준 도달율은 92.2%이고 밤 모니터링 기준 도달율은 74.0%로 비교적 낮았다.

전국 삼림면적은 2.08억 헥타르이고, 삼림 복개율은 21.63%에 이른다. 초원 면적은 4억 헥타르에 달하고 이는 국토 면적의 41.7%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각종 자연보호구가 2,750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육지면적은 전국 면적의 14.8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 급 자연 보호구는 446개로 육지면적은 전국 육지면적의 9.97%에 달한다.

환경관리 법제 및 정책 추진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 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 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

방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 보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폐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인 만큼 그 시행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이라고 하며(2014년 12월 31일, 전국환경부서장 화상회의),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²⁾.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환경세수법 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강도는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

요지	주요 내용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정돈, 대중참여,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규정
환경목표책임제 실시	각 지방정부에 환경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 실시하며, 현금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해당 지급시 정부와 인민대표에 환경수준과 환경보호 목표완성 현황을 보고·공개
환경오염 처벌강화 및 위반기업 공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기준도 1회성 부과에서 벌금결정액에 위반일을 곱하여 산정. 기업의 위반기록을 사회에 공개 하는 등 처벌 대폭 강화
사회감독기능 강화	민간환경단체(5년이상 환경활동 참여)는 공해물질 배출 기업, 환경파괴,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

2)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 「신환경보호법」(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 법규

환경보호법 관련조항	법규(문건) 명칭 및 공포일
제25조	환경보호부령 제29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5조	환경보호부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0조	환경보호부령 제30호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59조	환경보호부령 제28호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2014년 12월 19일
제63조	공안부 「행정주관부서의 행정규칙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2014년 12월 24일
제43조	국가발전개혁위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 2014년 9월 1일
제45조	재정부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2014년 12월 31일(2015년 3월 1일 시행)
제58조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2014년 11월 27일(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47조	최고인민법원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2014년 12월 26일
제47조	환경보호부령 제32호 「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2014년 12월 19일(2015년 3월 1일 시행)
제52조	「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등록관리방법」, 2015년 1월 9일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 「환경피해검증평가추천방법(제2판)」, 2014년 10월 24일
	「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2014년 12월 31일
	국무원 「환경관리집법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2014년 11월 12일
	국무원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2014년 8월 6일
	국무원 「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2014년 12월 27일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개정을 완료하여(2016년 시행),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V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 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발이용에 대한

13.5계획기간(2016~2020년) 중 환경분야 중점 과제로는 핵안전, 토양환경 보호, 생태환경 보호, 수환경 오염방지, 식품안전 등이 전망된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년 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 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 조례는 국무원령 제 682호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 작성방법, 환경영향 보고표 작성방법 및 환경영향등기표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기업은 동 조례를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2) 청정생산제도

2003년 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 심사방법」을 2004년 8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 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자 2003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표 등 심사지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백색가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2016년 7월 시행),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년 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 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 조치, 순환경제발전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 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 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 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환경행정처벌판법(2010년 3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환경보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유형은 △경고, △벌금, △생산중지, △생산시설폐쇄, △생산 관련 허가증 말소, △위법 소득세 몰수, 위법 재산몰 몰수, △행정구류 등이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시 행정처벌 주체는 현금이상 환경보호국이며, 행정처벌 절차는 ①입안, ②조사와 증거수집, ③고지와 공청회, ④행정처벌 결정, ⑤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랙리스트 공표, 통관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과 연계하는 등 강력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집법 사후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기업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가 요구된다.

환경관련 중장기 추진정책

(1) 13.5 계획의 정책목표

중국은 그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생태환경 여건과 대중들의 요구간의 격차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기존의 생태환경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7일에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 내용 속에 구속력이 있는 10개의 환경분야 목표 및 지표를 포함시킨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13.5계획의 생태환경분야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동 계획을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은 기존 양회시 발표된 계획을 기반으로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13.5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 등 관리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 “13.5” 생태환경보호 주요지표

지표		2015년	2020년	[누적] ¹	속성
생태환경질					
1.대기환경	지급 이상 도시 ² 의 대기질 우량 달성비율 (%)	76.7	>80	-	구속성
	초미세먼지 기준미달의 지급 이상 도시의 농도 감소 (%)	-	-	[18]	구속성
	지급 이상 도시의 중오염 이상 오염날씨의 비율 (%) ³⁾	-	-	[25]	권고성
2.수질환경	지표수질 ³ 의 3급 이상 수체의 비율 (%)	66	>70	-	구속성
	지표수질의 5급 미만 수체 비율 (%)	9.7	<5	-	구속성
	중요 하천 및 호수 기능구역의 수질기준 달성비율 (%)	70.8	>80		권고성
	지하수 수질 극히 나쁨 비율 (%)	15.74	약15	-	권고성
	근해안 수역의 우량 (1,2급) 비율 (%)	70.5	약70	-	권고성
3.토양환경	오염경작지 안전이용률 (%)	70.6	약90	-	구속성
	오염토지 안전이용률 (%)	-	90이상	-	구속성
4.생태현황	산림피복률 (%)	21.66	23.04	[1.38]	구속성
	산림축적량 (亿立方米)	151	165	[14]	구속성
	습지부유량 (亿亩)	-	≥8	-	권고성
	초원 종합식물 피복률 (%)	54	56		권고성
	중점생태기능구역 소속지역의 생태환경 현황지수	60.4	>60.4	-	권고성

지표		2015년	2020년	[누적] ¹	속성
오염물질총량					
5. 주요오염 물질 배출총량 감축 (%)	화학적산소요구량	-	-	[10]	구속성
	암모니아	-	-	[10]	
	이산화황	-	-	[15]	
	질산화물	-	-	[15]	
6. 지역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	중점지역 중점업체 VOCs5	-	-	[10]	권고성
	중점지역 총TN6	-	-	[10]	권고성
	중점지역 총 TP7	-	-	[10]	
생태보호 및 복구					
7.국가 중점 야생동물 및 식물 보호율 (%)		-	>95	-	권고성
8.전국 자연해안선 보유율 (%)		-	≥35	-	권고성
9.신증 사막화 토지관리 면적 (만km ²)		-	-	[10]	권고성
10.신증 토양유출 관리면적 (만km ²)		-	-	[27]	권고성

注 : 1. []내의 수치는 5년 누적수치

2. 대기질 평가는 전국 338개 도시(지, 주, 연맹 지역의 일부 직할 현, 시로서 산사 및 잔저우를 포함하지 않음)

3. 수질환경평가는 전국 지표수 국가통제 단면을 포함하며 단면수량은 “12.5” 기간의 972개에서 1940개로 증가함

4. 2013년 데이터

5. 중점지역 중점업체를 대상으로 VOCs 총량통제를 추진하고 전국 배출총량 10% 이상 감축

6. 해안56개 도시 및 29개 과도 영양화된 수고를 대상으로 TN 총량통제 실시

7. 총 TP가 통제단위 초과 및 상류 유관지역을 대상으로 TP 총량통제 실시

(2)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3~17년)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3) 푸른색은 신설, 적색은 수정된 내용을 나타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무원은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체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mu\text{g}/\text{m}^3$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년 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⁴⁾,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였다.

(3) 수오염방지 행동계획(2020, 2030년)

2015년 4월 2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통지를 통해 2020년, 2030년까지 추진할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행동지침인 「수오염방지 행동계획(水十条)」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0개 중점 조치(추진전략), 238개항 구체적 조치를 포함(개선 또는 강화 조치 136개항, 개혁 또는 창의적 조치 90개항, 연구성 조치 12개항)하고, 오염배출의 전면적 통제·관리를 위해 4대 중점분야,

4) 관련기업 가운데 따탕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즉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 △농업/농촌오염, △선박/항구오염 분야에 대해 분야별 방지, 관리, 억제,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혁조치로는, 1)자연자원 사용용도 관리, 2)수자원 절약, 집약사용 제도 개선, 3)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원환경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 구축, 4)자원 유상사용 제도 실시, 5)생태보상제도 실시, 6)환경시장 발전, 7)생태환경 보호사업의 사회자본 유치 확대, 8)오염배출 관리제도 보완, 환경관리와 행정집행의 독립, 9)육지해양 생태시스템 보호 복원 및 오염 방지구역 연합 메커니즘 구축, 10)환경정보 공개, 신고제도 강화, 11)오염 배출 허가증 제도 강화, 기업단위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 실시, 12)배상 제도 실시, 법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 등을 담았다⁵⁾.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대 조치 이행에 4~5조 위안을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은 2016년 3월 17일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최근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 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관리 현대화 등이다. 주요 기준(지표)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한 13.5규획의 생태환경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질, 지표수 수질,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 삼림발전 등 4개의 구속성 기준외에 토양분야 생태상황, 지역별 오염물질 총량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를, 자연해안선 보호, 사막화도지 관리면적, 물토양 유실관리 등의 지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환경산업 투자여건

(1) 환경보호 발전 배경

13.5 규획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 부록에 해외도시 수질정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 청계천을 비롯, 영국 런던 템스강, 독일 엠서강,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의 10대 목표 중 하나인 생태문명 건설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환경보호법>, <대기 오염방지 행동계획>,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 <토양오염 방지 행동 계획> 등의 실시가 환경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 세금 등 제도의 개혁이 환경보호 산업에 장기적인 원천동력을 제공하는 바, 특히 국무원에서 발표한 <가격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에서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에 유익한 가격 체계를 구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호 산업의 잠재적 수요를 현실시장으로 전환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에서 <당과 정부간부의 생태환경 손해책임 추궁방법>을 제정하여 당과 정부 간부의 자원보호 임무를 강화하고 손해시 책임 추구를 강화하였다. 환경 오염 제3자 관리, PPP(민간협력프로젝트)방식을 추진하여 환경서비스업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무원 판공청에서 <환경오염 제3자 관리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고 사회자본의 환경보호 산업에의 투입을 확대하여 환경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보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유관부서에서 발행한 <석탄발전소 초저배출과 에너지 절약 개조 업무 전면 실시 방안>, <석탄발전소 초저배출 전기가격 지원정책 관련 문제의 통지>,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사회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등 환경관리 임무를 제시하고, 국가에서 전기가격 보조정책을 통해 석탄발전 기업이 제3자 관리 방식 등을 이용하도록 격려하고,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방식을 이용하도록 적극 격려하여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2) 환경보호 산업상황

산업 규모를 보면 2015년 중국 환경보호 제품 판매 수입은 4,700억 위안, 환경보호 서비스 영업 수입은 4,900억 위안으로 총 9,600억 위안이며, 그 중, 수질오염관리 산업 판매가 약 2,950억 위안, 전기집진기 판매가 약 144억 위안, 백 필터 집진기 판매가 약 120억 위안, 석탄연기 탈황탈질 이 약 466억 위안, 자동차오염방지가 약 750억 위안, 유기폐기관리가 약 100억 위안이다. 지역 분포를 보면 ‘일종일횡’ 특징으로 ‘일종’은 동부

연해지역 즉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环渤海) 3대 주요산업 집합지가 형성됨. 강소, 절강, 광둥, 산둥, 북경, 상해 등이 환경산업 발전 발원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일황’은 장강유역의 중서부지역으로 주로 중경, 사천, 호남, 호북 등 도시로 산업 발전 속도가 뚜렷하다. 영역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환경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공급능력분야는 집진, 연기탈황, 도시오수처리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장 특징으로 산업 발전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장비가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발전해 있고, 환경서비스업이 양호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기업측면에서 보면 환경산업 일부 영역은 투자과열로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 및 수질분야는 상당 부문 중소기업들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중복기업이 많다. 증치세 우대 정책의 변화가 환경보호 기업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기업 합병 현상이 증가하고, 국영기업의 환경보호 산업 진출이 빨라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자기업의 중국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5규획에서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기업의 독과점방식이 가져오는 비효율 문제 등을 혁파하여 향후 공공성이 강한 환경산업시장에도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워 민영화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3) 기술수준 발전 현황

수질오염 방지분야는 2015년 말, 도시오수처리장의 일처리 능력이 13,784만 m^3 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고, 도시오수처리율이 91%에 달해 0.8% 향상됨. 기술 분야에서는 막 개발, 막 생물 반응기 연구 및 공정화응용 등 핵심 연구개발에 혁신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분야는 전기 집진기, 백 필터 집진기 및 복합집진기가 주요 공업 집진 설비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5년 전기집진기 생산기업은 200개 이상이나 50위 이상기업의 생산액이 전국 전기집진기 총생산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공업 석탄 소형 보일러가 47만대 이상으로 1년간 소각석탄이 약 18억 톤이다. 고체 폐기물 처리를 보면 2014년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1,055개로 평균 처리

량이 110톤/일, 총 설치용량이 4,300MW이며, 2015년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운반량은 1.92억 톤이고,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량이 1.8억 톤이다. 그 중, 매립처리량이 1.15억 톤으로 63.9% 차지, 소각처리량이 0.61억 톤으로 33.9% 차지, 기타 처리방식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무해화 처리율이 93.7%로 2014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소음 및 진동 분야는 주로 철도, 도로교통, 전력산업 발전소, 야금, 전자재, 화학 공장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저감하고 있으며, 환경 모니터링 분야는 최근 설비의 국산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자동화 수준이 낮은 등 문제가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복원은 일부 기업에서 연구 및 응용을 하고 있지만 연구비용 및 복원 비용의 제약을 받아 현재는 공사 규모가 매우 작으며, 기업의 토양복원 관련 기술, 경험,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토지의 상당량이 복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분야의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환경서비스업은 국가에서 제3자 관리, 환경오염 관리 시설 운영 사회화, 시장화,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환경산업제조업보다는 환경서비스의 번창이 기대된다. 특히 하수나 폐수처리장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민관 협력기금의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수익분기점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경보호 산업의 문제 및 개선사항

현재의 중국 환경시장에는 입찰 등에 있어서 악성 저가 경쟁이 심각하고, 품질 또한 낮은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경쟁력은 부족한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환경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법과 조직이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으며, 이는 국유기업의 독과점에 의존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구조가 비합리적이며 환경분야에 여전히 경쟁, 효율, 민간자본투입 등 시장요소가 부족하고, 이를 관리할

법이 완벽하지 않다.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재정과 세무 우대 정책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많은 조치를 세워 환경보호 분야 저가입찰의 혼미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에서 시장에서 급히 필요한 환경보호 기술의 연구개발에 자금지원을 해야 하며, 국가표준, 산업표준 등 환경표준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환경보호 산업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도록 환경산업을 육성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다수의 거대 환경기업을 육성시켜 이를 중심으로 환경기술, 서비스 등을 경쟁력있게 육성시켜 나가는 스마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출처 : 중국 환보산업, 2016년 9월)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중국의 자동차 시장현황

2016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실적은 2,731만대 수준이며, 판매량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2,723만대에 달했다. 이중 승용차판매량은 2,413만대, 트럭은 240만대, 버스는 49만대 등이다.

중국내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공업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 향후 연간 생산량이 4천만대에 이를때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5월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1000만대에 이르렀으며, 연말까지 3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매년 9~10%성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편으로, 현재 주요한 자동차 구매자는 2~30대 젊은 층이 다수이며, 이들은 대부분 1인 자녀 출신으로 이들의 취약한 구매력을 부모세대가 보완해주는 경향이 있어 중국산 브랜드들은 주로 이런 소비자를 겨냥하여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음.

중국산 브랜드의 품질향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비가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최근 중국 현지 브랜드 승용차의 약진으로 해외 브랜드의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38%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였고, 2015년 중국의 자동차 수입량은 106.7만대로 전년대비 25.2% 감소하였다. 2015년 전체 자동차산업의 설비가동률은 63.4%로 낮은 편이나, 외국계 합작회사의 가동률은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2015년 국가 브랜드별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중국 41.3%, 독일 18.9%, 일본 15.9%, 미국 12.3%, 한국 7.9%, 프랑스 3.5% 순이다.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로 자동차 시장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과거 고속성장에서 향후 중고속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로 2020년까지 연평균 6~7%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 중국 자동차 생산 · 판매(내수) · 수출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생산 대수(만대)	1,927	2,211	2,373	2,450	2,731
증가율(%)	4.6	14.8	7.3	3.3	14.3
판매 대수(만대)	1930	2198	2349	2459	2723
증가율(%)	4.3	13.9	6.9	4.7	13.5
수출 대수(만대)	101	94	94	75	80
증가율(%)	19.4	-6.9	-0.2	-20.3	7.8

* 출처 : 자동차 공업협회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 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2003년 52.5%에서 2006년 7월 1일부로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2)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전략

과거 중국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3强-3中-3小’의 내연기관 완성차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브랜드로의 기술이전 부진, 해외 브랜드 추격에 실패하며 자동차산업 육성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13.5 계획 중점프로젝트 상의 신혼산업 발전분야에는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13.5 계획 중점프로젝트 상 자동차 관련 내용

-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계획 실시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권장
- 전기자동차(Blade Electric Vehicles, B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를 대대적으로 발전
- 모터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고·저온 적응성 등 핵심기술 중점 발전
- 표준이 일치하고 서로 겸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시설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 지속적인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신에너지 누적 생산판매량을 500만 대로 증가
- 신에너지 자동차 폐기 배터리 회수처리 강화

중국 정부는 신기후체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GDP의 5.6%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발전의 장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발전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를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량 200만대, 누적생산 및 판매량 500만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설치,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를 말한다. 2016년 중국내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은 51.7만대(전년대비 52% 성장), 판매는 32.8만대(전년대비 86% 성장)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BYD는 7.4만대, Geely는 5만대의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이 두 개사를 포함하여 1만대 이상 생산 기업이 총 6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BYD, GEELY, 북경기차는 신에너지승용차 업계의 선두주자로 판매기준 글로벌 10대 메이커로 자리매김하였다.

▶ 2016년 신에너지승용차 시장 판매 상위 10개사

순위	업체명	판매량	순위	업체명	판매량
1위	BYD	100,178	6위	상해기차	20,017
2위	GEELY	49,218	7위	강회기차	18,369
3위	북경기차	46,420	8위	강소소즈키	15,608
4위	ZOTYE	36,999	9위	장안기차	4,931
5위	QIRUI	20,963	10위	동풍기차	4,347

* 중국 자동차업계 신식망(auto.gasgoo.com)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판매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접목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금액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경우 중앙 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등 총 9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차량 구매시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300~400위안 정도의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북경시, 상해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에 가까운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추첨 없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보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중국 전역에는 약 2만 6천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북경시에 충전시설은 집중되어 있는데 북경시의 경우 2017년말 현재 충전소 1,873개소, 충전기 1만7천여 개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충전소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육성 정책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차 생산의무 부과, 배터리 업계 대형화 유도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2020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현재의 20%,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50%를 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충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집중식 충전소 1.2만개 이상, 분산식 충전기 480만개 이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 각 성시별로 충전소 설치 장려금을 확대하고, 장려금은 충전 기초 설비 운영, 리모텔링, 전기충전 서비스 운영 감시 시스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4종 4형으로 나누어 도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소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도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9인승 이하 내연기관 차량을 연간 5만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까지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간 100만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항속 거리 250km 이상의 전기차를 약 2만대 이상 생산하여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자동차 탄소배출거래제도를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바, 가솔린차 생산 및 수입 수량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기업에 대해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축소 의무량을 부여하고 이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채우거나 탄소배출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대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중소형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조건,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규범기업 인증을 해주고 있다. 최근 연간 8GWh 이상의 셀 생산규모를 인증기준으로 규정하려는 등 대형기업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중이다.

철강

(1) 「철강산업 13.5 계획」 발표

2016년 11월 14일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6~2020년)간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근간이 될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철강산업 계획」의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철강산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 계획」으로 대체하여 산업발전의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조강 생산능력은 2015년 11.3억 톤에서 2020년 10억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조강능력이 1~1.5억 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조강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계획에서도 2020년 조강 생산량은 7.5~8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8억 톤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 「철강산업 12.5규획」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번 「산업 구조조정 13.5규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이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강사의 생산기지 분포의 최적화, 스마트제조 발전과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함께 강화하고 철강사의 합병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철강사의 합병을 통해 10대 철강사의 집중도를 2015년의 34%에서 2016년 60%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철강산업정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은 추진력과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철강산업은 정부가 희망하는 합리적인 산업분포 및 생산능력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3.5규획은 중국 철강산업의 대국에서 강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시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강사들도 적극 기술연구, 신제품개발,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투자기회도 증대될 전망이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정책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협력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 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철강사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수준을 강화하며 무역구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외개방에서 해외우량기업이 국내 철강사의 지분참여, 지배주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중국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배치조정 등 구조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의 과학기술 및 관리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내수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수출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각각 119건(전년동기대비 37% 증가), 14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6% 증가)이다.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49건(전년동기대비 32% 증가), 79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3% 증가)이다. 2016년 한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2016년 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 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ASEAN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적은 뉴질랜드, 브라질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4) 철강산업 구조조정

2017년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최대 화제는 단연 구조조정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억~1.5억톤의 과잉 철강 생산시설 감축, △철강 및석탄 관련 인력 180만명 재배치, △대형 철강국유기업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특히 2016년 보강강철-무강강철 합병에 따른 초대형 철강사의 탄생과 조강생산능력의 감축이다. 2016년 6월 27일 중국의 대표 철강사인 보강(중국 조강생산 2위)과 무강(6위)은 합병을 발표하여 2016년 2월에 정식으로 보무강철을 설립했다. 두 철강사 모두 중앙정부 소속 철강사이고 합병 후 생산량 6,100만 톤 규모(2015년 기준)인 초대형 철강사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개혁 및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강과 무강의 합병으로 향후 판재류 위주의 제품구조와 고부가가치화 시장지배력 확대(합병 후 시장 비중: 방향성전기강판 80%, 자동차냉연강판 65%, 가전용강판 35%, 철도용 궤조 24%) 및 경쟁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보강의 경영관리 노하우가 무강에 전수되면서 무강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2016~20년)간 조강능력을 1~1.5억 톤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연이어 역대 구조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2016년 한해 조강능력이 9,600만 톤 감축되어 중앙 정부의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실제 감축량에 대량의 띠티오강(地条钢)⁶⁾ 생산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띠티오강 생산능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우선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타깃으로 구조조정 강화하자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지방정부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1월 10일 중국 발개위 및 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2017년내 모든 불법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산업발전의 요구표준에 미달한 생산능력의 감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조강능력 구조조정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5)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수출세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점차 제한하는 추세이다. 2017년 현재 스테인리스와 고부가가치 특수강은 15%, 합금철은 1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했으며 2010년 7월부터 일부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했다.

섬유·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유

6) 띠티오강은 철스크랩을 원료로 소형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 강재를 총칭한다. 띠티오강은 정부의 품질규정에 미달하여 생산이 금지되는 강재이다.

산업화 및 응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 산업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성품 의류의 경우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년 5월 20일 공고를 통해 2005년 6월 1일부터 동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 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년 5월 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년 6월 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년 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년 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발동기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EU 수출 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2006년 1월 1일부터는 52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상기 2005년 6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의 효력이 2007년 말로 만료돼 2008년 1월 1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으로 시장 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서 중국내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무역 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시장 특성 및 최근 트렌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며, 이에 최초 진출 시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장

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인식이 부족한 시장으로서 특허권, 상표권의 침해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짜제품을 모아서 파는 소위 ‘짜통시장’이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자·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월 31일 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 인증의 장벽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 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 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3)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우대

가전제품 농촌판매 강화(家電下鄉) 정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중저가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크게 신장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가전하향 등 정책의 지원 기준도 중국 국내 브랜드의 기술 수준 및 가격 수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2003년 10월 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 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은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동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년 3월 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학물리스트」(GB 12268):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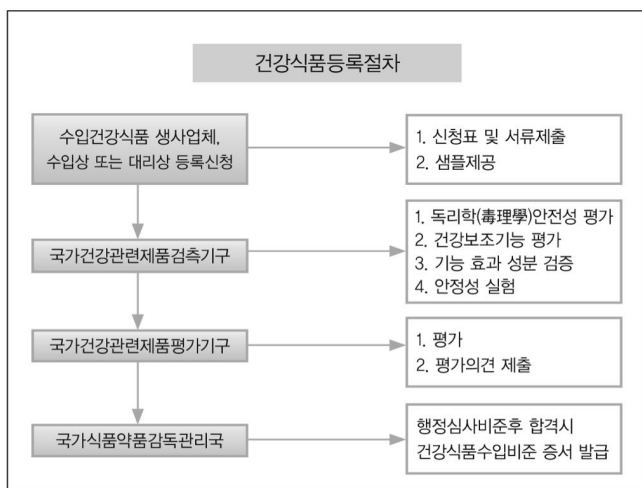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신자원식품관리제도)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2016년까지 신자원식품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년 8월 위생부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삭제하여 2013년 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치의 경우도 관련 식품기준(대장균군 기준)을 개정하여 2015년 12월부터 수입이 가능해 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 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및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AQSIQ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을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년 7월에는 2005년 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籤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 표시 심사증서’는 4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籤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AQSIQ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於對進口食品標籤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증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 조정으로 중국의약품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C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 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 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로이다.

C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CFD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CFD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CFD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2015년 6월 발표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중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최초등록비용이 두배 가량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3등급 의료기기의 최초등록비가 중국제품의 경우 약 15만원인데 반해 수입제품은 약 30만원에 달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가 지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4~8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최소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최소 8개월~1년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 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일반화장품의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업체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부가가치세 17%의 고율의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4년 8월 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여 수입 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도(기능성) 화장품 재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장품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고 기존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2006년 5월 1일 까지 발급신청이 종료되었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2010년 4월 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잔류농약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발표된(2016년 12월 1일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화장품위생규범(2007)’의 개정판으로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 미국, 일본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하여 수정되었다. 개정된 법은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준용원료, 이화학, 미생물, 독리학, 인체안전성, 효능 평가 검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일부 새로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화장품 안전관리정책이 반영되었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이와 같은 화장품 정책변경사항을 숙지하여 높아지는 화장품 비관세장벽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6년 4월 중국 CFDA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을 발표 하면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 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즉,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 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세 부과 기준은 시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발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수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자원세 부과기준을 변경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전광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숲·초원·갯벌 등 자연 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세 종가세 적용은 자원의 판매 기준가격에 따른 광산별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 희토 생산 총량 정책 운영

덩샤오핑(鄧小平)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37%, 세계 시장 점유율 90%이상의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을 통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는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 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출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하였고, 2014년 3월 6일 WTO는 중국에게 “협정 위반”을 판정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희토 수출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2015년 5월 1일부로 기존 15% 수준인 희토의 수출관세도 폐지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사회의 불공정무역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재편을 준비하여 2014년 4월 1일 「全国大型稀土集团组建“1+5 方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 희토생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바오토(包头)지역은 국유기업인 바오강(包钢)이 주축이 되어 북방희토집단을 구축하고, 그 외 5개 지정기업은 우광(中国五矿), 중궈(中铝公司), 간저우희토(赣州稀土), 광둥희토(广东稀土), 샤먼우에(和厦门钨)이며, 이들 6개 희토기업은 중국 희토생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국유 대기업은 지역별 산재된 영세 또는 민영 희토 광산과 희토 분리·정제 기업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합병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2016년 말 기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무원의 검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희토 생산총량 비준량은 희토광산물 11.5만 톤, 희토 분리·정제 제품 10만 톤이며, 이들 6개 집단에 각각 99.8%, 99.1%가 배정되었다. 이들 6개 대형집단은 전체 23개 광산 중에 22개, 전체 분리·정제기업 59개중 54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말 기준 전체 매출액은 22억1800만 위안(약 3,747억 원)에 불과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나 하락하였고, 영업이익도 부진하며 우광(五矿)희토 등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 채광 및 생산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등의 불법생산에 힘입어 생산재고량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영업체의 생산 및 출고조절로 희토시장은 보다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굴, 선별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현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 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조달기관은 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급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한다.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정리하면 재정부와 중앙정부 직속 5개 기관과 31개 성급 정부조달 중심, 그리고 수백개의 시·현·구급 정부조달중심 및 입찰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약 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단일공공조달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국유기업조달, 군수조달 등은 정부조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대리기구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조달센터(政府採購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標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약 3,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⁷⁾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7)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증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2014.8.31.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개정 주요내용은 정부조달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 관련부서에서 자격 검정된” 부분을 “집중조달기관(集中采買機關) 이외의”로 개정하는 등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축소하고 시장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3개 조항을 개정되었다.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7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자체조달을 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⁸⁾ 경쟁성 담판, 단일 구매,⁹⁾ 가격 조회,¹⁰⁾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 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중국 정부의 입찰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입찰 정보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
- 8)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여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한다.
 - 9) ①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②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③간접한 수요인 경우, ④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 10)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 참고: 중국 주요입찰정보 사이트

URL	주무기관	운영기관/ 위탁업체	내 용
www.ccgp.gov.cn	재정부	중국정부구매	중국정부구매 대표사이트
www.chinabidding.com	상무부 및 재정부	중국국제입찰	국제입찰 위주
www.caigou2003.com	재정부 산하업체	정부구매정보망	정부조달 국내입찰 위주
www.ctba.org.cn	발개위	중국입찰투찰 협회	중국입찰 제도 및 정책
www.cgpnnews.cn	재정부	정부구매신문망	정부구매 관련 사항

중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 동서격차, 구조적인 부패, 상대적인 박탈감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꼭 36년 만에 시진핑 새 정부에게 성장모델을 대전환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consumption),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의 3C로 요약된다.

중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2015년은 당초 목표인 7.0%에 못미친 6.5% 성장한 바, 정책기조도 고속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연안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및 기반시설과 의료시설의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중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로 이주한 많은 농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農民工)’라는 이름으로 도시 저층 노동계급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보험 등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문화혜택과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중국은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누적되어, 몇 년 사이에 북경을 비롯한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스모그를 시작으로 환경오염이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조달 △시설공사 입찰 △토지 사용권 및 광업권양도 △국유재산 소유권거래등 5개 분야 전자화 촉진을 위해 「통일적인 공공자원교역 플랫폼 구축 및 통합 조정에 관한 업무지침(整合建立統一的公共資源交易評台工作方案的通知)」을 발표하고, 공공자원 교역플랫폼 구축은 2016년 6월까지 지방 각급정부가 공공자원 교역플랫폼의 통합조정 업무를 완성하는 한편, 2017년 6월에 전국 통일적인 교역플랫폼을 완성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전자입찰을 포함한 공공자원 교역활동의 전자화를 통해 공공자원 거래 비용절감은 물론 공공자원 교역의 법제화, 규범화, 투명화를 추진하여 공공자원의 효율 및 효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달 트렌드(trend) 변화

2015년 중국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00년초 중국의 「정부조달법」을 시행한 이래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달시장규모는 조달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2조 위안을 초과한 21,070.5억 위안으로 2014년대비 21.8%(금액대비 3,765.2억 위안)이 증가한 규모로 국가재정지출의 12.0%수준이며, GDP의 3.1%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공급제도를 통한 조달

협의공급이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 물품, 수량 등을 선(先)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조달자와 공급자간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 방식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주축으로 하여 기존 조달방식인 공개입찰, 초청입찰(Restricted tendering), 경쟁성담판(Competitive negotiation), 가격문의(Request for quotations), 단일구매(Single-source procurement)에서 중앙정부 집중조달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 강화로 협의공급 및 지정구매를 통한 집중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협의공급시 경쟁성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공급을 축소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점점 많은 제품을 MAS로 구입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도 구매패턴이 협의공급과 지정조달로 확산되고 있다. 지정구매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제품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혹은 여러 공급자를 선결정하고 상기 선정된 공급자들과 지정구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¹¹⁾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달되는 주요 물품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설비, 공조기, 사무용품, 엘리베이터 등을 들 수 있다.

11) 2012 조달청 중국정부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 참고.

➡ 참고: 중국과 한국의 입찰 방식 비교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절한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절한 업체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 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경쟁성 담판	•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 •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임
가격 조희	•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 공급자 계약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
	•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 이고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협의 공급, 지정 구매	•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2) 용역(서비스)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2015년 중국조달시장 특징의 하나는 용역(서비스)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용역분야 중국조달시장규모는 3,343.9억 위안으로 2014년 동기대비 72.9%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통적 조달분야인 물품구매, 시설공사분야보다 월등한 증가폭을 시현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세를 시현한 주요원인으로는 중국조달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용역분야 진작을 위한 정책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중국 공공조달시장의 분야별 특징을 요약하면 서비스(용역)분야의 지속적 증가로 귀결되며, 특히, 중국 조달당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주관으로 서비스분야에서 확대를 위한 규정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신서비스시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3)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중국 정부의 정부구매력(Bargain Power)을 활용해 자원절약,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 각 방면에서 중국정부에서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경표지 및 자원절약제품 조달구매 확대를 위해 관련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의무(우선)조달 정책을 실시한 결과, 정부조달실적은 각각 1,346.3억 위안, 1,360.0억 위안을 조달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구매한 실적은 16,072.2억 위안으로 전체 조달실적의 76.3%를 점유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소상공인으로부터 6,564.6억 위안을 구매하였고 이는 전체 중소기업 조달실적 중 40.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제품 조달구매 촉진방법」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4)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확대

최근 중국은 도시·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PPP 확대하고 있으며, PPP사업확대를 중국경제성장 5대방안(△PPP사업확대 △효율적 재정대책 △지방부채관리 △세계개혁 △정책관리감독)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지하철, 부동산등 인프라분야 외국인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중국 민관협력사업 현황은 2016년 10월 현재 전체 투자규모(재정부+발개위)는 투자총액 12.7조 위안의 민관협력사업(PPP) 10,685여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주요 대상사업은 물, 에너지, 운송, 자연환경, 생태보호 등의 분야이다.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확대가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PPP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으나, 법적기반 미흡, 관시(關係)로 인한 관(官)과의 협력, 중국 현지업체와의 경쟁등 수 많은 리스크와 함께 수익성 담보도 불확실해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즉, 재무적 타당성 및 계약 조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PPP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민간 기업과의 거래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유망품목으로는 위험물·폐기물 저장장치, 오폐수처리, 전력망관리, 자동화점검시스템 등 기술 접목이 필요한 고기술·고기능 제품에 대한 납품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재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 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재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출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 중국 통신, 핸드폰 기업인 화웨이가 10개의 특허권에 기해 삼성전자를 선전에서 기소했고 양기업간의 특허 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의 2017년 4월 천저우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게 8천만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앞으로 중국안에서 지재권을 통한 영역다툼이 치열해질 것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한중 FTA 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 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재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재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 발명특허 출원(신청)은 526,41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발명특허 출원이 1,338,503건으로 2년 연속 백만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상표 출원은 330만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세계 1위 상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재권 출원은 2016년 기준으로 발명특허 14천건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며, 상표 또한 18천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특징

(상표법 개정)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담당 특허청)은 2011년 9월 중국 「상표법」 3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중국 전인대(국회)에 제출, 본 개정(안)이 2013년 8월 31일 전인대(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표신청·등록 관련 과정 간소화 및 행정감독 강화, 지리적 표시의 보호력 강화 및 악의적 상표 선등록 방지 등 상표 출원인의 편의 도모 등이다.

(특허법 개정)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담당 특허청)은 2012년 8월 「특허법」 4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식재산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이중 보호체계를 구현하고, 특허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재하고 있는 한편,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과 사회적 자원 절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안은 그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몇차례 담당부처인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반려된 바 있어, 언제 최종 확정될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재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재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재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136천건, 형사1심 사건은 8천건으로 증가하였다.

상표관련 분쟁사건은 상표권 등록 또는 확인의 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관련 침해소송과 상표권 등록 등 교차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전국 각급법원에서 접수한 상표소송 사건은 27,185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소송 사건도 86,989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하였다.

지재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재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도 중국의 지재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08년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제정한 후부터 지재권 출원량 등 양적 측면에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 (2014~2020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원, 지재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지재권 관리 효율향상, 지재권의 국제협력 확대 그리고 지재권 인력양성, 정보제공, 법제도 개혁 등 5개 분야에 걸쳐 2020년까지 중국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재권 법원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4년 북경·상해·광둥성 등 3개 지역에 지재권 전문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3개 법원은 관련 성·시 전체의 비교적 난이도 높은 특허소송 1심과 일반적인 지재권 소송 상소건에 대한 최종심을 관할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 「새로운 상황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2016년 7월에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점임무 분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지재권 담보대출 제도를 2008년에 시장에 도입하여 2014년도 기준으로 지재권 담보 대출액이 489억 위안(8조6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수 있는 중관춘에 지재권 전문펀드도 만들어지는 등 향후 중국에서는 지재권과 금융분야가 융합되는 펀드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은 독점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년 8월 1일)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년 1월, 607억 원), 茅台酒/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2월, 780억 원), 분유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담합(2014년 8월, 2,053억 원), 폭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4년 9월~2015년 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2015년 2월, 1조650억 원), 스위스 포장회사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016년 11월 1,10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

(Nokia) 휴대폰사업인수건에 대해 상무부가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부과(2014년 4월)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외국 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였다.¹²⁾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斷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약(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장지배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 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상무부(기업결합심사업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관련 독점행위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非가격 관련 독점행위와 부정당경쟁행위 업무)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직접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성급 관련부문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

12)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독점협약(카르텔)과 부당한 가격행위

독점협약(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약’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약’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독점협약’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약으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 거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독점협약’은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독점협약을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발개위는 반독점법상 규정된 자진신고관련 원칙규정을 규제화한 「수평독점협약 사건에의 리니언시(감면)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을 전부면제하거나 80% 이상 감경하고, 2순위 신고자의 경우 30% 이상 50%이하 감경하며,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 미만 감경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했던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부정당경쟁행위’에는 상업적 뇌물 제공, 부당한 표시·광고(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 경쟁자의 상업적 명예훼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 경쟁행위 등이 있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상담(商談)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상무부는 「기업결합 간이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2015년 기준 전체사건의 70%가량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심사기간도 기존 64일에서 52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무부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상무부의 사전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이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운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 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년 9월 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해운조례」를 제정, 시행(2002년 1월 1일)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 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既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

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 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 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 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 홍콩,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5년말 기준 중국은 아세아 43개국, 아프리카 24개국,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9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등 총 118건의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말 기준 중국 항공서비스 현황은, 정기여객노선수 3,326개(국제노선수 660개, 국내노선수 2,666개(홍콩·마카오·대만은 109개)), 민용공항은 210개, 보유항공기 2,650대, 국적항공사 55개사(국유항공사 41개, 민영항공사 14개)¹³⁾ 등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중국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6,062.5억 위안(항공사 4,363.7억 위안, 공항 801.1억 위안)이며 이윤은 487.9억 위안(항공사 320.3억 위안, 공항 106.8억 위안)이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13) 이 중 화물전용항공사가 7개사, 중외합작항공사가 12개사, 상장 항공사가 7개사 포함되어 있다.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년 10월 11일)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유통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KPMG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 일, 영, 독, 프랑스 시장을 합한 규모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17년 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7조 위안(약 970조원)으로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성장률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 성장중이며, 2016년 기준,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800억원)는 우리나라(65.6조원) 대비 12.2배의 규모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를 유지하는 “성숙기”에 들어섰으며, 거래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시장은 2012년 성장률이 64.7%로 가장 높고, 201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의류, 화장품, 출산, 유아용품의 해외직구 등 업종이 번창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국 의류 온라인 시장 거래 규모는 7,4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두 아이 정책의 실시로 출산, 유아 용품의 온라인 구매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출산 유아 용품 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었다.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개선되면서 수입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3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 및 행우세 조정정책(4月8日起實施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并調整行郵稅政策)」을 발표,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동 정책의 시행에 앞서 2016년 4월 7일 재정부, 발개위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를 발표했다. HS Code 8단위 기준, 총 1142개 제품으로 구성된 리스트에 식품, 음료, 보건식품, 의류 및 신발, 패션 잡화, 가정용 전자제품 및 화장품 일부,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병, 분유, 관련 용기 등이 포함된다. 기존과 달리 일부 식품, 화장품 및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 조건이 추가되었다. 2016년 4월 15일, 재정부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제품 2차 리스트」를 발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HS Code 8단위 기준 총 151개 제품 추가, 그 중 '보세구 해외직구에 제한'된 품목 62개, 수입량 제한품목 13개이다. 해산물, 우유, 로열젤리, 화분, 과일, 쌀, 인삼, 보건식품, 문구 등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쌀, 설탕 등 수입쿼터제 관리상품은 수입량 제한되었다. '유아용 조제분유'와 '약용 조제식품'도 CFDA '등록'이 있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투자 개방 여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의 분류 및 제한 사항에 따르고 있다. 유통서비스와 관련된 외국자본도입 관련 제한은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농산산물의 저온배송 등 현대물류 및 관련 기술서비스	장려형	-
2	농촌에서 직접 배송	장려형	-
3	팔레트와 패키징 유닛 공용 시스템 구축과 경영	장려형	-
4	직판, 통신판매, 온라인 판매	제한형	-
5	곡물의 매입, 곡물, 목화, 식물성 기름, 설탕, 담배, 원유,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의 도매 및 배송	제한형	-
6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의 건설과 운영	제한형	-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7	오일 제품 및 가솔린 제품	제한형	동일 외국투자자가 30개 이상의 매장을 설립하고 여러 납품업체와 다른 종류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외자비율이 49% 이하이어야 함.

외국 소매업, 도매업 기업이 대중투자를 진행할 경우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사업분야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심사수속을 거쳐야 한다. 본 「방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제한되었던 일부 전액 외자에 의거한 출자와 프랜차이즈 경영이 인정되고 지역제한과 로열티제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다만, 투자자의 인원수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경영규모에 따른 자본금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자비율이 동일한 외국투자자는 중국 국내에서 개설한 매장이 총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품목에 식품(쌀, 보리, 옥수수 등)과 식물성 기름이 포함될 경우 외자출자비율은 49%이하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자 도·소매업체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중·서부지역 40년).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국 국내에 직영매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제한성 조항이 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외국 도·소매업체가 직접 온라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매장 설립 시 인허가 심사도 중국 현지 기업이 기간 및 조건 면에서 유리하고 최저등록자본도 적다. 국제물류업 투자와 관련하여 외자에 여전히 높은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운송 및 물류업에서 외자도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도로화물운송업, 창고보관업은 장려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00% 외자 진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은 허가형으로 최저자본도 내국민대우를 실시하여 100% 외자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외자기업은 1년 이상 경영하고 등록 자본금이 완전히 입금완료 될 경우여야만 지점설립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다.

운송·물류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자자격의 인정 방법(中國民用 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認可辦法)」에 따라 중국 항공운송협회(中國空運協會)로부터 ‘항공 운송판매대리자자격(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00% 외자 출자 기업은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제를 두어 사실상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운송·물류 분야 관련 분류 및 출자비율 규제

업무내용		분류	출자비율 등에 관한 규제
1	도로화물운송	장려형	출입국 자동차 운송회사에 대한 투자는 규제
2	도로 여객 운송	제한형	-
3	철도 여객 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4	항공운송	장려형	외자비율 25% 이하
5	수상운송	제한형	외자비율 49% 이하
6	국제해상운송	장려형	합병, 합작만 가능함
7	국제 컨테이너 연결 운송업무	장려형	-
8	농림수산물 항공	장려형	합병, 합작만 가능함
9	자동화 고층창고시설, 운송업무관련의 보관시설, 경영	장려형	-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외자기업의 도로화물운송업과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관한 주요사항

도로화물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인 도로화물운송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 • 교통 주관 부처에서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취득 후 설립예정지의 성급(省級) 교통주관 부서에 도로운송경영허가증(道路運輸經營許可證)을 신청 •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의 경영기간은 통상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투자액의 50% 이상이 여객화물운송역(客貨運輸站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경우 경영기간은 20년까지 연장 가능
---------------------	--

국제화물 운송 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 500만 위안 (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300만 위안 (3)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 200만 위안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1년 이상 경영하고 등록자본금이 전액 입금 완료된 후 지점 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이 투자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제화물운송대리에 종사하는 자사를 1개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국제항공화물운송대리기업은 중국 항공운송협회로부터 '항공운송판매 대리 자격증(航空運輸銷售代理資格)'을 취득하여야 함. 다만 100% 외자 출자 기업은 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함.
-------------------	---

자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법률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시(2001년 11월)의 양허안과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 대표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에 따라 외국 로펌은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국 주재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중국법률사무¹⁴⁾를 포함하지 않는 다음의 활동이다.

- ①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14) 중국은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①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②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③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⑤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 ②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입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 ③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 ④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 ⑤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중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자문회사 혹은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 로펌(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할 수 없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어 완화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 중국 법률서비스분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등기를 마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해 연도 감사,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사법국 지정 시스템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등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 및 부동산

중국 건설시장은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도 건설기업 총생산액이 18조757억 위안(약 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9%

성장하였으며, 실현이윤은 6,508억 위안으로 1.57% 성장하였다. 건물 시공면적은 124.26억㎡, 건물준공면적은 42.08억㎡이다. 2015년말 현재 시공활동중인 건설기업은 80,911개로 0.28% 감소하였고 종업원수는 5,003.40만 명으로 10.3% 증가, 건설업노동생산성은 323,733위안/인오로 1.92% 성장하였다. 2015년도 중국의 GDP는 676,70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성장하였는데, 그중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이 46,456억 위안으로 6.8% 성장하여 2009년 이래 최초로 GDP 성장률보다 낮다. 그러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6%로 한국(약 4.5%)이나 OECD 평균(약 4.8%)보다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국 진출은 1991년 최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약 169.3억 달러(1,131건)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건축공사이며, 그다음이 설계·감리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 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이상, 1급은 5천만 위안 이상, 2급은 2천만 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 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 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등록 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러나 2005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외국 건설기업이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GS건설, POSCO건설,

SK건설, STX건설, 성도ENG, 현대건설, 삼성ENG, 삼성물산(건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① 전액 외국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②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③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④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이 중 ③과 ④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설립 절차는 ①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 부문)에 설립신청 ⇒ ②국무원 보고 ⇒ ③국무원(상무부)은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 결정, 허가서 발급(총 70일 소요) ⇒ ④허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성·시·자치구에 등록해 허가서 취득,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년 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 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년 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년 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인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

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 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중국은 위의 요건을 대부분 철회 또는 변경하였다. 외상투자 부동산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는 총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은 33.3%(그중 3,600만 달러 이하는 1,2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1천만~3천만 달러는 40%(그중 1,250만 달러 이하는 5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1천만 달러는 50%(그중 420만 달러 이하는 21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 달러 미만은 70%이상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대출 및 외환결제 비준조건도 등록자본금 완납조건을 취소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는 경외기구가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 및 경내근무자, 유학생의 상품주택구입 규제에 대해서도 경내 근무, 유학기 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별로도 계속 주택·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구입·부동산투자조건을 변경하고 있어서 최근의 정책과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신사업 진출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2017년 11월, 중국 정부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선물, 생명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같이 발표되지 않음). 주요 내용은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단일 지분 20%, 합계 지분 25%)을 폐지하고, 증권, 선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49%)은 단기적으로 51%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내에 폐지하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50%)도 3년내에 51%까지 확대하고 5년내에 폐지한다는 것이다.

2017년 6월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는 총 32개사이며, 이 중에는 은행 10개(현지법인 5개, 지점 3개, 사무소 2개), 보험회사 9개(현지법인 5개, 현지사무소 등 4개)이며, 그밖에 금융투자사(12개) 및 현대 캐피탈이 진출하여 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법인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10년간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 2006년말 26개 점포에서 2017년 6월말 현재 5개 현지법인 등 총 98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금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6월에는 세계최초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내 원화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가)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차입, 대여금고 제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나) 제약 조건

- 중국내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 미만이며, 대손충당금적립 비율 2.5% 준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Coverage Ratio 150% 등 엄격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 확대가 쉽지 않고, 각종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중국계 대형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에는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 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 증권업

QFII제도 도입(2002년 11월), 비유통주 개혁(2005년 4월), RQFII제도 시행(2011년 12월), 후강통 시행(2014년 11월), 선강통 시행(2016년 12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단,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경우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3) 보험업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년 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 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손해보험사에게도 허용되었다. 다만,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22개 외국 손해보험회사 중 8개사(한국계 2개 포함)에 대해 취급인가가 이루어졌다.

-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 보험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

- 중국내 대표기구 설립기간이 2년 이상
- 설립 신청전 연말 자산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할 것
-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관련 감독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와 설립 신청에 대한 동의
-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을 충족할 것
- 해외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지분투자에 참여할 경우
 - 재무현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연속 이익을 달성했을 것
 - 최근 1년 연말 자산총액이 20억 달러 이상
 - 국제신용평가기구 최근 3년간 장기신용등급이 A 이상
 - 최근 3년내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 기록이 없을 것
 - 소재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관리기준에 부합할 것
 -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國務院關於修改「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 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 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 위안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장거리·국제 유선 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 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자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통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 기타 전신서비스 · 인터넷 정보서비스 ·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년 5월 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는(5합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고,(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2009년 1월 7일 3장의 3G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 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 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 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3월 중국의 통신 3사가 발표한 201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통신 3사 2014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 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6,414	1.8%	1,093	-10.2%	17%	8.6	62.2%	61
차이나 텔레콤	3,244	0.9%	177	0.8%	7.5%	1.86	14.2%	55.1
차이나 유니콤	2,847	2.6%	121	15.8%	4.2%	3.0	23.3%	75.1

자료: 각사 2014년 연차보고서

4G 기술의 경우 중국은 3세대의 TD-SCDMA에서 진화한 TD-LTE를 4세대 기술표준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2006~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에 16대 중대 전문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TD-SCDMA가 여러가지 기술적 단점과 한계를 보이며 WCDMA, CDMA2000과의 시장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4G로의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에서 세계 최초의 TD-LTE 시범망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시연한데 이어, 2011년 3월에는 '6+1'도시 TD-LTE 대규모 테스트 계획을 발표, 심천(深圳), 항주(杭州), 상해(上海), 광주(廣州), 남경(南京), 하문(廈門) 등 6개 도시에서 TD-LTE 대규모 기술테스트를 추진하고 북경 장안가(長安街) 주변에 TD-LTE 시연망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기술테스트의 1단계(싱글모드 단말기 테스트) 및 2단계(다중모드 단말기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TD-LTE는 초기부터 Qualcomm, ST-Ericsson, Nokia-Siemens, Alcatel-sbell, Ericsson, Bharti Airtel, Softbank Mobile 등 세계적인 칩, 장비 업체와 해외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기술발전 및 산업화 과정이 TD-SCDMA보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10월 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12월 4일 China Mobile(中國移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년 12월 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도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년 5월 17일에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LTE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중국의 4G LTE

이용자 수는 1억7,796만 명으로 3개월 만에 6,000만 명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0.2% 증가하는데 그치고, 3G 이용자 수는 3.9% 감소한 상황에서 4G 이용자 수는 52% 상승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업(MVNO) 등 8개 분야를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1월 MVNO 사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2013년 5월 MVNO 시범서비스 방안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말 중국의 MVNO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약 400여 업체가 MVNO 사업권을 발급받았다. 특히 중국 1, 2위 가전 유통업체인 Suning, Gome를 포함해 Alibaba 그룹의 Hichina 등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Youku Todou 등 온라인 동영상 업체와 단말업체 Xiaomi까지 다양한 기업이 중국 MVNO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 11월 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년 9월 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 「전신조례」의 한계성

-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 문건(红头文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 현 공업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 조정 추진
-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성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년 9월부터 시행
-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신조례」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1.4월 「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둥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 2003년 「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년 7월 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계,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

진,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년 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총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송서비스 제공 ·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¹⁵⁾ 허가 신청 ·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15)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아날로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무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표
한데 이어 2011년 12월 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다.

▶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라오닝성 다롄시(遼寧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 푸젠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주저우·상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潭]地區), 광둥성 선전시(廣東省深圳市), 쓰촨성 멌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닙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라오닝성 선양시(遼寧省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甯市), 하이난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베트자치구 라싸시(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란저우시(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甯市), 닝샤자치구 인촨시(寧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爾自治區烏魯木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통시(南通市), 전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스시(黃石市), 셴닝시(鹹甯市), 셴타오시(仙桃市), 천먼시(天門市), 첸장시(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雲浮市)

(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이다.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2017년 1~4월 기준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9726개 社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실행 투자금액은 427.3억 달러로 5.7% 하락하였다.

최근 중국은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 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연도	금액	건수
2014	1,197.1	23,778
2015	1,262.7	26,575
2016	1260	27,900
2017(1~4월)	427.3	9,726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지남

▶ 2017년 1~4월 외자이용 통계

외자 이용 방법	신설 외국인 투자 기업(건)			실제 사용 외자 금액(억 달러)		
	2017년 1~4월	전년 동기	증감률 (%)	2017년 1~4월	전년 동기	증감률 (%)
합계	9726	8298	17.21	427.32	453.03	-5.68
1. 외국인직접투자	9726	8298	17.21	427.32	453.03	-5.68
중외합자기업	2631	1947	35.13	98.15	128.51	-23.63
중외합작기업	33	42	-21.43	3.91	3.21	21.71
외국독자기업	7026	6285	11.79	299.94	288.53	3.96
외국투자주식제	36	24	50	25.32	32.78	-22.77
합작개발	0	0	0	0	0	0
기타(은행, 보험)	0	0	0	0	0	0
2. 외국인 기타 투자	0	0	0	0	0	0
대외주식발행	0	0	0	0	0	0
국제임대	0	0	0	0	0	0
보상무역	0	0	0	0	0	0
가공장비	0	0	0	0	0	0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지남

주요 투자정책

1995년 6월 이래로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7차례 개정하였으며, 이중 2015년 및 2017년의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6차 개정

2015년 3월 13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11년판의 79개에서 38개로, 외국 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 줄였다.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속했지만 이번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시켰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시켰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 방면에서 과거 5차례 「목록」 대비 변화가 가장 큰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가. 투자 장려 업종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정부로부터 각종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2015년판 「목록」에서는 현대 농업, 첨단기술, 선진 제조업, 친환경,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를 장려하고 외자 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제조업 부문, 특히 선박, 항공기, 전자설비 제조와 부품생산 면에서 외자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와 합작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부동산, 전자상거래, 금융, 도매·소매업 등 현대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의 참여와 R&D 투자를 장려했으며 ‘녹색 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고급 양탄자 및 자수 제품 생산’, ‘대형공공건축, 고층건물, 석유 화공설비, 삼림/산악/수역(水域)/지하 방재 및 구조 기술개발·설비제조’, ‘고속철로 및 여객전용철로 기초설비 종합보수’,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응용’, ‘공업·건축·의류 설계 등 창의산업’, ‘양로 시설’ 등도 새롭게 장려 목록에 추가했다. 건축 설계와 양로 시설은 2011년판 「목록」에서는 제한류였는데 2015년판 「목록」에서는 장려 목록에 편입되었다.

나. 투자 제한 업종

‘제한’목록은 조건부 허가를 의미하는데 2015년판 「목록」에서는 ‘합자’(合資) 또는 ‘합작’(合作)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항목은 15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조항은 35개로 집계된다. 2011년판과 비교하여 볼 때 삭제된 제한 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임·목축·어업 분야에서 2개, 채광업에서 6개, 제조업 분야에서 26개,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1개, 교통 운송 분야에서 2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이 주를 이뤘다.

제조업 분야,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외자지분을 규정을 완화하며 제한 업종을 줄여 제조업 분야의 개방도를 확대하였다.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증기기, 선박기기, 전자기기, 석탄설비, 경형헬기, 자동차 전자기기, 고급백주(名優白酒) 등 부분의 외자 지분을 제한을 완화시키고 유색금속, 소형 공정기기, 일반 베어링, 감광자재, 클로로 마이 세틴 등도 제한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015년판 「목록」에는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금융회사, 보험회사, 프랜차이즈, 부동산 개발, 수출입 상품검사 등 기존 제한업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경영, 지선철도, 철도,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연출 장소 등에 대한 외자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하고 직판, 통신 판매, 수출입 상품 검험인증, 철도화물 운송, 보험 중개회사, 재무회사, 신탁회사, 자금중개 등은 제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개발, 고급 호텔·사무실 건설과 운영,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제한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다. 단,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규제는 2011년판 「목록」과 동일하며 제한을 풀지 않았다.

아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국정부가 지정한 투자 제한 업종이다.

▶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 제한 업종

1. 농업·임업·목축업·어업
 - 농작물 신품종 선별 육성과 씨앗 생산(중국측 지분통제)
2. 채광업
 - 특수 및 희소형 석탄류 탐사와 채굴(중국측 지분통제)
 - 귀금속(금, 은, 백금) 탐사와 채굴
 - 흑연 탐사와 채굴
 - 리튬 채굴과 선광
3. 제조업
 - 두유, 유채유, 땅콩 유, 면실유, 티씨드 오일, 해바라기씨유, 팜오일 등 식용유 가공(중국측 지분통제), 입쌀, 밀가루, 원당 가공과 옥수수 정밀 가공
 - 바이오 액체 연료(에탄올연료, 바이오디젤) 생산(중국측 지분통제)
 - 출판물 인쇄(중국측 지분통제)
 - 텅스텐, 몰라브덴, 주석(주석 화합물 제외), 안티몬(산화안티몬, 황화안티몬 포함) 등 희소 금속 제련
 - 희토 제련과 분리(합자와 합작에 한함)
 - 자동차 완성차, 전용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중국측 지분통제 비중 50% 이상, 동일 외상은 국내에서 두 개 이하(두개 포함)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승용 차량, 상용 차량, 오토바이 차량) 생산의 합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만약 중국측 협력 파트너와 공동으로 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 기업을 합병할 경우 두 개에 제한되지 않음.
 - 선박(부분 포함)의 수리, 설계와 제조(중국측 지분통제)
 - 위성 TV 방송 지상파 수신 시설 및 관련 부품 생산

4. 전기, 열 에너지, 가스, 물 등의 생산과 공급업
 - 소형 전력망 범위 내에서 단일엔진 용적 30만 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 화력 발전소와 단일엔진 용적 10만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와 추출증기 겸용 발전기조 열병합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열에너지, 수자원 공급과 배수관 계통의 건설,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5. 교통 운송, 창고 저장, 체신업
 - 철도 여객 운송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도로 여객 운송 회사
 - 수상 운송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 공무 비행, 항공기 여행, 촬영, 탐광, 공업 등 통용 항공회사(중국측 지분통제)
6.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 전자통신 회사: 부가가치 전자통신 업무(외국인 투자 비중 50% 이하, 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전자통신 업무(외국인 투자 비중 49% 이하)
7. 도매와 소매업
 - 식량 수매, 식량과 목화 제품의 도매, 대형 농산물 도매 시장의 건설과 경영
 - 선박 대행(중국측 지분통제), 외국 선박 화물 정리(합자와 합작에 한함)
 - 주유소(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30개 이상의 분점, 여러 공급상이 제공한 서로 다른 종류와 브랜드의 완제품 오일을 판매하는 체인 주유소, 중국측 지분통제)의 건설과 경영
8. 금융업
 - 은행(하나의 해외 금융기구 및 해당 금융기구가 통제하는 혹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관계인이 발기인이거나 전략투자자일 경우 단일 중국측 지분통제 상업은행에 대한 투자와 지분 매입 비중이 2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다수의 해외 기업 및 해당 기업이 통제하는 혹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관계인이 발기인이거나 전략투자자일 경우 투자와 지분 매입 비중이 2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농촌 상업은행에 투자하는 해외 금융기구는 반드시 은행류 금융기구이어야 함).
 - 보험회사(생명보험 회사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50% 초과 불가)
 - 증권회사(회사 설립 시 위안화 보통 주식, 외자 주식, 정부 채권, 회사 채권 등에 대한 수탁 판매와 보증 추천 업무 종사 및 정부 채권과 회사 채권의 위탁 판매와 자가 경영에 제한함. 회사 설립 만 2년 후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비율은 49%를 초과 불가)
 - 선물회사(중국측 지분통제).
9.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 시장 조사 업무(합자와 합작에 한함)
 - 자금력과 신용도 조사 및 등급 평가 서비스 회사

10.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 측량과 지도제작 회사(중국측 지분통제)
11. 교육
 - 대학교육 기구(합작에 한함, 중국측 주도)
 - 일반 고등교육 기구(합작에 한함, 중국측 주도)
 - 어린이 교육(합작에 한함, 중국측 주도)
12. 위생과 사회 업무
 - 의료기구(합자와 합작에 한함)
13. 문화, 체육, 오락업
 - 방송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 업무(협력에 한함)
 - 영화관 건설과 경영(중국측 지분통제)
 - 대형 테마 파크 건설과 경영
 - 엔터테인먼트(중국측 지분통제)
14. 중국의 국가 법률 법규와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한 국제조약 규정에 제한된 기타 산업

다. 투자 금지 업종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 외자 진입을 금지했다. 2011년 버전과 비교하면 일부를 폐지하였지만 담배 판매 등을 신규 추가하기도 했다.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속했지만 이번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시켰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시켰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다음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중국정부가 지정한 투자 금지 업종 리스트이다.

➡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 금지 업종

1. 농업·임업·목축업·어업
 - 중국 희소 혹은 특유의 진귀 우량품종 연구 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자재의 생산(재배업, 축산업, 수산업 등 우량 유전자 포함)
 - 농작물, 가축, 수산물 씨앗과 종자의 유전자 변형 선별 육성 및 해당 유전자 변형 종자(씨앗)의 생산
 -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작업
2. 채광업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등의 탐사와 채굴
 - 희토의 탐사, 채굴, 선광
 - 방사성 광산물의 탐사, 채굴, 선광
3. 제조업
 - 1) 의약 제조업
 - 중국 「야생 약재자원 보호 조례(野生藥材資源保護條例)」와 「중국의 진귀·희소, 멸종 위기 보호식물 명록(中國珍稀、瀕危保護植物名錄)」에 해당하는 중약재(한약재) 가공
 - 중약재(한약재)의 찌, 볶음, 뜸, 굽기 등 조제 기술의 응용 및 한방제약 비밀 처방 제품의 생산
 - 2) 석유 가공, 코킹과 핵연료 가공업
 - 방사성 광산물의 제련, 가공과 핵연료 생산
 - 3) 전용 설비 제조업
 - 무기와 탄약 제조
 - 4) 기타 제조업
 - 상아 조각 가공
 - 호골 가공
 - 선지와 잉크스틱 생산
4. 전기, 열에너지, 가스, 수자원 등 생산과 공급업
 - 소형 전력망 범위 내에서 단일엔진 용적 30만 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 화력발전소와 단일엔진 용적 20만kw 및 이하의 석탄 응축증기와 추출증기 겸용 발전기조 열병합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5. 교통 운송, 창고 저장, 체산업
 - 항공교통 관리와 통제
 - 우편회사, 우편물 국내 택배 업무
6. 도매와 소매업
 - 담뱃잎, 궤련, 복고 연잎(復烤煙葉) 및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7.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 사회 리서치
- 중국 법률 자문 (중국 법률환경의 영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8.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 인체 출기세포와 유전자 진단 및 의료 기술 개발과 응용
- 대지 측량, 해양 측량과 지도 제작, 측량과 지도 제작 업무의 항공 촬영, 행정 구역 경계성 측량과 지도 제작, 지형도, 세계 행정구역 지도, 중국 전국의 행정 구역 지도, 성(省)급 및 성급 이하 행정구역 지도, 전국성 교육 지도, 지방성 교육 지도와 3D 지도 편성, GPS 전자지도 편성, 구역성 지질 지도 보충, 광산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의 조사

9. 수자원,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 자연보호구와 국제 중요습지의 건설과 경영
- 중국이 원산국인 국가 보호 야생 동·식물 자원의 개발

10. 교육

- 의무교육 기관과 군사, 경찰, 정치, 중국 공산당 간부 학교 등 특수 분야의 교육 기관

11. 문화, 체육, 오락업

- 언론기관
-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출판 업무
-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출판 업무
- 각급 라디오 방송국(센터), 방송국(센터), TV방송 채널(주파수), TV방송 오버레이 네트워크(발사대, 중계소, 방송TV위성, 위성 업링크, 위성 중계수신소, 마이크로 주파 중계국, 감시소, 유선TV방송 오버레이 네트워크)
- TV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경영 회사
- 영화 제작사, 배급사
- 뉴스 사이트,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 문물 경매 경영의 경매기업, 문물 상점
- 골프장과 별장 건설

12. 기타 업종

- 군사설비의 안전과 사용 효능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 복권업(도박류 경마장 포함)
- 색정업(色情業)

13. 국가 법률 법규와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한 국제조약 규정에 금지된 기타 산업

(2) 2017년 제 7차 개정

2017년 6월 29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 수정판)을 공식 발표했으며, 2017년판 ‘목록’의 6대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清單)’ 최초 도입,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었다.
-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장려류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판 ‘목록’ 중 ‘장려류’ 목록은 348개. 2015년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 3) 완성차 업체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 [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다.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생산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체적이다.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도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5) 내외자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를 반영하였다. 중국 상무부 쑤지원(孫繼文) 대변인은 2017년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 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 6)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으면 되며,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가 수정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

2009~2010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회사등록기관) 및 외환관리국이 각각 지분출자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5.4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해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을 (이하 「임시규정」이라 약칭) 발표했다. 「임시규정」은 2012년 10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적용범위

- 국내·외 투자자(이하 ‘지분출자인’이라 약칭)가 중국 국내기업(이하 ‘지분기업’이라 약칭)에 지분으로 출자해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즉, 신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 통해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한다.
-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출자액과 기타 비화폐자산의 출자금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분에 대한 평가

- 출자에 사용될 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국내 평가기구로부터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분출자인과, 피투자 기업의 주주, 기타 투자자는 협의 하에 지분출자금액 및 지분가액 확정을 확정한다.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01년 4월 23일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2014년 2월 19일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16년 9월 3일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2013년 12월 28일 수정판)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 행정관리국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 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 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7/10	
300~1,000	1/2	210
1,000~3,000	2/5	500
3,000이상	1/5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기업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중 일부를 지역공회에서 기업 공회의 활동비로 지원한다.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공회비는 상급 공회로 전달될 뿐 기업 공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2012년에는 노무파견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견업체 설립조건을 자본금 2백만 위안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노무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4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한 「사회보험법」을 제정 시행(2011년 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도 동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가입도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면제신청 후 5년간 보험가입이 면제되는데, 2018년 1월이면 최초에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된 근로자의 5년 면제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면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세부 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16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내지 3년에 1회 이상 조정하도록 조정 주기를 다소 길게 조정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 발표한 13.5 계획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2017년 최저임금을 갱신하여 고시한 지역은 18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은 평균 8.1%로 낮아졌다. 경제발전에서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농민공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중국에서 정부가 직접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역시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유도하면서도 인상 수준은 점차 낮춰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중국의 지역별 임금 가이드라인 현황

지역	유형	2015	2016	2017
北京	상한선	16%	15%	14%
	기준선	10.5%	9%	8.5%
	하한선	3.5%	4%	4%
天津	상한선	18%	16%	14%
	기준선	10%	9%	9%
	하한선	3%	3%	3%
河北	상한선	18%	13%	12%
	기준선	11%	8%	8%
	하한선	4%	3%	3%
山东	상한선	18%	13%	12%
	기준선	11%	8%	7.5%
	하한선	4%	3%	3%
内蒙古	상한선	14.5%	13.5%	12%
	기준선	10.1%	8.5%	8%
	하한선	3.0%	3.0%	2%

지역	유형	2015	2016	2017
山西	상한선	18%	11%	12%
	기준선	10%	7%	8%
	하한선	4%	4%	4%
四川	상한선	17%	13%	12%
	기준선	11%	8%	7.5%
	하한선	4%	3%	3%
云南	상한선	17%	13%	13%
	기준선	10%	8%	7%
	하한선	3%	3%	3%
陕西	상한선	15%	11%	12%
	기준선	10%	7%	7%
	하한선	5%	3%	3%
江西	상한선	-	-	-
	기준선	5%	3%	8%
	하한선	5%	3%	3%
新疆	상한선	15%	10.5%	11%
	기준선	12%	8%	8%
	하한선	3%	3%	3%
广西	상한선	19%	12%	12%
	기준선	12%	8%	8%
	하한선	3%	3%	2%
宁夏	상한선	17%	-	13%
	기준선	13%	8%	7.5%
	하한선	0%	0%	2%
甘肃	상한선	16%	14%	13%
	기준선	11%	8%	7%
	하한선	5%	4%	3%
福建	상한선	15%	12%	12%
	기준선	10%	8%	8%
	하한선	2%	2%	3%
河南	상한선	12.3%	11.3%	12%
	기준선	11.3%	10.4%	7.5%
	하한선	4%	3.5%	3%

지역	유형	2015	2016	2017
吉林	상한선	13%	11%	12%
	기준선	8%	6%	7%
	하한선	3%	3%	3%
安徽	상한선			11%
	기준선			7%
	하한선			3%
贵州	상한선	15.2%	15%	12.5%
	기준선	12%	10%	7.5%
	하한선	2.7%	4%	3.5%
青海	상한선	16%	13%	
	기준선	9%	7%	
	하한선	4%	3%	
上海	상한선	16%	14%	
	기준선	10%	9%	
	하한선	4%	4%	
辽宁	상한선	12%	%	
	기준선	8%	%	
	하한선	3%	%	

➡ 참고: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 (2017.10월 기준)

(단위: RMB, '17.10월 기준)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 ¹⁶⁾	비전일제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1.북경시	2000	22	2017.9.1
2.천진시	2050	20.8	2017.7.1
3.하북성	1650/1590/1480/1380	17/16/15/14	2016.7.1
4.산서성	1700/1600/1500/1400	18.5/17.4/16.3/15.2	2017.10.1
5.내몽고자치구	1760/1660/1560/1460	18.6/17.6/16.5/15.5	2017.8.1
6.길림성	1780/1680/1580/1480	17/16/15/14	2017.10.1
7.요녕성	1530/1320/1200/1020	15/13/10.8/9.5	2016.1.1
8.흑룡강성	1480/1450/1270/1030	14.2/14/11.5/10.8/10	2015.10.1
9.상해시	2300	20	2017.4.1

성,시(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 ¹⁶⁾	비전일제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실시 시간
10.강소성	1890/1720/1520/	17/15.5/13.5/	2017.7.1
11.절강성	1860/1660/1530/1380	17/15.2/13.8/12.5	2015.11.1
12.안휘성	1520/1350/1250/1150	16/14/13/12	2015.11.1
13.북건성	1700/1650/1500/1380/1280	18/17.5/16/14.6/13.6	2017.7.1
14.강서성	1530/1430/1340/1180	15.3/14.3/13.4/11.8	2015.10.1
15.산둥성	1810/1640/1470	18.1/16.4/14.7	2017.6.1
16.하남성	1720/1570/1420	16/14.5/13	2017.10.1
17.호북성	1750/1500/1380/1250	18/16/14.5/13	2017.11.1
18.호남성	1580/1430/1280/1130	15/13.4/12.4/11.6	2017.7.1
19.광둥성	1895/1510/1350/1210	18.3/14.4/13.3/12	2015.5.1
20.심천시	2130	19.5	2017.6.1
21.광시자치구	1400/1210/1085/1000	13.5/11.5/10.5/9.5	2015.1.1
22.해남성	1430/1330/1280	12.6/11.7/11.3	2016.5.1
23.중경시	1500/1400	15/14	2016.1.1
24.사천성	1500/1380/1260	15.7/14.4/13.2	2015.7.1
25.귀주성	1680/1570/1470	18/17/16	2017.7.1
26.운남성	1570/1400/1180	14/13/12	2015.9.1
27.서장자치구	1400	13	2015.1.1
28.섬서성	1680/1580/1480/1380	16.8/15.8/14.8/13.8	2017.5.1
29.감숙성	1620/1570/1520/1470	17/16.5/15.9/15.4	2017.6.1
30.칭해성	1500	15.2	2017.5.1
31.닝샤자치구	1660/1390/1320	15.5/14.5/13.5	2017.10.1
32.신강자치구	1670/1470/1390/1310	16.7/14.7/13.9/13.1	2015.7.1

출처: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현행 중국 「공사법」에 따르면 설립된 기업 등기말소 진행 시 먼저 청산팀을 설립해 청산 등록(备案)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팀

16) 성·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역별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3~4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최저 임금을 고시

비안 증명을 수령하고, 신문에 45일간 등기말소 공시를 게재해야 하며 청산팀 등록 등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5일(근무일 기준)이 지난 후에 등기말소 승인 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4차례에 걸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모든 절차는 기업의 채권채무 유무, 실제 경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상하이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 * 2015년 상반기,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둥신구, 장쑤성 옌청(鹽城)시, 저장성 닝보(寧波)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미개업 기업(경영실적无)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했다.
- * 같은 해 9월,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공고」(工商企注字(2015) 142號)를 통해 시범 지역을 톈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 이점,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 현재 공상총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간소화 등기말소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 등기말소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전역으로 머지않아 보급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 개혁 시행에 따라 등기말소 절차, 제출 자료 및 소요시간 등이 대폭 감축되었지만 지역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에 따라 기업이 경영종료 시

종업원들에게 수당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타 제한 조치

(1) 금융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가)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 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 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200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외국계은행 모은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 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외자은행이 외채한도를 소진할 경우 중국 내에서 차입할 수 밖에 없어 자금코스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업 및 외자은행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 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년 3월 제정된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 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해운업 및 해운 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2010년 1월 4일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公安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연락 사무소에 대한 관리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공상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공상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각 지역 공상행정 관리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연락 사무소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영리 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락 사무소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연락 사무소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다. 등기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따로 진행한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 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주재원도 중국의 거주자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 세무국에 가서 개인소득세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세무등기 시에는 여권의 제시가 요구되며 비자의 종류, 출입국 기록, 주재원의 대표증, 외국인 거류증명서(공안국 발행) 등을 심사 받게 된다. 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무기관은 본사에서 발급한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규정, 해외부임규정, 본국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경제 개관

일본경제는 2012년 12월 이후 추진된 아베노믹스 정책효과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회복이 미진한 상태이어서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3년도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으로 개선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5년 상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여 2016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기대비 0% 중반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전년 · 전기 대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2.0	0.3	1.1	0.5	0.5	0.2	0.4	1.0	0.3	0.6

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0%대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16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0%대를 보였으며 2017년 들어 플러스 상승을 보였으나 0%대 상승에 머무르고 있다.

▶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전기 대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0.1	0.6	0.5	0.5	△0.2	0.1	0.2	0.2	0.3	0.4	0.4	0.5

2013년 이후 경기 회복 및 고령화로 인하여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꾸준히 개선되어 일본의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6월에는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이 1.01로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도 구직자보다도 일자리수가 맞은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만, 노동수요 초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은 더디고 있어 개선된 노동시장이 소비확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 일본의 고용지표 동향(전년 · 전년동월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4월	5월	6월
실업률	4.0	3.6	3.4	3.1	2.9	3.1	2.8
유효구인배율	0.93	1.09	1.20	1.36	1.48	1.49	1.51

무역수지는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특히 2016년 들어서부터는 수입 규모의 축소폭이 수출규모의 축소폭보다 커 계속해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의 경우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및 일본은행의 공격적 금융완화 효과로 엔화 약세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2015년 8월말 이후 중국경제 불투명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일시적 엔고 국면으로 반등하였다. 2016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재정확대 등을 통한 미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강세로 인해 엔화 약세가 진행되다가 2017년 하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엔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 2010년 이후 엔/달러 환율 추이(기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5.9	105.0	119.5	120.6	116	111.8	111.2	110.8	112.0	110.6	109.9

2016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호·의료·연금 관련 사회보장지출 증가(매년 1조엔 규모)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 확대에 이자지출 규모가 점증함에 따라 재정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재원 확보 등을 위해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2019년 10월, 8%→10%)할 방침이나,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재정적자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향후 일본경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아베노믹스 금융완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제3의 화살인 성장기반 제고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강화, 고용·소득여건 개선 등을 달성하여 가계 및 기업심리가 회복되면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북핵문제, 미국과 EU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미국의 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에 일본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의 회복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주요내용)

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성장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년 4월, 2014년 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하며 소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에 더하여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특정 당좌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2016년 2월)하였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되자 단기금리를 -0.1%로 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를 0%대로 유지하는 장단기금리조작부 양적·물적 금융완정책을 도입(2016년 9월)하여 2017년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2012년 13.1조엔→2013년 5.5조엔→2014년 3.1조엔→2015년 3.3조엔→2016년 4.7조엔) 등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보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2014년 4월 5%→8%)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세출삭감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소비 부진과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면서 2015년 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2014년 12월) 했다가 다시 2019년 10월로 재연기를 결정(2016년 6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한편, 낙관적으로 매년 실질 GDP 2%, 명목 GDP 3% 성장을 하고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8→10%)를 하더라도 2020년 기초재정수지가 8.2조엔 적자라는 시산결과(2017년 6월 내각부)에서 보듯 2020년 기초재정수지흑자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2017년 6월에는 기존 목표에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를 재정건전화 목표로 추가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 실질 2% 이상, 명목 3% 이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산업재흥계획, ②전략시장 창조계획, ③국제전개전략을 책정하여 무역·

산업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흥계획은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시장 창조계획에서는 의료·농업·환경 및 에너지·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인프라 해외 수출 확대, 다국간 경제연대 추진(TPP, RCEP) 등을 강화하며 대일 투자 유치 및 수출대국 지위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 2015』에서는 공급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9월말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재 연임(임기 3년)이 정식 결정됨에 따라 아베노믹스 제2막 이행 전략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①강한 경제 구축, ②적극적 육아지원, ③사회보장 내실화)이 발표되었다. 10월 7일 출범한 제3기 아베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강조하면서 ①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현 490조엔), ②202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 1.8명 회복(현 1.4명), ③개호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인재 육성을 통한 개호 이직율 제로 구현을 새로운 세 개 화살의 정책목표 수치로 각각 설정하였다.

특히, 아베노믹스 2단계(2015년 9월~)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핵심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중장기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구현을 목표로 인재투자 강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 확대, 수출-관광 연계 전략 추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 인재투자강화의 경우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력 감소와 성장력 한계 극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조기 무상화,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직장인 학습지원 확충 등을 실시하며,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외국인재 활용, △고령자 취업 지원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산업변화 대응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구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자율주행차, △인프라, △공급망(Supply chain), △핀테크 5대 분야를 설정하고 관민 라이드페이بل 활용 등 민관학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프리존(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셋째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경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outbound)과 관광객 국내소비(inbound)가 연계된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패션, 식품·식문화, 콘텐츠, 지역 특산품 등 고품질 브랜드 발굴 홍보하여 현지 직접 체험 및 소비를 통한 인바운드 축진을 도모하고 이것이 결국 일본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카니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일본 시장의 특징

최근 일본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일류 부품소재기업이 주도하는 거대 내수 시장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소재기업은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 반도체, CCD 소자,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 렌즈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주요 상품·서비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경제규모면에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질적 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구조 변화, 고가·저가 소비 양극화 뚜렷

최근 일본의 개인소비 행태는 1인 가구 비중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소비재형태별로는

서비스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및 나홀로 가구의 외식 선호도 증대에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나홀로족 특성에 맞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상품의 용량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향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용량 패키지 제품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품들이 시장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기보다는 대여·중고품 구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플리마켓 앱’ 등을 활용한 중고거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의 보급형 제품을 선호하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또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등 소비시장 내에서 고가와 저가 물품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카이(団塊) 세대의 퇴직에 따른 실버산업 성장

일본은 2017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상품또는 서비스를 판매 하거나 제공하는 이른바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세대(단카이 세대: 1947~49년생)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일본 전체 가계금융자산 1,800조엔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최적의 실버상품 테스트베드’ 역할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비중이

크고,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이 많다. 일본 내 유통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장기 거래를 통해 지역 유통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기업 도매상에서 소(중간) 도매상이 연결되어 있는 등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특유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간상인은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일본 비즈니스에서 중간상인들은 거래조건이나 품질 조건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특유의 신용 거래

일본의 비즈니스는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관습은 에도 시대의 찻거래에서부터 시작한 일본 전통의 비즈니스 관습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회사 신용정보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일본기업과의 첫 거래에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납품일과 대금 지급일을 지정하거나 사전에 일본 거래처의 경리처리 조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메이커의 유통업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일본시장에서 메이커의 지배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이유는 메이커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소매업자의 PB상품 개발 및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리화 촉진에 따른 결과이다.

수입형태의 다양화

종전에는 해외 메이커가 제조한 제품을 종합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 수입업자가 수입해 1차 도매상→2차 도매상→소매상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 유통 경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소매상에 의한 개별 수입, 일본 메이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니즈의 변화, 가격경쟁의 격화, 인터넷 보급 등으로 수입품 유통환경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일 무역·투자 현황 및 일본시장진출 여건

무역현황

2016년 현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2위)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4위)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약 330배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7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016년 중 수출이 2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2015년(△20.5%)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수입은 4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 반전하였다. 2011년부터 지속된 대일 수출 감소는 엔화 약세·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1억 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 한·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8월
총교역액	925	1,080	1,032	947	860	715	719	536
대일수출	282	397	388	347	322	256	244	175
대일수입	643	683	644	600	538	459	475	361
무역수지	△361	△286	△256	△253	△216	△203	△231	△186

2016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석유 제품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내 공급 부족 및 우리

정유업계의 생산능력 향상에 기인한다. 또한 2020년 동경올림픽 준비에 따른 인프라 건설 수요 확대 등으로 철강판 수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일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플라스틱, 철강판 등 주로 자본재와 중간재 점유 비중이 크다. 특히 글로벌 IT 수요 호조로 반도체 업종이 생산시설을 확대하면서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6		2017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23.2	△33.4	18.1	36.9
2	철강판	15.6	1.5	14.5	46.3
3	반도체	14.7	△16.3	7.7	△12.7
4	금은 및 백금	10.2	11.4	5.0	△23.4
5	자동차부품	9.1	8.1	6.2	6.3
6	무선통신기기	7.4	△48.8	3.9	△11.1
7	플라스틱제품	7.0	11.8	5.1	13.2
8	정밀화학원료	6.4	△0.8	5.3	25.9
9	합성수지	5.9	△3.3	4.6	15.3
10	주단조품	5.6	15.1	4.0	14.0
총계		243.6	△4.8	175.0	12.3

주: 순위는 2016년 수출금액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년 8월 기준)

▶ 한국의 주요 대일 수입품목

(단위: 억달러)

순위	품목명	2016		2017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40.6	5.2	29.1	10.8
2	반도체 제조용 장비	25.3	10.8	38.7	170.2
3	플라스틱제품	23.0	3.0	15.4	4.6
4	철강판	22.3	△2.6	15.6	8.5

순위	품목명	2016		2017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5	기초유분	16.1	△25.6	12.3	12.5
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4.2	330.5	15.6	144.6
7	광학기기	13.6	△7.6	8.7	4.2
8	원동기 및 펌프	13.0	9.2	9.9	18.9
9	정밀화학원료	12.8	7.5	9.3	11.5
10	계측제어분석기	12.0	6.3	9.2	18.9
총계		474.7	3.5	361.0	19.6

주: 순위는 2016년 수입금액 기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년 8월 기준)

투자현황

일본은 1962~2016년 누계 제2위의 대한민국 투자국가이며, 투자금액(도착기준)은 총 304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여파로 2012년 대한민국 투자규모가 38.4억 달러에 달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은 8.1억 달러에 그치면서 2012년 실적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자립도(소재부품 대일 수입의존도: 2012년 23.0%→2015년 16.5%)가 점차 제고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과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투자 위축 영향 등이 겹치면서 투자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2002년부터 서비스업 투자가 제조업 투자를 역전하였으며, 주로 금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IT서비스업·경영컨설팅 등), 도소매 유통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對韓 투자	금액	14.3	14.6	38.4	28.9	21.2	12.3	8.1	304
	건수	319	396	464	363	265	227	230	8,018

* 1962~2016년 도착금액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우리나라의 1968~2016년 대일본 투자 누적금액은 78억 달러(투자 기준)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15위 투자대상국이다. 일본 진출기업은 한일간 비즈니스 무역, IT서비스, 해운여행 등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W업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연도별 한국의 대일본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對日 투자	금액	3.4	2.9	6.8	7.6	4.9	17.8	2.8	78.1
	건수	590	498	688	742	828	847	734	9,138

* 1968~2016년 투자금액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시장진출 환경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예컨대 품목별로 별도 공장허가 필요),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업들의 대일시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부 분야의 경우 내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국업체를 중시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보다는 집단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약속시간 준수 등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와 매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층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對한국 쿼터(1개): 김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9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꽂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물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김 IQ 할당량(20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IQ물량 (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1,200	1,350
- 상사	175	213	251	(289)	(491)	(564)	(605)	(666)	(694)	(675)
- 수요자	261	318	376	(433)	(327)	(349)	(404)	(438)	(506)	(675)
수출량 (만속)	217	239	349	471	692	796	883	897	728	972
소진율 (%)	(49.8)	(45.0)	(55.7)	(65.2)	(84.6)	(87.2)	(87.5)	(81.2)	(60.6)	(72.0)

▶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2017.1.20)

(단위: 만속)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합 계		2,478	1,500	529	449	○ 제품별, 국가별 할당 〈한국〉
수요자		1,010	769	241	-	- 마른김 : 50% - 조미김 : 35% - 조제김 : 15%
상 사		1,453	731	288	434	〈중국〉 - 마른김 : 84% - 조제김 : 16%
선착순		15	-	-	15	※한국:중국:글로벌 = 61 : 21 : 18
마 른 김	소 계	1,199	750	444	5	○ 할당별, 국가별 할당 〈한국〉
	수요자	606	450	156	-	- 수요자 : 51% - 상 사 : 49%
	상 사	588	300	288	-	〈중국〉 - 수요자 : 46% - 상 사 : 54%
	선착순	5	-	-	5	
무 당 조 미 김	소 계	532	525	-	7	○ 제품별 한국 할당 〈마른김〉 - 수요자 : 60% - 상 사 : 40%
	수요자	184	184	-	-	〈조미김〉 - 수요자 : 35% - 상 사 : 65%
	상 사	341	341	-	-	〈조제김〉 - 수요자 : 60% - 상 사 : 40%
	선착순	7	-	-	7	
조 제 김	소 계	747	225	85	437	○ 조제김의 종류 - 구운김, 자반김 등 ※ 紙狀이 아닌 것은 3g을 1매로 환산
	수요자	220	135	85	-	
	상 사	524	90	-	434	
	선착순	3	-	-	3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2,900,000원	967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전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전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

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전(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전) 중앙노사의“사전협의 에 관한 협의회” (경미안전)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긴 사전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는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 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품목수는 2017년 3월 현재 790품목이다.

- (2005년) 283 →(2006년) 799(잠정기준 758, 본기준 41) →(2017년 3월) 790(잠정기준 414, 본기준 376)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0.01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3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7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 제안에 대해 일본정부에서 반영검토중인 품목(2016년 11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한국 제안 MRL(ppm)	비 고
Fluquinconazole	피망	0.01	2.0 또는 3.0	2015.2.19 요청
계 1건				

▶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16년 11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	2005년 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0.01)	0.5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Fluazinam	피망	미설정(0.01)	0.3	"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10.30.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6.30.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6.4.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6.4.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1.29고시
Acequinocyl	고추	(1→0.01)	1.0	2010.1.29고시
Toly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10.20.고시
Toly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10.26.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8.17.확정
Propamocarb	고추	(2→0.01)	2	2010.11.9.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Bifenthrin	들깨잎	0.1	2	2010.12.13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0.3	2011.5.13.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	2012.6.14.고시
Pyrimethanil	감	5→삭제	2.0	2013.3.15.반영
Pyrimethanil	대추	10→삭제	0.5	"
Pyrimethanil	복숭아	3→삭제	2.0	"
Spirodiclofen	감	2→삭제	1.0	"
Spirodiclofen	대추	5→삭제	5.0	"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 반영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 기준 MRL(ppm)	비 고
Abamectin	고추	0.03	0.2	"
Dithianon	피망	0.3	2	"
Dithianon	고추	0.3	2	"
Dithianon	인삼	0.5→삭제	0.5	"
Pyridaben	가지	1.0→삭제	1	"
Pyridaben	고추	2.0→삭제	2	"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년 4월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년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	2014년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년 반영
Etofenprox	고추	미설정(0.01)	2	2015년 3월 반영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0.01)	1.0	2016년 4월 4일 반영
Teflubenzuron	고추	0.5→삭제	0.2	2016년 반영
47건	12작물			

※ 고려인삼과 갯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로 분류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2017년 3월 현재 파프리카, 토마토, 방울토마토, 청고추, 참외 등 5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 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로써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사명령 현황(2017년 3월)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ppm)
검사명령 100% (전수검사)	미니토마토	플루켄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켄코나졸	0.01
	파프리카	클로르피리포스	0.5
	청고추	플루켄코나졸	0.01
	참외	클로르페나필	0.01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19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3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10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10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4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해충 (6종)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Liriomyza trifol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olyphagotarsonemus latus	차면지응애	Broad mite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부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정부 조달 분야

입찰 · 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조 106억엔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반면, 총조달건수는 15,392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 엔)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5,630 (-15.7)	14,110 (-9.7)	18,344 (+30.0)	20,570 (+12.1)	19,082 (-7.2)	20,106 (+5.4)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3,249 (+8.4)	12,613 (-5.0)	14,640 (+16.1)	17,811 (+21.7)	15,613 (-12.3)	15,392 (-1.4)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 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2.5%, 건수대비 3.7%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적별 비율은 미국 183건(286억엔), EU 231건(187억엔), 기타 153건(22억엔)으로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단속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실적은 2016년 총 26,034건 622,665점으로 10년 연속 2만 건(5년 2.5만건)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금액으로는 114억 엔에 상당하며, 하루 평균 71건 1,700점을 적발한 셈이 된다. 발송국별로는 중국에서 온 화물이 전체의 91.9%(23,91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 2.8%(717건), 한국 1.6%(427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적재산별로는 위조 브랜드품(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건수로 전체 98.2%(25,666건) 점수로도 65.7%(409,279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 등 특허권 침해물품 점수가 185,781점(전년 932점)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 등 컴퓨터제품 점수가 전년대비 19배(195,152점)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사용하는데 따라 건강·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 자동차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 등 자동차 부속품, 전기제품, 미용용품 등의 지적재산 침해물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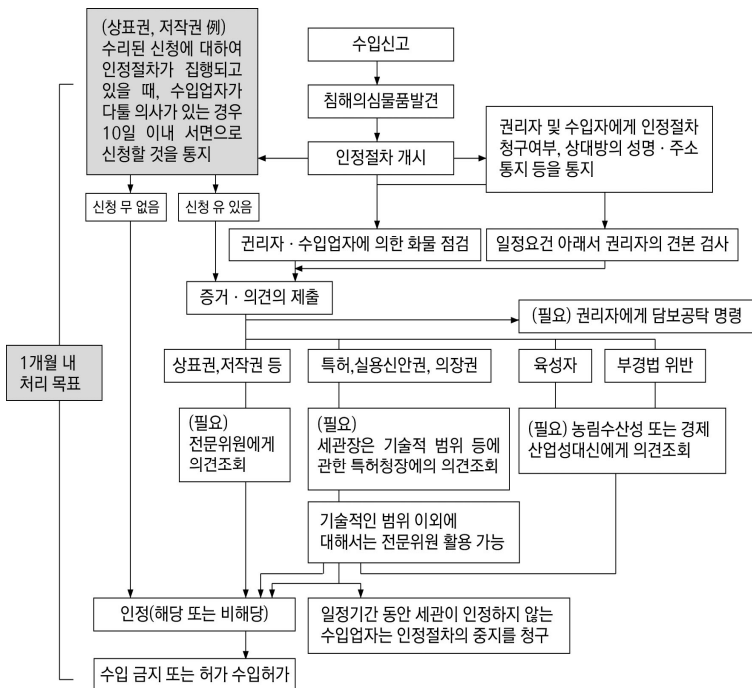
▶ 발송국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적발 건수 (2016)

발송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중국	25,844	91.9%	29,553	92.2%	26,670	91.1%	23,916	91.9%
홍콩	1,053	3.7%	1,369	4.3%	1,227	4.2%	717	2.8%
한국	328	1.2%	422	1.3%	494	1.7%	427	1.6%
기타	910	3.2%	716	2.2%	858	3.0%	1,691	3.7%
계	28,135		32,060		29,274		26,034	

▶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 (2016)

권리		2013	2014	2015	2016	2016(구성비)
특허	건수	2	1	5	61	0.2%
	점수	331	60	932	185,781	29.8%
의장	건수	43	40	36	87	0.3%
	점수	10,852	60,458	3,811	8,507	1.4%
상표	건수	27,975	31,816	28,982	25,666	98.2%
	점수	599,142	825,297	656,853	409,279	65.7%
저작권	건수	383	527	323	312	1.2%
	점수	17,768	9,865	27,948	19,068	3.1%
기타	건수	19	86	50	9	0.0%
	점수	94	112	77	30	0.0%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절차(규정 인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 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 i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 iii)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한다.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한다.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로 하고 있어 인정절차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30일 이내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자의 대응

- i)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
- i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 iv)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ii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총생산중 제조업분야가 약 19%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관련 상세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HS Code 기준 뉴질랜드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평균 관세율은 2.0%이며, 전체 7,510품목 중 63.9%(약 4,799) 상당의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자유 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 Tariff)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고 당해국가의 부가가치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UN

권고 및 관세법에 의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으며, 동 계획은 5년마다 검토된다. 또한, 특히 석고보드(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에 대한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 규정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the Climate Change (Synthetic Greenhouse Gas Levies) Regulations 2013)'을 통해 냉장 및 냉동고, 냉난방 장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2013년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 부과는 매년 재검토되고 있다.

※ 부담금에 대한 상세 부과액은 뉴질랜드 법령 조회 사이트인 New Zealand Legislation을 통해 확인 가능(<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3/0046/latest/whole.html>)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통관절차상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뉴질랜드 표준 담당 부서(Standards New Zealand)(<https://www.standards.govt.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업(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어 2016년 5월 이후부터 외국용선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¹⁷⁾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제조 또는 식품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2016년 3월 「Food Act 2014」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 FSP 인증 사용자들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새로운 법률에 의거하여 재등록을 해야 한다.

17) 관련 상세정보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홈페이지(www.fish.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ACMA)(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 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 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 요구조건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branz.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8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이후 환경위험관리국(現 환경보호청 www.epa.govt.nz)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 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다음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은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위기류, 폭발물(폭죽 포함),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

폐기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주행 기록계 등), 유해물, 오존 파괴 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 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등이다.¹⁸⁾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 Spark, 2degrees 등 세 개의 통신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하였으나(통신회사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정부 및 통신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이

18) 수입규제품목의 세부 사항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 참고.

49.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신 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 요건), 2011년부터 동 규정은 폐지되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규정」을 따르고 있다.

※ 뉴질랜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Chorus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유지

2017년 10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시장 점유율은 Spark 46%, Vodafone 29%이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Vodafone 약 39%, Spark (Skinny 포함) 약 37%, 2degrees 24%를 기록하였다. 통신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영업 허가는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며,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조금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Medsafe)의 승인을 받은 복제약(Generic)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PHARMAC은 의약품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원조약(Original)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정 의약품의 사용량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7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경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 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토지투자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기매매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년 10월 「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관계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영화산업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 또는 공식 공동 제작(official co-production) 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질랜드달러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 5,000만 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여, 총 2,000만 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 영화	2,500,000뉴불
단편 프로그램(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800,000뉴불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250,000뉴불
장편 시리즈(비타큐)	1,000,000뉴불 - 방송시간당 500,000뉴불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250,000뉴불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250,000뉴불 - 방송시간당 400,000뉴불 이상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투자비용 5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경제에 증대한 기여를 했다고 입증될 경우 투자비용의 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최소 제작비용	기준보조금
장편극 영화	15,000,000뉴불	총 제작비용의 20%
TV 프로그램 및 기타	4,000,000뉴불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500,000뉴불	

※ 출처 :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New Zealand Film Commission)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 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제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의해 보호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민간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ManpowerGroup의 2016/2017 전문인력 부족 현황 조사(2016/2017 Talent Shortage Survey)에서 전체산업의 46%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숙련공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엔지니어, 판매 대리인, 경영진, 기술직, 회계 및 재무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장 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4,491품목이며, 2014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5%, 4.23%이다. 2015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6%, 4.23%이다. 2016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4.66%, 4.23%이다.

▶ 평균 관세율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농산물	13.73%	13.88%	13.88%	13.88%	13.85%	14.65%	14.66%	14.66%
공산품	4.18%	4.18%	4.23%	4.23%	4.23%	4.23%	4.23%	4.23%
전체	5.71%	5.85%	5.89%	5.89%	5.88%	6.35%	6.35%	6.35%

자료: 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 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년	14	446
2001년	8	222
2002년	2	13
2003년	2	30
2004년	1	11
2005년	1	11
2006년	1	2
2007년	1	7
2008년	6	30
2009년	10	40
2010년	5	42
2011년 9월	5	16
2012년	2	5
2013년	0	0
2014 년	1	4
2015년	4	11
2016년	1	4

자료: 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WTO 원산지 협정”에 따르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기준 총 2,207개의 농·공산품(농산품 973개 품목, 공산품 1,234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바,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 품목별 할당량(2016)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20,652	20	4,130	
	15,000	20	3,000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20%)
녹용	5,000kg	50kg	-	
동양배	9,800	20	-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팔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3	28	
	144	3	28	
마른 팽이버섯	50	3	10	
	51	3	10	
야자	3,000	20	600	
	7,000	2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5	2,374	
	12,000	15	2,400	
망고	7,000	11	1,400	
	5,755	11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財政部 關務署(2016)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2016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할당량	미국	∞	∞	∞	∞	∞
	EU 국가	∞	∞	∞	∞	∞
	캐나다	∞	∞	∞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	∞	∞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17.5	17.5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17.5	30.0	17.5	17.5	17.5

자료: 財政部 關務署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년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년 2월 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년 4월 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년 8월 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년 11월 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2017년 1월 26일 동 2건의 제품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재정부는 중국·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22%~77.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브라질·중국·인도·한국·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02%~80.50%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 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대대만 수출을 금지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년 12월 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 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년 7월 15일 GPA 가입 후 2016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799건(표결 금액 기준 2,067.84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615건(비중 21.97%)이며 낙찰 금액은 총 472.92억 대만달러(비중 22.8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 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2016년)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82	905.29	3	3.66	36.71	4.05
구매입찰	1,173	746.16	574	48.93	417.58	55.96
용역입찰	1,544	416.39	38	2.46	18.63	4.47
합계	2,799	2,067.84	615	21.97	472.92	22.87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 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例)」,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 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3년 6월 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 투자 금지 분야(2013년 6월 17일 개정)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독성화학물질제조(‘독성화학물 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국방부	-
기초금속 공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 제조·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방송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금융 중계업	우편·저축, 환어음	-	교통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 식용버섯·화초농사·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자 제품·광학 제품 제조업	-	군사 기구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법률·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방송 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자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11년 6월 15일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시·현(縣) 정부의 허가과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외송금액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1년 누적송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셰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7건으로 수진(중국산), 구두(중국산), 과산화벤조일(중국산),

탄소강판(중국산, 브라질산, 한국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우크라이나산), 특정 아연 또는 알루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중국산, 한국산), 포틀랜드 시멘트와 클링커(중국산), 300계열의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중국, 한국) 등이 있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及管理辦法, 2001년 9월 4일 제정, 2009년 12월 11일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2억5천만 대만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5천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년 1월 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천만 대만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발표한 2010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7%로 전년대비 1%p 감소되어 세계 랭킹 2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년 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로 인하하여 2024년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적용되어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는 대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9개 국가 중 10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라오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for Thailand), ⑦Import Permit,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Terminal handling receipts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최근 차량 폭증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10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한 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은 불확실하다.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해 국가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는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은 모든 정부 부처, 행정기관, 국영 기업 등이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 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 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EA) 산하 지적 재산표준화국(DIP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협력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라오스는 1995년에 「상표권에 관한 법령」, 2002년에 「특허권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출원한 순서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년 단위로 등록연장이 가능하다(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물의 작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개시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저작일로부터 50년간 존속되고, 저작물이 공시된 경우에는 저작물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된다.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있으며, 이중 Lao-Korean College, Lao Top College, LOGOS Academy, Masters College, Glory School은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환

「외환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pm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pm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pm 2\%$ 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Bee Line, ETL, Sky Telecom, Planet 6개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끼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한 편이나, 2017년 8월 30일 ADB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plaosme.com)를 공식 개설하였다.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라오스인이더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했었으며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후반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한데 비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의 폭발적 증가(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10월 10일 한국 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라오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동남아시아는 4.5% 남짓의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라오스는 각종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6.8% 성장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2011년 4월 구체적 시행령을 공포 시행해 왔으나, 2016년 투자촉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12월 공포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창구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투자 촉진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公安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 유형은 100% 단독투자, 합작 투자(joint venture), 계약에 의한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과거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크게 (i) 외국인투자허가증발급, (ii) 기업등록증발급, (iii) 세무등록증발급, (iv) 기타 인허가발급 절차로 나뉘어졌으나, 2011년 4월 「통합투자촉진법」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가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로 크게 간소화되었으며, 일반사업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허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업등록증만 취득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등록증은 광업, 발전업 등 정부양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단일창구서비스, 그리고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

사업종목에 대한 투자는 총 자본금이 최소 10억 Kip이 되어야 한다.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라오스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公安부의 회사인감 및 정보문화부의 회사인감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선스(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 처리 허가증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0,000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토지항목을 삭제하여 토지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졌다. 토지 사용권은 기존 토지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 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 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2017년 기준 전국 13여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었다.

이중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이미 2003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써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2016년 11월 현재 총 47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투자 진출하였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repatriation), 납세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① 외국환 매입 및 해외송금 신청서
- ② 예금계좌 사본
- ③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자유치증서
- ④ 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증
- ⑤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록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법」에 따른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0년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매출에 따라 0%~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괄세(Lump Sum Tax)제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라오스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필요시 국제중재절차에 의존한다. 라오스는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계약 작성 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정’을 서명하였다.

라오스 「계약법」상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행상 이와 같은 방법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 현황

1989년 라오스 국영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라오스 국영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오 은행)과 다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통해 실업률을 2%로 줄이고 658천 명의 기술인력 양성과 716,893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농업에 치중된 노동인구를 수공업, 기계, 건설, 정보통신등 2차 및 3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 시행중이다.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이직률이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2015년도 최저임금은 900,000 kip(약 114

달러)이다. 이는 2012년 626,000 kip(약 79달러)에서 3년만에 44.4%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7~8%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세의 영향이 크다.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가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1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납부액은 월 보수액의 9.5%이며 고용주가 5%, 근로자가 4.5%를 부담한다.

말레이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1)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

2015년 5월 21일 나집(Najib)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동 계획의 목표, 6대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와 경제성장 궤도의 근본적 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6개 Game Changer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제11차 계획의 목표
 - 경제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 6.0%
 - 2020년 1인당 GDP : 54,100링깃(USD 15,69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 3.2%(2015년)→0.6%(2020년)
 - 투자 : 인프라 구축 등 총 2,600억 링깃(728억 달러) 투자
 - 고용 : 2020년 실업률 2.8%로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1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6대 전략적 추진분야
 - 공정사회를 향한 포용성 향상
 - 국민의 복지 개선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가속
 - 지속가능성·복원력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강화
 - 번영의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 혁신
- 6개 Game Changers
 - 잠재생산성의 발현
 -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 산업주도 직업기술교육훈련
 - 녹색성장 추진
 - 부의 달성을 위한 혁신의 전환
 -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투자

(2) 새 경제모델(NEM: New Economic Model)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추진 중이다.

〈 NEM 기본 원칙 〉

- High Income: 1인당 GDP 7천 달러에서 10년 내에 1만5천달러로 도약
- Sustainability: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집 총리는 NEM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경제개조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수립, 12개 핵심 분야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31개 세부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s)를 도출하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총리실내 PEMANDU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전략의 기조로 1980년대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기치 하에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강력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노트북, 전자부품, 가전제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전기전자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상품으로 부상(총 수출액의 약 35%)하였다. 또, 최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IT, BT 등 지식기술 집약 산업과 이슬람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지역 발전전략

말레이시아는 상기 국가전체 차원의 발전전략과는 별도로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도 동시 추구하고 있다.

- Johor주 등 남부지역: Iskandar Malaysia
- Kedah주 등 북부지역: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
- Terengganu주 등 동부지역: East Coast Economic Region
- Sabah주 지역: Sabah Development Corridor
- Sarawak주 지역: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4) 2018년도 정부 예산안

2017년 10월 27일 나집 총리가 발의한 2018년 예산안은 ‘말레이시아인(Rakyat)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의 번영, 말레이시아인의 삶의 균형, 국가 혁신 2050(TN50)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말레이시아인들의 포괄적인 부의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2018년도 정부 편성예산은 2,800억 링깃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규모이다. 2,340억 링깃(83.6%)은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460억 링깃(16.4%)은 개발투자금으로 편성하였다.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낙후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사회 복지 지원금을 확대 한다는 기조이며, 2018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2.8%로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가스 산업의 매출 둔화에 의해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GST(Goods & Services Tax)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서민들의 생활비 상승 및 부담이 겹쳐 2017년 예산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세금 인하 및 혜택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라부안, 랑카위, 티오만 등 지정된 지역에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들과 말레이시아 등록 항공회사 및 해운사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수입 건에 대해서는 GST가 면제될 예정이다.

최근 경제동향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수출 및 투자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에는 GDP 성장률 -1.7%의 성장 감퇴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전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경제성장률이 4.2%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경제가 회복되어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5.6	4.7	6.0	5.0	4.2
GDP(억 달러)	3,050	3,233	3,381	2,962	2,965
1인당 GNI(달러)	22,160	23,240	24,630	25,860	26,900
물가상승률(%)	1.6	2.1	3.2	2.1	1.8
실업률(%)	3.0	3.1	2.8	3.2	3.4
외환보유액(억 달러)	1,397	1,349	1,159	953	945

소비자물가

2016년 말레이시아의 연간 소비자물가는 1.8%(2015년 : +2.7%) 상승하였다. 2017년에는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0%가 상승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류(+4.2%)를 소비자물가 상승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환율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환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링깃의 평가절하 요인으로선 유가하락, 중국 위안화 절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정치적 불안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말 USD 1 = MYR 4.49에서 2017년 USD 1 = MYR 4.2로 가치가 상승한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중이다.

➡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1달러당 링깃, 기간말)

2016년				2017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3.92	4.02	4.15	4.49	4.43	4.29

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2011년 5월 이후 정책금리(Overnight Policy Rate, OPR)를 3.00%로 유지하는 등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삭감, 최저임금제 시행, 2015년 4월 부가가치세 도입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7월 정책금리를 3.25%로 인상하였으나, 2016년 7월 금리를 3.25%에서 3.00%로 전격 인하 하였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0	3.00	3.25	3.25	3.0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16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1,897억 달러, 수입은 1,687억 달러로 21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11월 이후 무역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대체로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5월)
수 출	228,450	234,039	199,248	189,743	85,746
수 입	206,001	208,950	176,089	168,684	78,253
수 지	22,449	25,089	23,159	21,059	7,493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 중국, 미국이었으며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수입으로는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 3대 수입 대상국이며, 한국은 7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았다.

▶ 2016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1	싱가포르	27,639
2	중 국	23,759
3	미 국	19,397
4	일 본	15,259
5	태 국	10,639
6	홍 콩	9,094
7	인 도	7,734
8	인도네시아	6,679
9	호 주	6,451
10	베트남	5,782
11	한 국	5,487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1	중 국	168,684
2	싱가포르	34,351
3	일 본	17,490
4	미 국	13,770
5	태 국	13,444
6	대 만	10,228
7	한 국	10,107
8	인도네시아	8,884
9	독 일	7,097
10	베트남	5,749
11	인도	4,531

자료: World Trade Atlas(2016년)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팜오일이며, 이들 3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였고, 3대 수입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다이오드반도체장치이며 전체 수입의 24%를 차지하였다.

(2)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 2016년 말레이시아의 수입국 기준 7위, 수출국 11위의 무역대상국이다.

▶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월)
對말레이시아 수출	8,588 (11.2)	7,588 (-11.6)	7,735 (2.0)	7,533 (-2.6)	5,098 (19.4)
對말레이시아 수입	11,096 (13.3)	11,101 (0.05)	8,609 (-22.4)	7,508 (-12.8)	4,737 (9.7)
교역수지	-2,508	-3,513	-874	25	36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철구조물, 집적회로반도체, 합성고무, 경유, 선박,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 반도체, 증유, 컴퓨터부품 등이 주도하고 있다.

▶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2017년 1~6월)			수입(2017년 1~6월)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총계	5,098	19.4	총계	4,736	9.7
1	철구조물	970	2,905.1	천연가스	827	12.8
2	집적회로 반도체	489	3.1	집적회로반도체	678	13.0
3	합성고무	287	74.7	증유	535	-2.4
4	경유	261	42.9	컴퓨터부품	187	8.8

	수출(2017년 1~6월)			수입(2017년 1~6월)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총계	5,098	19.4	총계	4,736	9.7
5	선박	211	-72.8	개별소자반도체	158	-16.9
6	기타정밀 화학원료	153	27.8	알루미늄과 믹스크랩	155	84.2
7	합성수지	140	12.9	식물성유지	136	14.6
8	휘발유	117	30.6	기타정밀화학제품	106	30.6
9	평판 디스플레이	111	-38.4	진공청소기	95	158.0
10	축전기	102	186.5	합판	79	7.0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분류)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은 말레이시아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는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i)당해 물품이 ASEAN 국가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ii)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40% 부가가치 산출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의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증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랗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b) 수입허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AP 대상 상세품목은 www.miti.gov.my 참조).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체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편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

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체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년 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년 4월까지 13.9% 부과 관세를 내고 있다.

Megasteel사는 2015년 10월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2~2014년까지 급격한 열연코일에 대해 급격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한바 있다.

2015년 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바 있다.

2015년 8월 CSC Steel사의 제소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5월의 확정판결 결과 반덤핑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5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0월 12일 최종판정에서 7.27~111.61%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가장 최근 최종판정(2017년 10월 12일)이 이루어진 냉연강판의 경우 포스코 0%, 현대제철 0%, 기타 7.27%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 말레이시아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강선재와 변형 코일 철근	7213.10 7213.91 7213.99 7227.90	세이프가드	2016년 5월 27일	2017년 4월 14일	13.9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	반덤핑	2014년 6월 16일	2015년 3월 12일	14.91%
냉연코일	7209.15.000 7209.16.000 7209.17.000	반덤핑	2015년 8월 27일	2016년 5월 23일	P사 : 3.78% H사 : 11.55%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7209.18.290 7209.18.900 7225.50.000				기타 : 21.64%
냉연압연강	7219.31.000 7219.32.000 7219.33.000 7219.34.000 7219.35.000 7220.20.190 7220.20.900	반덤핑	2017년 5월 15일	To be determined	-
열연압연강판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	세이프 가드	2014년 8월 18일	2015년 6월 29일	2015년 7월 2일~ 2016년 7월 1일 : 17.40% 2016년 7월 2일~ 2017년 7월 1일: 13.90% 2017년 7월 2일~ 2018년 7월 1일: 10.40%
열연코일	7208.10.000 7208.25.000 7208.26.000 7208.27.000 7208.36.000 7208.37.000 7208.38.000 7208.39.200 7208.39.900 7225.30.000	반덤핑	2014년 6월 18일	예비판정일 : 2014년 10월 16일 확정판정일 : 2015년 2월 13일	-
전기도금 양철	7210.12.200	반덤핑	2013년 2월 20일	2013년 11월 15일	동부:9.78% 신화실업:3.46% TCC철강:4.46% 기타 : 9.78%
강선봉	7213.10.000 7213.20.000 7213.91.000 7213.99.000	반덤핑	2012년 6월 26일	2013년 2월 19일	Posco:3.03% 기타:25.20%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 오토바이 안전 헬멧(Motorcyclist Safety Helmet)
- 안전벨트(Motorist's Safety Seatbelt)
- 전기제품(Electrical Appliances)
- 가스 기구(Gas Appliances)
- 화재 안전 물품(Fire Safety Products)
- 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Cement, ceramic tiles, ceramic sanitary ware)
- 통신 장비(Communication Equipment)
- 차세대 디젤 엔진(New generation of diesel engines)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년 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¹⁹⁾

19) http://www.treasury.gov.my/pdf/lain-lain/msia_regime.pdf 참고.

지식재산권 보호²⁰⁾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권, 저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 관련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myipo.gov.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1년 발효된 동법 및 특허법 부분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후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C)에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등록상표 관련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

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d) 저작권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3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업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 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거주 기업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5%이며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 소득중 최초 50만 링깃에 대해서는 20%, 50만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GST의 도입과 함께 2016년부터는 법인 세율을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과세 소득이 16,667링깃 이상일 때 1~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2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2014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였다.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5년 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Sales Tax 1972, Service Tax 1973에 따라 부과해온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신하여 2015년 4월부터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oods and Service Tax가 도입되어 일부 면세, 영세율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동 세제 실행은 관세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년 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총 274억 링깃의 외국인투자를 유치(승인 기준)하였다. 2016년에 FDI로 승인된 주요 제조업 분야는 화학제품, 석유제품, 전기전자제품, 기본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식품제조, 기계장치, 고무제품 등이다.

▶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투자액	29.1	34.2	20.9	30.5	39.6	21.9	27.4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016년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말-싱 고속철, ECRL(East Coast Rail Line) 프로젝트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하였다. (한국 5위).

▶ 2016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중국	4,774	21%
2	네덜란드	3,216	14%
3	독일	2,645	12%
4	영국	2,574	11%
5	대한민국	2,169	10%
6	싱가포르	2,113	9%
7	일본	1,861	8%
8	미국	1,412	6%
9	인도	1,334	5%
10	벨기에	584	2%
Total		22,682	100%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2) 한·말레이시아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198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13.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신고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2015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투자 산업분야로는 전지전자, 석유화학,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광업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친환경산업(에너지), 금융 분야로 다변화·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 한·말레이시아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6월)	누계*
對말 투자	금액	417	279	54	236	119	11,325
	건수	87	92	124	123	67	1,899
對韓 투자	금액	54.5	28.2	89.5	89.7	86.2	7,763
	건수	16	18	20	19	16	8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n)이 55,000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례로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0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상사 및 현지 법인, 교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년 11월 이후 설립·운영 중이다.

▶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엘피온, 동부메탈, 코웨이,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CJ Bio, 휴켄스 등
도소매업	대우인터네셔널, 삼성물산,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현대상선, CJ GLS 등
건설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189개 국가중 18번째로 기업하기 용이한 나라로 평가했다. IMD의 2016년 세계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는 19위로 평가 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역시 2016~2017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순위를 25위로 발표하였으며(한국은 26위) 특히, 우수한 금융환경, 노동 시장의 개선 등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태스크포스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개조프로그램(EPT)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규제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연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 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려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 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14년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10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 비자는 최초 5년까지 발급가능하고, 이후 추가 5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2013년 실시 이후, 최근 2016년 7월 1일 개정되어 서 말레이시아는 월 900링깃에서 1000링깃, 동 말레이시아는 월 800링깃에서 920링깃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외환관리

1998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년 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 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 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c) 투자 인센티브²¹⁾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21) 세부 사항은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홈페이지(www.mida.gov.my) 참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5,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투자 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 이후로도 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의 투자는 개척자제도의 과세대상 소득 감면폭과 ITA의 과세대상 소득의 감면 상한이 100%로 늘어난다. 인센티브 신청은 투자청(MIDA)에서 관장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10년간 100% 과세대상 소득 감면 또는 ITA 혜택을 통해 5년간 자본지출의 100%를 과세소득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투자(reinvestment)에 대해서도 일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업종별 인센티브 상세내용: <http://www.mida.gov.my/env3/index.php?page=manufacturing-sector-2>)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회사가 수익을 낸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5년내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바이오넥서스 지위를 부여

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IT 분야의 경우 MSC(Malaysia super corridor, 말레이시아 정보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Cyberjaya라는 과학 단지, IT도시를 구축하였으며 MSC프로그램은 4가지 클러스터(Creative Content & Technologies, IHLs & Incubators, InfoTech, Global Business Services)로 나누어 해당되는 기업에 MSC status를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관련 장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주요 프로젝트 입찰 지원 ▲인프라 및 정보 제공 등 10가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3) 서비스 분야 투자 자유화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제조업 분야 외국인의 투자 지분 참여 제한을 없앤데 이어, 2009년 4월 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 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27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 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다.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년 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발표시 17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신(ASP license), 기술직업학교, 사립병원, 백화점, 회계세무법인 등 9개 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 1월부터 100%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학교, 통신(NSP, NFP license), 사립대학, 치과, 법률서비스, 건축, 설계 등 8개분야는 개방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치에 착수하였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 개방 조치와는 별개로 실제로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면허(Licensing)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한국기업이 100% 소유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기업이 도소매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통소비자부에서 발급하는 WRT(Wholesale Retail Trader) License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건설업과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별 수치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업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농수산업	2.1	2.6	1.0	-5.1
광업	0.7	3.1	4.7	2.2
제조업	3.5	6.2	4.9	4.4
건설업	10.9	11.6	8.2	7.4
서비스업	5.9	6.3	5.1	5.6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매출액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매출액은 정제 석유제품의 매출액이 가장 높으며 TV, 라디오, 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산업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말레이시아 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링깃)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232,720	253,392	133,410
식물성및동물성유지	21,557	24,077	19,980
음료및담배	7,321	8,689	1,340
섬유및의류	3,450	3,865	1,820
목재제품, 가구, 종이및인쇄류	13,435	14,499	13,460
석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80,105	83,128	29,910
금속및비금속	28,374	30,165	13,400
전기전자및광학	54,228	61,977	32,200
운송장비및기타	24,250	26,993	9,200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2016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년 대비 3.9%증가하였다.

▶ 말레이시아 산업생산지수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광업	96.2	97.0	99.8	104.8	106.5
제조업	111.3	116.0	123.0	128.9	134.4
전기	107.2	113.1	118.4	121.2	131.5
산업합계	106.7	110.3	116.0	121.5	126.2

주: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 · 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가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증가중인바, 에너지순수입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원자력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년 국가 석유·가스정책을 시작으로 1979년 국가에너지정책, 1980년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 1981년 4대에너지정책, 2001년 5대에너지정책, 2010년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시장경쟁도입과 그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한 점진적인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정책실행의 가속화, △시장가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 개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등의 전략을 선정, 시행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약 58.5억배럴로 추정되며,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압력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매장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인도, 태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2010년 약 7.1만ktoe으로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LNG 공급국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고,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규모(Installed Capacity)는 26,522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1,954MW, 사바가 1,324MW, 사라왁이 3,244MW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소비시장은 전체 51,584 ktoe중에서 43.3%(22,357ktoe)를 사용하는 교통분야와 26.2%(13,496ktoe)를 이용하는 산업분야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도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말레이 반도에 발전차액보조제도(FiT)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당시 신재생에너지펀드 조성을 위한 1%의 전력요금 추가 징수는 2014년 1월부터 1.6%로 상향조정되었다.

인프라 · 건설 시장

2017년 건설산업은 현재 진행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의 영향으로 8%의 성장을 기록하며 1,700억 링깃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에서 교통분야 인프라 시장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며, 전력 플랜트 시장도 공급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돼 전망이 밝은 편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17년 7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노선의 절반이 완공되어 운행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지하철공사(MRT Corp)는 총 사업비를 약 230억 링깃으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정부보증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또, 2013년 2월에는 말-싱 정상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전철 사업에 전격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간 정착역, 운영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모두 마쳐 서명을 완료하였다.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고속철 기술보유 기업들이 여러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360km 구간, 소요시간 90분, 말레이시아내 총 6개역(KL포함), 사업비 130억 달러(예상), 민자 방식(BOT)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1년 이래 금융부문은 연평균 7.3% 성장하였으며 실질GDP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내 위상이 확대되었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외환위기 전후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변화

외환위기 이전	현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 다기화된 금융기관 - 채권시장 미발달 - 간접금융시장 의존 - 경직적인 규제 및 감독 - 이슬람금융 기능 미약 - 금융상품 가격발견기능 미흡 - 자금조달 차별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최적화된 금융기관 - 심도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시장 - 기업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강화 -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중개 - 견고한 감독 및 규제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소비자보호프로그램 구축 - 이슬람금융 허브 토대 구축 -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조달 확대 -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장 구축 - 금융 및 실물경제간 연계성 강화

2016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7개, 투자은행 11개, 이슬람은행 16개 등이 영업중이며 이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구성(2016년 말 현재)

	1986년			2016년		
	국 내	외 국	계	국내	외 국	계
일반은행	22	16	38	8	19	27
금융회사	42	5	47	2	0	2
이슬람은행	1	0	1	10	6	16
외국이슬람은행	0	0	0	0	2	2
투자은행	12	0	12	11	0	11
합 계	77	21	98	31	27	58
보험회사	53	10	63	18	15	33
재보험사	1	0	1	3	4	7
타카풀사	1	0	1	9	2	11
재타카풀사	0	0	0	2	3	5
외국 타카풀사	0	0	0	0	0	0
합 계	55	10	65	32	24	56

자료 :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 BNM

IMF 및 세계은행도 최근 발표한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에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이 은행, 보험, 펀드 등 각 영역별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Halal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년 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현재 한국에는 약 15만 명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 식품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JAKIM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CJ 제일제당, 청정원, SPC 등이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3년에는 크라운제과(스낵 4종), 풀무원(라면), 농심(라면)이 인증을 받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할랄인증 제품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 7월 1일 말레이시아 JAKIM이 한국 이슬람협회(Korean Muslim Federation)를 할랄인증 기관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한국내 할랄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역 투자 현황

교역현황

한국의 對몽골 교역은 큰 폭의 무역흑자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몽골경제 침체로 인해 양국간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화장품 등이며,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광물, 양모 및 가죽 등이다.

▶ 한·몽골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 출	399.5	-7.8	346.8	-13.2	245.7	-29.2	209	-15.0
수 입	26.9	-49.7	23.6	-12.5	46.2	95.8	10	-77.6
무역 수지	372.5	-1.8	323.2	-13.2	199.5	-38.3	199	-0.2

자료: 한국무역협회

투자현황

2015년까지 한국의 對몽골 투자 총액은 840.4백만 달러이다. 신고건수로 보면 누적 건수(신고기준) 1,323건으로, 광업분야(33.6%), 도소매 및 외식업(16.8%), 부동산업(11.9%), 건설업(11.2%) 순이다. 한편, 몽골의 對한국 투자는 2015년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61.8백만 달러(신고기준 993건)에 불과하다.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2016년 몽골의 국내 총생산은 23.9조 투그릭으로 GDP 성장률 1.0% 기록하였다. World Bank의 2016년도 국가별 GDP 순위에 의하면, 몽골의 GDP는 111억 달러로 조사대상국 195개국 중 1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총생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GDP 규모	102억 달러	115억 달러	115억 달러	115.7억 달러	112억 달러
	16조7천억 투그릭	19조1천억 투그릭	21조 6,610억 투그릭	23조 1,069억 투그릭	23조 9,680억 투그릭
GDP성장률	12.3%	11.7%	6.9%	2.3%	1.0%
1인당 GDP	3,627달러	3,980달러	\$3,843달러	\$3,781달러	\$3,704달러

자료: World Bank, IMF, 몽골통계청

산업별 국내총생산(2016년)

분야	금액(십억 투그릭)	비중(%)
광 업	4,808	20.1
농림축산업	2,796	11.7
도소매	2,678	11.2
제조업(가공)	1,736	7.3
부동산	1,615	6.7
건설	948	4.0
금융, 보험	1,247	5.2
운송, 창고	1,216	5.1
교 육	1,044	4.4
공공분야	1,118	4.7
정보통신	507	2.1
전력가스	462	1.9

자료: 몽골 통계청, 단위 :10억 투그릭

국내총생산 산업별 구성비는 2016년 기준 광업 20.1%, 농림축산업 11.7%, 도소매 11.2% 등이다.

몽골 교역 현황

2016년 몽골의 교역규모는 총 82.7억 달러 수준이며, 약 15.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교역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 출	4,385	4,269	5,774	4,669	4,916
수 입	6,738	6,357	5,236	3,797	3,358
무역수지	-2,354	-2,088	538	872	1,558
교역규모	11,123	10,626	11,010	8,466	8,274

자료: 몽골 통계청,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수출품 중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를 상회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구리 수출액이 16억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가전제품이 전체 수입의 20%를 차지하며, 석유제품(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등),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중국으로 몽골 무역에서 수출비중이 79%, 수입 비중이 31%(교역액 기준 59.5%)이다. 그 외 몽골의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다.

▶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동, 아연, 철강, 형석, 석탄, 원유, 캐시미어 등	석유제품, 철강, 버스, 트럭, 음료, 닭고기, 쌀, 섬유 등
對러시아	형석, 양털 등	석유제품, 밀가루, 쌀, 마가린, 전력, 버스 등
對일본	-	승용차, 트럭 등
對한국	광물, 의류, 가죽 등	석유제품, 버스, 휴대폰, 트럭 등
對미국	-	닭고기, 승용차, 트럭 등

자료: 몽골 통계청

▶ 주요 교역대상국(2016년 기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기타
수 출 (비중)	3,911 (79.6%)	55.8 (1.1%)	14.0 (0.3%)	8.5 (0.2%)	10.5 (0.2%)	43.4 (0.9%)	3.7 (0.1%)	869.4 (17.7%)
수 입 (비중)	1,061 (31.6%)	880.4 (26.2%)	330.2 (9.8%)	197.9 (5.9%)	139.2 (4.1%)	120.3 (3.6%)	19.2 (0.6%)	609.8 (18.2%)
총교역액 (비중)	4,972 (60.1%)	936.2 (11.3%)	344.2 (4.2%)	206.4 (2.5%)	149.7 (1.8%)	163.7 (2.0%)	22.9 (0.3%)	1,479.2 (17.9%)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단위: 백만 달러

물가 및 환율

몽골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2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 6%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다시 14.2%로 두 자리 수 물가 상승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 물가상승률은 1.1%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몽골 중앙은행은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3.25%까지 인상하였으나, 2013년 6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5%로 인하하였으나 물가상승,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13.0%, 2016년 8월 15.0%로 각각 다시 인상하였고, 2016년 12월 14.0%, 2017년 6월 12.0%로 각각 인하하였다.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석탄자원 수출 감소 및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가 감소하면서 2013년도 평균환율(1달러=1,524 투그릭) 대비 약 63.3% 평가절하(1달러=2,489투그릭, 2016년 12월)되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일부 품목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5102.19.41, 5102.19.42	낙타 수컷의 털 및 세척털	1kg당 100TG
5102.19.43, 5102.19.44	낙타 암컷의 털 및 세척털	1kg당 200TG
4401, 4403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그 외에 몽골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세품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 나무 수목 및 씨앗
-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 털 가공 및 옷 생산을 위한 공장 장비 및 부속품
- 농업용 장비, 트랙터, 밀가루 공장용 자재 등
-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내각 191 결의문 명시 리스트)

수입부과금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도박용 게임기계 및 관련 장비 등에 부과

- 특별세율은 그간 미달러로 부과해 왔으나, 2015년 1월 「특별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은 유지하되 1달러=1,450 투그릭을 일괄 적용하여 몽골 투그릭으로 부과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별세는 2009년 4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 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몽골 헌법재판소는 수입 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은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009년 6월 부터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에 대한 특별세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현재는 국내산, 수입산 맥주의 차등 없이 290 투그릭(20센트) 부과

몽골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확대금융제도(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을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주류, 담배, 유가 등 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하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2017년까지)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몽골내 생산 물품	수입 물품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1,450 14,500	- -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리터당	2,900	2,900
	- 도수가 25도 미만	리터당	5,800	5,800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리터당	13,050	13,050
	- 도수가 40도 이상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몽골내 생산 물품	수입 물품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7,250 14,500 17,400	7,250 14,500 17,40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290	-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725 6,525	725 6,525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290	290
6	결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480	3,4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2,610	2,61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 -
9	디젤	톤당	0-21,750	-

➡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2018년부터 적용)

구 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약품공장, 병원, 동물병원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1,595 1,450 15,950	1,670 1,450 16,700	1,740 1,450 17,400
2	모든 종류의 보드카, 리큐어, 리큐어술: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3,190 6,380 14,355	3,335 6,670 15,000	3,480 6,960 15,660
	모든 종류의 코냑, 위스키, 롬, 진;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7,975 15,950 19,140	8,340 16,700 20,010	8,700 17,400 20,88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320	335	350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800	835	870
		리터당	7,180	7,505	7,83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320	335	350
6	컬런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 당	3,830	4,000	4,1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2,870	3,000	3,13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0-15,950	0-15,950	0-15,950
		톤당	0-17,400	0-17,400	0-17,400
9	디젤	톤당	0-21,750	0-21,750	0-21,750

➡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 ³)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1500이하	75	160	335	1,000
2	1501~2500	230	320	500	1,170
3	2501~3500	305	400	670	1,335
4	3501~4500	685.75	800	1,085	1,750
5	4501 이상	1,421	2,720	3,915	6,597.5

➡ 도박 게임기, 베팅 기계, 장비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당 특별세율 (대당, 매월, 만투그릭)
1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11,600
2	자동 게임(777)	435
3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11,600
4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터	11,600

주: 특별세 면제 대상은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임.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몽골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정부 등이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특소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 10월 현재 몽골정부는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구별 없이 특소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 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천만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0만 투그릭 이하의 경우 외국기업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경보전법」, 「외국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신투자법

몽골 신투자법은 2012년 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 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국가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국가등록청에 관련 서류 제출시 6일내 허가를 해준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15~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허가를 연장하며, 몽골내 소속 기관 공문과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과 함께 도로경찰청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 은행
 - 몽골 금융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 이상을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구조이다.
 - 2016년도 기준 총 14개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4위의 TDB 은행, Khan 은행, Khas 은행, Golomt 은행이 전체 예수금의 78%, 전체 대출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계 은행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ING, SMBC, Bank of Tokyo-Mitsubishi UFJ, Bank of China 및 ICBC 등 총 5개 기관이 진출하고 있다.
- 보험
 - 2016년도 기준 17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이들 보험사의 영업 형태는 주로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16년도 기준 535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주로 대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 증권
 - 몽골 주식시장은 일일평균 거래량이 1억 투그릭 내외로 주식거래가 미미한데,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1년 정기적금 15%내외)로 인해 주식투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
 - 또한 주식상장시 해당기업에 주어지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MCS, MAK, Just Group, Bodi Group 등 몽골 주요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한, 또는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양자간 FTA 발효(2015년 12월)를 통해 87.8%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89.9%의 품목의 수입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나, 2012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 ESCAP 분석)로 낮아졌다. 그리고 미국 등과의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 200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5년까지 20%, 202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 양허, 고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세 양허 약속

-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 2007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Normal Track(일반품목)의 관세를 2018년까지 100% 철폐하고, Sensitive Track(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로, High Sensitive Track(초민감품목)의 관세는 2021년까지 5~50%로 인하를 약속
-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 2008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62.2%를 2018년까지 철폐하고, 2025년까지 88.6%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약속
-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 2010년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은 2010년부터 관세 철폐 약속, 아세안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전체 상품 중 93%를 2015년까지 철폐하고, 2018년부터 100% 철폐 약속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54%를 2016년까지 철폐, 85%를 2018년까지, 90%를 2020년까지 철폐 약속
-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 2010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70%를 2018년까지 철폐, 2024년까지 추가 19% 철폐 약속
-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 2009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9%를 발효 후 16년 이내 철폐 약속

- 베트남-칠레 FTA (VC FTA; Vietnam-Chile FTA)
 - 2014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7.8%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 2015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92.4%를 발효 후 15년 이내 철폐 약속
- 베트남-EAEU FTA
 - 2016년 발효되었으며, 베트남은 전체 상품 중 89%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 약속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에는 아세안-한국 FTA(2007년)와 베트남-한국 FTA(2015년)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 또는 V-K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V-K FTA는 A-K FTA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베트남은 2012년 수입액 기준 6.1%만큼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베트남 수출시 A-K FTA 또는 V-K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 또는 V-K 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²²⁾하며, 수출자는 A-K FTA 또는 V-K FTA 중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A-K FTA 또는 V-K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2)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을 참조하면 된다.

한·베트남 FTA 내용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4%로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3%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9%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 미파쇄)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천연꿀, 팔, 고구마 전분은 15년 철폐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허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 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관세율표

201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령 122/2016/ND-CP (2016년 9월 1일)」에 의거 적용된다. 한국의 수출입자는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HS 코드 확인을 명확히 하여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²³⁾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나 현재는 베트남 관세율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23)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한·ASEAN FTA에 국한되며, 한·베트남 FTA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아세안-중국 FTA (AC FTA; Asean-China FTA), 아세안-한국 FTA (AK FTA; Asean-Korea FTA), 아세안-일본 EPA (AJ EPA; Asean-Japan EPA), 아세안 상품 무역 협정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 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아세안-인도 FTA (AI FTA; Asean-India FTA), 베트남-일본 EPA (VJ EPA; Vietnam-Japan EPA),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한국 FTA (VK FTA; Korea-Vietnam FTA), 베트남-유라시아 경제연합 FTA(Vietnam-EEU FPA) 총 10개이며, TPP, 베트남 EU FTA가 타결되었고,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한국이 포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협상 진행 중이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조건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물품 생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입 종합 인증제도(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No. 72/2015/TT-BTC」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신속하고, 간소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월 1회 일괄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되어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를 늦출 수 있다.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기업, 베트남 재무부에서의 규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견해를 받은 기업,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기업, 직전 2년간 평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4천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또는 3천 달러 이상의 농수산물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2만건의 신고대행 실적을 보유한 통관대행기업, 전자 통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8년 특별소비세법(Law 27/2008/QH12)」이 적용된 2009년 4월 1일 이래(주류 관련 조항은 2010년 1월 1일 발효), 2016년 10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법을 발표하였다. 2014년 12월 초,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Law 70/2014/QH13)」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상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관리법 일부개정법률(Law 106/2016/QH13)」발효돼 수입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수입가격(CIF 가격)에서 수입자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으로 변경되고, 24인승 이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조정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과세대상 품목별로 7~15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 담배류
- 주류

- 24인승 미만 자동차
- 배기량 120CC 이상의 이륜 또는 삼륜 모터사이클
- 항공기
- 요트
- 각종 유류제품
- 90,000 BTU 이하 에어컨
- 게임용 카드
- 제사용품

(2) 특별소비세율 과세대상 용역

-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사업
- 마사지, 가라오케 사업
- 카지노, 사행성 전자게임 사업
- 사행성 배팅 사업
- 골프 사업
- 복권 사업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8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Law 13/2008/QH12)」을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개정법이 동시에 적용

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일 경우, 해당 세액 포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베트남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 적용대상: 수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 운송,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단, 다음을 제외한다.

-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 역외재보험
- 금융용역
-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 우편 통신 서비스
-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또는 천연자원 및 광물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상품 제조 단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 가공품

(2) 5% 적용대상

- 산업 및 생활용수
-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역, 농업용 수로·도랑·연못, 호수 등의 준설용역, 경작, 병충해 박멸, 농작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농작물·축산물·수산물

- 1차 가공된 고무 송진·수지, 그물·밧줄 및 그물 생산에 사용되는 식물
 - 생식료품, 목재·죽순 및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비가공 임산물
 - 설탕, 설탕줄기·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 황마, 골풀, 대나무, 짚, 잎, 코코넛 껍질, 코코넛 열매,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업품, 1차 가공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쟁기, 쇠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의료 장비 및 기구, 의료용 면사 및 위생 밴드,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 약학제품, 의약품 생산원료
 - 모형, 도면, 철판, 분필, 자, 콤팩스 등 교육 및 학습용 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 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배급·상영
 - 아동용 장난감과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서적
 -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과학, 기술 용역
- (3)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등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금속, 철·비철 금속 Scrap 등 87개 품목에 대하여 0~5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 시행령인 「Decree No. 122/2016/ND-CP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Law 107/2016/QH13을 통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211개의 상품그룹(HS CODE 4단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이 제품가격의 51%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20%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가공 수준이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대한 수출세율은 높게 책정하여 해당 자원의 유출을 막고, 가공 수준이 높은 천연자원 등에 대한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Law 04/2007/QH12」).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과세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자 개인으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양력 1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베트남에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거주한 경우
- 항구적 주거지를 가진 경우(상주신청을 한 주거가 있는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한시적 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 주거를 임차한 경우 등을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 구간별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이상: 35%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납부한 뒤 수입될 수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일시수입-재수출 절차를 거쳐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관련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샘플은 VND 50,000을 초과하지 않거나 오직 샘플로써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것에 한정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광고 및 홍보물품은 1kg을 초과하지 않는 1부만 면세 적용 가능함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면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판촉물과 팸플렛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 시에도 면세 범위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

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 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도록 하였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과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번역이 불가하거나 번역을 하였을 경우 의미전달이 불가한 국제적 도는 식물학적 성분의 이름 등을 제외하고, 필수기재정보는 베트남어로 표기
 - 수입재화에 베트남어로 표기된 필수기재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한 추가적인 라벨이 본래의 라벨과 함께 부착되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표기된 내용은 본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
 -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 그 밖의 Decree 43/2017/ND-CP Appendix I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필수정보(예. 화학물질의 경우, 수량, 제조일, 사용기한, 성분, 화학물질 식별번호, 경고표시, 예방법, 사용 및 보관 방법 안내문)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 필요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 서류 준비 필요
- 의약품 : 의약품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품질인증서(ex. ISO 9001) 등 서류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2013년 11월 20일,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가 발표되어 2014년 2월 2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한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풍등, 교통수단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 중고 소비재(섬유·의류제품, 신발, 전자제품, 냉장기기,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제품, 도기·유리·금속·플라스틱·고무·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출판물, 우편법에 의해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표, 무선장비·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 우측 핸들 차량(분해된 상태의 차량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포함되며,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각종 차량과 그 부품 및 오토바이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트랙터·오토바이의 부품 기기·프레임·타이어, 자동차·트랙터의 차대(chassis) 중 중고 엔진이 부착된 새 차

대와 새 엔진이 부착된 중고 차대를 모두 포함, 개조된 차량,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차량, 구급차, 자전거, 오토바이

-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 폐기물, 스크랩,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과 자재
-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이행 베트남 시행령(Decree 100/2005/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화학물법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2) 수입허가 품목

동 시행령에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입 시 정부 관할 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관할 부처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9,5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5,5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 베트남 각 행정부처별 관할 품목 품질관리 대상 규정 시행규칙

- 보건부 : Circular 31/2017/TT-BYT
- 교통부 : Circular 39/2016/TT-BGTVT
- 산업무역부 : Circular 41/2015/TT-BCT,
Circular 29/2016/TT -BCT
- 정보통신부 : Circular 42/2016/TT-BTTTT
- 공안부 : Circular 14/TT-BCA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Circular 50/2009/TT-BNNPTNT
Circular 50/2010/TT-BNNPTNT
Circular 44/2011/TT-BNNPTNT
- 과학기술부 : Circular 01/2009/TT-BKHCN
- 노동보훈사회부 : Circular 03/2010/TT-BLDTBXH

환경관련 규제

「2005년 환경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2014년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이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20개 장 170개 조로 구성된 신규 「환경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기존법과 유사한 내용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실효성이 보완되었으며, 환경보호 관련 새로운 정책과 방침이 법문화되었고, 일부 내용이 세부화·구체화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재정 내 환경보호 관련 지출항목 편성 및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보호 지출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 정책 추가,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규정 신설, 폐기물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수입 가능한 폐기물의 세부 조건 마련 등이 있다.

(1) 수입활동 관련 환경보호 규정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2)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환경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의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한편, 신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제도로서 ① 환경보호 마스터플랜(국가 단위와 성단위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② 전략적 환경평가(이행 대상 : 국가 및 지방 성·시 단위, 경제구, 공단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과 계획) ③ 환경영향평가(이행 대상 : 국회·정부·총리에게 투자결정권이 있는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자연보전지역·관광지역·문화·역사 유적지·생태보존지역 등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④ 환경보호계획서(이행 대상 : 환경영향평가 이행 미대상 프로젝트,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미대상 생산·사업·서비스 방안)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이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실시돼야 하며, 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2015년 2월 14일자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18/2015/ND-CP」)은 18개 업종별 113개 프로젝트 군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조건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또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 시행 및 단속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 전문조달기관은 없지만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베트남「입찰법」기본법은 2013년에 개정된 입찰법 제43/2010/QH13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시행효력을 가진 하위법령으로는 시행령(6개), 시행규칙(1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찰참가자격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 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으로 CR 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공여국의 국제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 입찰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전자입찰의 경우, 베트남 총리가 전자입찰에 대한 2016~2025 마스터플랜 (결정서 1402/QD-TTg)을 2016년 7월 13일에 승인하였다. 내용에 따른 2025년까지의 목표는 ‘①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 입찰 과정 전체 100% 등록 ② 개정 입찰법 범위에 속하는 입찰 중 최소 70%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실행 ③ 연속구매, 집중구매 관련 활동 시스템 상에서 100% 실행’ 등 3가지로 정하였다. 이밖에, 2017년 5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시공,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입찰방식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오랜 관행이 법 규정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물품구매는 다수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정보 수집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 내 진행 프로젝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투명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 단계에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즉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밖에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적용되는 몇 가지 국제 협약에 비준했는데, 2004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규정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국내에서 등록 또는 출원한 산업재산권(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비준했다.

대내적으로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개정법, 2006년 기술이전법, 형법, 민법 및 관련 하위 법규(시행령, 시행규칙)를 토대로 자국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선, 그간 다수 법규에 산재돼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과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6/2009/QH12)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지식재산권, 식품 품종에 대한 권리 규정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조치들을 담고 있다.

2006년 공포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령(Decree 105/2006/ND-C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 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법원, 검사, 시장 관리 당국, 세관 당국, 경찰 기관 및 모든 행정 단위의 인민위원회)이 잠정적 조치는 물론, 수출 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통제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집행 당국은 물론 지식재산권 소유주 및 관련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가된 지식재산권 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의견을 발표한다.

2009년 개정 지식재산권법(Law 36/2009/QH12)에서는 영화, 사진, 응용 예술 작품 및 익명 작품에 대해 최초 출판(발표)일로부터 75년간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 상표 및 산업 디자인 등록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선등록 원칙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었다.

형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7/2009/QH12)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를 높여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동 법에서는 벌금 형량을 최대 5억 동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영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산업재산권 침해가 의도적으로 영리화된 경우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금 없이 벌금형과 최대 2년간 재교육의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 행위가 반복될 시 최대 3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공동 시행규칙(Circular 07/2012)을 규정해 인터넷 및 전기통신망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통신사,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 SNS 및 검색 엔진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상에서 관리, 전송되는 콘텐츠는 물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거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 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녹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 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2년 6월 21일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 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5년 7월 1일 발효)

2014년 11월 6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금지 또는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수를 줄였는데 「투

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줄어들어 외국인 투자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해당 관련 법인설립 인증서인 ERC(회사설립 허가서)와 IRC(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세분화되었다(기존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IC(Investment Certificate)가 프로젝트와 회사 설립을 동시에 포함).

바뀐 규정에 따르면, 법인설립·투자프로젝트 인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ERC 신청·발급 이전에 IRC를 사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상기 언급된 IRC 와 E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투자(Investment)의 개념이 변경됐다. 기존 투자법상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를 포함했으며 직접투자는 투자+목적사업 관리·운영, 간접투자는 투자(주식 및 채권 매입 등)로 각각 구별돼 사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투자활동이란 투자자가 법인 설립, 출자 및 주식매입, PPP사업 및 BCC 계약 방식으로의 모든 투자를 포함한다.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갈,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신규)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 자본출자,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 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 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년 11월 18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 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필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 규제

베트남에서 외환관리는 국가 독점업종으로, 관리기관인 중앙은행이 외국환을 집중 매각·예치하고 있다. 2011년 8월 12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규칙 (Circular 15/2011/TT-NHNN)」에 따라 베트남에서 신고 없이 반출·반입 가능한 휴대반입 외화 액수는 미화 5,000 달러이다.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할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규정된 금액 또는 가장 최근의 외화 반입 신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반출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금융기관의 외화반출 확인서와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화 반출 승인서를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베트남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도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 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계좌가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당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 또는 합법적으로 발생한 외화수입에 한해서만 휴대 반출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 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년 10월 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804/2003/ QD

NHNNJ).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선택적 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을 매일 고시하던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기준 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의 선택적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신규 환율제도 도입은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 변동 요소, 베트남과 무역·투자·대출 관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통화 환율 변동 요소, 국제수지 및 정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베트남 외환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5)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 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 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달러거래 제한 목적의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례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ti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계약, 협정에서의 가격 기재를 베트남

동화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허용된 금융기관(외국계 은행의 지사 포함)의 외화대출 범위는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 목적의 투자 용도, 유류제품 수입 중계상의 수입대금 결제, 국회 또는 정부 결정에 따른 해외투자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 18일부터 개인 예금 주에 대한 달러화 예금금리를 기존 0.25%에서 0%로 인하하였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년 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1%이다.

경쟁정책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베트남은 시장기제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대표적 결과가 2004년에 제정돼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경쟁법(Law 27/2004/QH11)」이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창설하였는데,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국가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경쟁관리국이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미비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 분야도 다수 상존하고 있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기타 장벽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애로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47/2014/QH13)」에 따르면,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단기 체류자는 최대 3개월 이하만 체류가 허용되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받

급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 출장용 무비자 입국 시(15일) 출국 후 30일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등 비자관련 애로사항이 있다.

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Decree 11/2016/ND-CP」, 2016년 4월 1일 발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해외에서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 또는 기타 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도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오다, 1994년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수입 관련 무역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입법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처음에는 스리랑카의 수입 장벽이 복잡해보일 수는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간소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112위로서 전년 대비 다소 하향했지만, 네팔(125위), 파키스탄(141위), 인도(143위), 몰디브(157위)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정부가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동 지수가 다소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장벽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증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폭은 0% 무관세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증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

실행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 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 제4라운드는 2007년 10월부터 약 10년간 추진되어 2017년 1월에 최종 타결되었는데, 양허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서特惠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국가재건세(NBT), 항공항만세(PAL) 등의 다양한 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IF 가격에 비해 10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VAT), 국가재건세(NBT), 물품세(Excise)는 수입품과 내수품에 모두 부과되고, 수출진흥세(Cess), 항공항만세(PAL), 항만처리비(Port Handling Charg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11%에서 15%로 인상되었다.

국가재건세는 수입자, 제조업자, 소매 및 도매 서비스공급업자의 자체평가(self-assessment)에 근거해서 납부하는데, 현지 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 공급업자는 세무서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수입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수입시 국가재건세를 관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항공항만세(PAL)는 2002년 「금융법(Finance Act No. 11 of 2002)」에 의거하여 수입품에 7.5%가 부과된다.

수출진흥세(Cess)는 자국 수출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부과되었는데,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약 2,000여개 이상의 품목들에 부과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스리랑카는 2016년 1월 통관단 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모든 수출입자들은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수출입 과정상의 많은 장벽이 줄어들고, 통관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여지도 감소되고 있다.

수입자는 세무서(Inland Revenue)에 등록하여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확보해야 하고, 관세신고서(CUSDEC)를 작성하여 인보이스, B/L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통관자료자동시스템(ASYCUDA)을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모든 이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될 경우 화물 통관이 평균 4시간내로 가능하며, 약 80%의 화물이 당일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스리랑카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7개 서류가 필요하고,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실제 시간은 컨테이너 1개당 136시간이며, 약 693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인근 서남아 국가들과 비교시, 소요시간은 인도 406시간, 파키스탄 786시간, 방글라데시 347시간으로서 스리랑카가 비교적 신속한 편이고, 경비 면에서는 인도 1,254달러, 파키스탄 2,048달러, 방글라데시 1,861달러로 스리랑카가 매우 저렴한 편이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들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하여 생산에 투입시킬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

하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인해 아무리 통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규정

스리랑카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어서, 스리랑카와의 교역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적으로 HS코드 4자리 혹은 6자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협정 및 교역대상국에 따라 대략 30~60% 정도를 차지한다. 원산지 판정시 누적(accumulation) 원칙이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허용된다.

다양한 무역협정상의 특혜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각 개별 협정별로 제출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상공부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고, 중국, 인도,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스리랑카는 국가안보, 안전, 환경, 보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폭발물질이 포함된 폭죽, 장난감 총, 위조화폐, 생선, 곡물, 온혈동물로부터 추출된 고기, 10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농업 및 건축용 기계류, 상아로 만들어진 보석 및 물품, 약물, 외설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자나 마취성 품목 등은 수입이 규제된다.

현재 통제 및 금지 수입품목 리스트는 2013년 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입규제 품목 리스트는 국회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수입허가(license)는 「수입수출통제법(Imports and Exports(Control) Act No. 1 of 1969)」에 의해 규제되며, 환경, 공공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일부 화학 물질을 제외하고는 양적(quantitative) 혹은 가치(value-based) 기준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없다.

수입허가는 선착순 원칙에 의거, 일주일 단위로 시행되며, 보통 수입하기 1개월 전에 부여된다. 의약품 등 1년 수입허가(block license)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현지 투자한 경우에는 재수출에 한하여 수입허가가 부여되기도 한다.

구 분	주요 대상품목
의약품	Western drugs, Veterinary drugs, Indigenous Medicine, Surgical Sutures
차 량	Special Purpose Vehicle, Hearses, Engines, Body Shells, Cabin, Motor Cycles, Aircraft Parts & Accessories 등
화학품	Petroleum Products & Lubricants, Insecticides & Pesticides Substances, Radio Active Materials, Alcohol & Spirits 등
통신 및 전자기기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 Cellular Phones, Computers, Washing Machines, Remote Controlled Toys, Balloons 등
기타	Tea, Explosives, Timber, Sports Goods, Used Furniture, Plastic Packaging Items, Animals & Animal Products, Sludge Oil 등

자료 : Import & Export Control Department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가 없다. 다만, 최근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덤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업체에서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 표준으로 123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 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일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속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 제품 등이 있다.

환경관련 규제

스리랑카는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연동한 방법으로 환경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다.

환경보호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 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 라이선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2008년 3월에 발효된 「환경보존세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evy Act No.26 of 2008)」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는 환경보존통합계정에서 관리되다가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투자된다. 가령, 동 법에 의거하여 핸드폰 사용시 발생 되는 e-폐기물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며, 40W 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시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만, '절전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스리랑카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앞에서 언급한 2013년 6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813/14 of 5 June 2013」)에 공개되어 있고,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2009년 11월 관보(「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No. 1627/2 of 9 November 2009」)에 공개되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스리랑카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 관련 정책

스리랑카 정부조달 체계는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 용역, 공공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는 전체 GDP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2003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조달을 경제정책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한금액(threshold) 및 상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13개의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용역(Works), 서비스(services), 물품공급(supplies)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조달되는데, 긴급구매 등 특정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재무부가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며,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달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고, 분산된

정부조달 체계 운영을 위해 재무부에서 지명하는 기술평가위원회(TECs), 각료급 조달위원회(PCs)을 운영하고 있다.

분산된 체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2006년에 만들어진 조달가이드라인및매뉴얼(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Procurement Manual)을 준수해야 된다.

입찰공고(call for tenders)는 반드시 관보에 1회 이상 게재되어야 하며, 현지신문에 요약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주체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고해야 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특별한 제약은 없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도 입찰을 통해 소요물품 및 기자재를 도입하며, 낙후된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현지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입찰 문의방식이 유선이 아닌, 팩스와 이메일로만 제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조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금전가치(value for money)’를 최대화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가격 이외에도 효율성, 신뢰성 등의 기술적인 요인, 완성 및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AS 이용가능성,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게 되어, 조달절차에 있어 약간의 재량(discretion)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지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역량이나 고위 관리의 영향력에 의해 낙찰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해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7.5%,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계약은 10% 가격우대를 하는데, 가격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 스리랑카 개인 사업체이거나, 2) 스리랑카 현지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파트너십이거나, 3) 스리랑카 현지인이 소유권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며,

계약가격의 10% 이상을 도급계약하지 않은 스리랑카 현지등록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지에서 제조된 물품의 경우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15%,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은 20% 가격우대를 하고 있는데, 가격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된 노동, 원자재 비용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자신들의 제조/조립 생산시설로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

2010년에는 전자입찰 시스템(e-procurement)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일반 공고 등이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입찰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에는 19차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조달위원회(National Procurement Commission)를 설립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지적재산권보호 협약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03년의 「지재권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과 2006년의 「지재권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식물다양성(plant varieties) 관련 규정은 입법조치 중으로서 아직 관련 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WIPO공연및음반조약(WPPT), WIPO저작권조약(WCT), 정부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09년 89%에서 2015년 79%로 감소하고 있는데, 참고로 인도 58%, 파키스탄 67%, 방글라데시 86%이고, 한국은 41%, 미국은 17%이다.

투자 장벽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 (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투자보호 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데,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법규 및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이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 특정 분야를 목표로 하여 조세감면과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2014년 10월 이후부터는 어떠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정부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즈니스 친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되는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등의 투자 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외국 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 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는 가능 하며, 4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최저투자금액은 2011년부터 수출품 생산기업(「투자법」 17조 해당 기업)의 경우 3백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기업(「투자법」 16조 해당기업)의 경우 1백만 달러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높아 외국인 중소기업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여,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여 해당업체들의 애로가 되기도 한다.

경쟁정책

스리랑카에는 경쟁 관련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주요 법규로는 「소비자법(The Consumer Affairs Authority Act No. 9 of 2003)」으로 경쟁정책, 가격규제, 소비자보호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나 유통망 독점 등에 따른 폐단은 별무하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일정기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별 목적이기보다는 투자유치 차원의 조치이다.

기타 장벽

현지기업의 외환자금 보유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다보니, 대금지불 방식으로 T/T 방식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고, 주로 L/C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최근 대세는 T/T 방식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L/C 거래에 따른 행정상의 실무적인 애로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는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투자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노동법에 대한 미숙으로 노무관리가 오히려 주요 애로로 등장할 수도 있다.

스리랑카 노동부문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조정 관점에서 노동자 해고기준 완화, 정리해고시 보상 수준의 합리적 조정, 노동쟁의 과정 합리화, 노조 구성요건 강화,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율화 법제화 필요성 등으로 요약되는데,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노동법원(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선부른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시 동료들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도 있어 신속적인 노무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사규 준수거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에 맞춰 징계를 하고 시달서나 경고서한 등 필요서류를 챙겨놓아야 향후 법적 노무이슈에 대비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도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경고(Warning) → 2차경고(Show Cause) → 내부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징계(Final Action)의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 관련 사항

과거 몇몇 한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금융 행위로 인해 은행가에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이로 인해 업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은행들의 대우는 적극적이지 않고, 담보가 없는 금융대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경제 개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지난 2년간 2%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침체된 양상을 보였으나,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기존 1~3%로 발표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상향조정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하락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전체 수입 규모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한국 對싱가포르 수출은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0% 줄어들며 작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대상국 6위, 수입대상국 15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 8위이자 수입대상국 6위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총 20개의 자유무역협정(양자간 11개, 다자간 9개) 발효 상태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 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0	Stout or porter	S\$16.00/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90	Other beer including ale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품목), 담배(30개), 유류(7개), 자동차(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²⁴⁾

수입부과금

수입 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24)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1994년 4월 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관 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²⁵⁾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 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25) 품목별 FTA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 2017년 7월 기준)

- 껌(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 씹는담배, 담배 유사품(예: 전자 담배)
- 물담배 (2016년 7월 31일 이후 수입 금지)
- 무연담배
- 용해되는 담배(dissolvable tobacco) 또는 니코틴
-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질
- 권총 모양의 라이터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폭죽
- 음란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
- 불법 복제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카세트 등
- 반국가적 선전물

또한 아래 제품들은 수입규제 품목(Controlled Goods)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	관할기관
1	놀이기구, 동전 또는 디스크로 돌아가는 핀볼 게임기, 사격연습장, 영상기	Singapore Police Force
2	동물, 조류 등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품목	관할기관
3	무기 & 폭약	Singapore Police Force
4	석면 제품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5	방탄조끼를 포함한 보호용 의복 제품	Singapore Police Force
6	배터리(알카라인, 탄소-아연, 산화수은 등)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PCD)
7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카트리지/카세트/CD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
8	화학품 a) 독극물, 위해물 b) 유독물질, 화학무기원료물질 c) 살충제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Singapore Customs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9	프레온 가스(CFCs)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10	디젤유 혹은 디젤연료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11	금강석	Singapore Customs
12	영화, 영화/비디오/레이저 디스크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
13	수산물(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포함)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14	인화성 물질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15	식품류(냉장/냉각된 과일과 채소류 제외)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16	과일(냉장/냉각된)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17	도박용 과일그림 슬롯머신, 잭팟 머신	Singapore Police Force
18	인삼뿌리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19	축음기 레코드판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
20	수갑	Singapore Police Force
21	할론가스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22	헬멧(철제)	Singapore Police Force
23	인간 병원체, 병원균	Ministry of Health
24	방사선 기계장치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25	아래와 같은 마스터링 장비, 복제 장비 a) CD, b) CD-ROM, c) VCD, d) DVD, e) DVD-ROM	Singapore Customs

	품목	관할기관
26	조류 혹은 동물의 고기와 고기제품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27	약물, 수의학용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28	사료용으로 채색된 탈지우유 파우더 및 말레이반도, 사바, 사라왁 지역의 생우유, 탈지우유, 저온살균우유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29	질산염요소	Singapore Police Force
30	유기농 비료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31	석유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32	흙, 꽃, 종자가 있는(없는) 식물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33	양귀비씨(kaskas)	Central Narcotics Bureau (CNB)
34	화학무기 원료 화학물질	Central Narcotics Bureau (CNB)
35	출판물	Media Development Authority(MDA)
36	방사능 물질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37	쌀(쌀겨 제외)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38	모래와 화강암(건설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BCA)
39	표면활성제, 음이온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40	식탁용, 부엌용 기구 a) 자기, 도자기, b) 납유리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41	기록된 테이프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
42	목재, 목재물(CITES listed)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43	장난감 총기류	Singapore Police Force
44	장난감 위키토키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
45	야채(냉장/냉각)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AVA)
46	폐납축전지 납 카드늄, 수은으로 제조된 폐전지	National Environment Agency(NEA)

자료원: 싱가포르 관세청(2017년 7월 기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에 해당되는 SPRING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 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5개 품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 재료 및 쇠고기 관련제품은 광우병 청정국가(BSE Free Country)에서만 수입하며, 우리나라는 광우병 통제위험국가(Controlled BSE Risk Country)로 분류되어 있어 소고기 수출이 불가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미국 내 광우병(BSE) 발병을 계기로 2003년 12월 24일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2006년 2월 20일부터는 뼈와 SRM이 제거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년 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다.²⁶⁾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26)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털 사이트(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털(www.gebiz.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털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 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3천~7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7만 싱가포르달러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건은 정부조달 포털(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털에 등록해야만 포털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털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3,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3,000< ≤S\$7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70,000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년 11월 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년 2월 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 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4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싱가포르 기반 Makara Capital사와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Makara Innovation Fund(MIF)를 설립했다. MIF는 지적재산(IP)이 풍부하고 해외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을 위한 동남아시아 첫 사모투자펀드로, 10~15개사에 각 3천만~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장벽

한·싱가포르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 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 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 기업에게 사실상 허용 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나,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인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25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포르 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 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개별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 정책을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 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 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 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 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싱가포르에서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EP를 취득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장기거주를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정식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Basic Theory Test)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는 것이 편리하다.

필기시험은 9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합격이며(50문제 중 오답 5개까지 허용), 필기시험을 2번 이상 떨어질 경우 실기시험까지 처음부터 모두 치러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 필기시험을 신청한 후 2달 정도 기다려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이다. 현재 세계 20 위권의 글로벌 대형 금융사 포함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서 싱가포르 화폐 및 외환의 흐름을 관리한다.

2017년 7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128개의 상업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의 현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는 모두 외국은행이다. 외국은행 중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소매은행업 허가를 받은 시중은행은 29개이며 도매은행은 57개, 역외은행은 37개이다. 참고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으로 총 4개가 있다.

싱가포르는 이 밖에도 50여 개의 종합금융회사, 150여 개의 보험 회사를 비롯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또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

신탁(REIRs) 시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외환거래소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장외 파생 금융상품 거래 센터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발달해 있는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비교적 자금조달 및 외환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금융 서비스

아시아 대표적인 금융 허브답게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선진화돼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호가 강하고 금융규제가 많지 않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조세 회피처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과 연관된 자금거래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조세정보 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조세 회피처로 대두되자, 2013년 6월부터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을 추진해 2018년부터 매년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될 예정이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늘어나는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매년 다르다.

2011년에는 소득세의 20%(최대 S\$10,000) 또는 중소기업 지원용 현금 보상(회사 매출의 5%, 최대 S\$5,000) 혜택을 제공했고, 2012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용 현금보상(회사 매출의 5%, 최대 S\$5,000) 혜택만 제공

됐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소득세의 30%(최대 S\$30,000), 2016년에는 소득세의 50%(최대 S\$20,000), 2017년에는 소득세의 50%(최대 S\$25,000) 감면혜택을 제공했으며, 2018년에는 소득세의 20%(최대 S\$10,000) 감면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2018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세는 총 세수에서 12.8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5년 19.2%(농산물 37.6%, 비농산물 16.4%)에서 2007년 14.5%(농산물 34.4%, 비농산물 11.5%), 2009년 12.9%(농산물 31.8%, 비농산물 10.1%)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13.4%(농산물 32.7%, 비농산물 10.2%)이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부가관세 및 기타 진입세를 통합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 정부별로 난립해 있던 수 십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 IGST(Integrated 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한 것이다. 통합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인도로 수입되는 상품은 동일 상품에 해당하는 인도 품목의 세율을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적용받아 최종 세율이 결정되게 된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며, 교육세 3%, 통합부가가치세(대표세율 18% 적용시)가 합해지면 총 세율은 30.154%에 달한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품목마다 통합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영세율, 5%, 12%, 18%, 28%의 5개 기본 티어(Tier)가 있으며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7월 1일 제도도입 이후 인도정부는 품목별 적용세율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11월 10일 총 178개 품목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율 변경을 시행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인도정부의 우리 광섬유(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년 12월 부과되었다가 2004년 12월 종료된 바 있는데 2005년 10월에도 한 인도 지방세관은 연방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당 우리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 재무부와 협의,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재무부의 서한을 발급받았으나 우리 업체는 동 서한 발급 시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최근에는 포화지방 알콜(Fatty Alcohol)과 무용접 강관(Seamless Pipes)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가 각각 2017년 8월 28일과 8월 13일 종료되었는데, 수입규제를 담당하는 인도 재무부와 상공부가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별도의 종료 공시를 내지 않았다. 해당 품목은 WTO 홈페이지에도 세이프 가드 조치품목으로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동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

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2008년 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년 12월에 714 품목, 2002년 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몸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 통합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산 금의 대인도 수출이 수천 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12.5%의 부과관세를 적용받던 동 품목의 세율이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3%로 적용됨에 따라, 인도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를 중심으로 금 및 골드코인의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7월 1일에서 8월 3일 기간 동안 3.38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산 금이 인도에 유입되었으며, 이후 인도 정부는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만이 한국산 금, 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 바 있다. (통합부가가치세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금 수입이 증가했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6월말 현재 인도는 24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80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32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며 인도는 미국의 324건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반덤핑 28건, 세이프 가드 3건 등 총 31건의 수입규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반덤핑 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 화학 19건, 철강 및 금속 8건, 섬유제품 3건, 기타 1건이며, PVC페이스트 수지, 에틸헥사놀, 페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NBR고무, 인산, 가성소다, 탄산칼륨,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아크릴 섬유,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세톤, 질산나트륨, 고무류, 알루미늄휠, 염화메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무수프탈산, 나일론사 등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디옥프탈레이트, 폴리부타디엔 고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 톨루엔 다이소시아네이트 등 5개품목이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는 2017년 6월말 현재 총 3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 관련 품목으로 열연강판(코일제외), 열연강판(코일형태), 구연산 나트륨이 적용대상 품목이다. 현재 조사 중인 세이프 가드 품목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군별로 이루어지며 품목별로 관할 정부부처, 기관, 법령이 나뉘어져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제품 인증제도로 BIS, CRS, CDSCO, FSSAI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AERB, TEC 등 일부 특수품목에 대한 인증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BIS(Bureau of India Standards)는

인도 표준국을 지칭하며 한국의 KS 마크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제품 인증을 심사하고 발행하는 기관이다. BIS는 ISO, IEC와 같은 국제 표준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총 112개 품목에 대한 의무등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품의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인도표준국으로부터 제조설비를 검사/승인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SR(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는 BIS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록제도이며,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PC, 프린터, POS기기, 핸드폰 등 44개 전기전자 및 IT 관련제품이 대상이 된다.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등록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화장품의 수입시에도 동 인증이 필요하다.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는 식품 안전을 위해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제품인증은 BIS를 따르나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2개 이상의 제품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출 이전에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 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 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10월 2일 내각에서 인도의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하였고,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시 수입 관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 Unit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관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S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인도 정부는 2009년 8월 27일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9~2014)에서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EPCG 하에서 영세율(zero duty)을 도입하였다. 상기 혜택은 엔지니어링·전자제품, 기초화학·의약품, 의류·섬유, 플라스틱, 수제품, 가죽 제품 등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 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열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

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2016년 6월 인도정부는 방송, 사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크게 높였다. 이번 조치로 유통업의 경우, 단일 브랜드 소매업의 인도내 최소 30% 소싱의무 유예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으나 첨단기술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되었다. 방송분야의 경우 신규투자는 100% 자동승인으로 대폭완화 되었으며, 사설경비업은 정부승인하에 FDI 지분제한이 기존 49%에서 74%까지 확대되었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었으나, 2017년 들어 FIPB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FDI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 주요 산업부문 FDI 규제현황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100	정부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Cash&Carry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 (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 (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49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 부품구매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년 6월 12일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 부여지침(Preferent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백만 달러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 달러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 달러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 달러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 달러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 달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 달러 이상 7억5천만 달러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 자금 사용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 달러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 통화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이 적용되는데 비해 외국기업에게는 40% 기본세율(기본세율 이외에 surcharge와 교육세가 부가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 기업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내국법인인 배당금(dividend)에 대해 기본세율 기준 15%의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on corporate profits)를 추가 부담하므로 실질 법인세부담(기본세율 기준)이 45%이므로 오히려 내국법인인 외국법인(실질법인세 부담 40%)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2001년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한 이후 외투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어, 2012/20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가격 조정액은 14억 달러에 이르렀다.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될 때마다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년 11월 1일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 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절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 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함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개별 주 및 지역 규정을 통하여 중앙 법규가 수정 적용되기도 하며, 심지어 이들 법규들이 상호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충돌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용 문제를 명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 및 기타 관련 사실관계 따라 사안별로 중앙 및 사업장 해당 주의 다양한 법률들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시 허가 지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 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10년간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각각 197,596명, 110,000명으로서 무려 1,800%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3월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 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체류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실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인등록 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을 3월~1년간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인도의 재외공관이 비자발급을 느슨하게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비록 적법하게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실체적 심사 및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5일)을 규정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 정신과 목적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비자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 비자의 최초 연장은 외국인등록사무소가 아닌 내무부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연간 한화 약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을 불허하거나 3월~2년간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여 신청자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초 2년간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 외국인투자자가 동 기간 내에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사업체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할 때 동 최저 매출액기준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납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측이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의 지속 확대, 업무처리기간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및 내무부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15일부터 도착비자(Tourist Visa-on-Arrival)를 우리 국민에 대해 부여하고, 동년 12월 25일 부터 전자비자(E-Visa) 제도를 실시 중이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뉴델리, 아마다바드, 뭄바이, 푸네, 랑가레디, 칸치푸람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2016년 하반기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과 KEB 하나은행도 뉴델리와 첸나이에 각각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며, 수출입은행이 뉴델리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년 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우수 사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996년 구 조흥은행이 뭄바이에 최초 진출하였고 이후 신한은행과 합병하여 행명이 변경되었다. 2005년 뉴델리지점 설치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 뉴델리지점을 개점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첸나이 인근 벨로르 지점을 개점하였다. 이에 인도의 북부, 중부, 남부에 걸친 대도시에서 영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계 기업이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높은 진입 장벽에 의해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인도 금융 산업에서 상업은행 중 최초로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신한은행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IMF 위기 때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인도 진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다.

개선 실적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말

기준 한국과 관련된 바딤핑 조사는 에틸헥사놀, 페놀, 카본블랙 등 3개품목이며, 셰이프가드조사는 열간압연강품목이 진행중이다.

인도정부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9년 8월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특히 발효 후 다음해인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이 205억 달러로 2009년 121억 달러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감소하며 2016년 양국간 교역액은 15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양국은 낮은 자유화를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양국 교역을 지속 확대하고, 양국간 중장기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현재 CEPA 개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소기업 고유업종(Items reserved for exclusive manufacture by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은 1951년 입법으로 도입되어 1978년 504개에서 1991년 836개로 확대되었으나, 2006년 말 326개로 축소된 후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10년 7월 빵, 양초, 목재가구 등 20개만 남아 있다(2007년 1월 87개, 2007년 3월 125개, 2008년 2월 79개, 2008년 10월 14개, 2010년 8월 1개 품목 추가해제). 상세품목은 주재국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dcmsme.gov.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력, 도로, 항만 등 취약한 인프라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을 상공부 Press Note 형식으로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바, 실제 투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양국간 경제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 5위 교역국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국가중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싱가포르 1위, 베트남 2위)이다. 2010년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고, 2012년부터 각료급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12년 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천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데 이어, 201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교역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투자확대 및 금융, 해양인프라, 창조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번 2017년 11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역 현황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 2011년에

30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49억 달러 수준(수출 66억불, 수입 83억불)이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5위 교역국이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3위의 교역국이다.

2016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6.1% 감소했으며, 수입은 83억 달러로 6.4% 감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7억 달러로 다소 악화되었다. 수출은 석유제품, 편직물, 철강판,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출의 38.5%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의류, 동광, 목재류 등 5대 품목이 對인도네시아 수입의 52.1%를 차지하였다.

➡ 연도별 교역현황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8,897 (48.3)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417 (△1.3)	7,872 (△30.7)	6,603 (△16.1)
수 입	13,986 (51.0)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71 (△7.0)	8,850 (△27.8)	8,281 (△6.4)
무역수지	△5,089	△3,652	△1,721	△1,608	△854	△978	△1,678
총교역액	22,883	30,779	29,631	24,744	23,688	16,722	14,884

➡ 對인니 5대 교역 품목('16년)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증가율(%)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증가율(%)
석유제품	709	△64.0	석탄	1,618	△10.3
편직물	559	△2.9	천연가스	1,380	△13.3
철강판	550	△11.2	동광	494	4.4
합성수지	413	△2.4	의류	491	0.1
선박해양구조물	311	150.7	목재류	331	18.2
합 계	2,542	△31.5	합 계	4,314	△7.0

자료: 관세청

투자 현황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0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2015년 누계, 신고기준)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9위 투자대상국(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15년 기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세 번째 투자 대상국(1위: 베트남, 2위: 싱가포르)이다. 2016년 말까지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142억 달러(수은, 신고기준)로 2016년에는 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투자는 2016년 말까지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한 ·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對인니 투 자	1,818 (331)	1,415 (450)	1,005 (383)	607 (376)	810 (327)	841 (285)	706 (264)	14,161 (5,620)
對한국 투 자	752 (17)	6 (11)	68 (9)	9 (6)	56 (11)	1 (7)	3.70 (8)	1,026 (147)

주: 누계치 기준은 對인도네시아 투자('68-'16), 對한국 투자('62-'16)

자료: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활발한 해외 투자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붐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5%대에 머물렀으며, 2015년에는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4%대에 그친 4.8%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경기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2017년 현재, 상반기는 공공인프라 건설 및 투자 등 정부 지출이 활성화되면서 5%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2017년 1분기 5.01%, 2분기 5.01% 성장),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 점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대외건전성은 과거 외환위기 시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나, 미국 금리인상 등 국제 금융환경 불안시 외화자본의 이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대외부채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 중 낮은 수준(싱가포르 450%, 한국 250%, 인도네시아 100% 이하)으로 부채부담이 적은 편이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기준금리(2017년 11월 현재 역레포 4.25%)도 높은편이며, 이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 환율은 다소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 거시 경제 지표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GDP	명목(억 달러)	9,125	8,886	8,726	9,410	한국(11위)에 이은 세계 16위(IMF, 2015)
	1인당(달러)	3,667	3,524	3,415	3,635	
경제성장률(%)		5.58	5.02	4.8	5.02	2017년 5.1%대 성장 예상
실업률(%)		6.25	6.1	5.8	5.61	
물가상승률(%)		7.0	6.4	6.4	3.53	
중앙은행 기준금리(%)		7.50	7.75	7.50	4.75	역레포금리
외환보유고(억 달러)		994	1,119	1,059	1,004	1천억 달러 유지 목표
달러당 환율		12,189	12,440	13,864	13,436	
교역	수출(억 달러)	1,826	1,760	1,503	1,444	국제 원자재 가격 감소로 수출입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
	수입(억 달러)	1,866	1,782	1,427	1,356	
	무역수지(억 달러)	△40	△22	76	88	
GDP 대비 재정적자(%)		2.0	2.1	2.3	2.6	재정 건전한 편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등 종합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6차례 경제개혁 패키지를 발표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패키지의 핵심은 ① 예측가능성 증가(최저임금 산정식 도입, 규제 완화 및 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증가), ② 시간·비용 절감(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인하, 일부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 감면, 물류비용 감소 노력 등), ③ 시장개방(주요 업종(영화, 제약, 의료, 전자상거래, 관광 등 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에 대한 100% 개방 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 제1차~13차 경제개혁 패키지 주요 내용

No.	발표일	주요 내용
1차	2015년 9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기업 경영 확실성 및 법적 분쟁해결력 강화 ※ 1차 때는 경제개혁 3대 정책방향을 중점 발표
2차	2015년 9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의 이자소득세 감면 ■ 산업용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단축
3차	2015년 10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집약 산업의 에너지 가격 인하
4차	2015년 10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산정식 도입 ■ 정부보조 융자 및 수출금융 지원
5차	2015년 10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재평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부동산 투자시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이슬람 은행 설립시 인허가 신속화
6차	2015년 11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시 세금 인센티브 지원
7차	2015년 12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국영 지정지역에서의 노점상 무료임차 지원 ■ 노동집약 산업의 노동자 소득세 면제
8차	2015년 12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부품 21개 부문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민간사업자에 의한 원유개발 인센티브 제공 ■ 토지이용계획의 일목요연화
9차	2016년 1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 물류서비스의 단일 결제시스템화 ■ 국가 단일 전산시스템 운영
10차	2016년 2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35개 부문 완화
11차	2016년 3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대출 지원 ■ 제약산업 로드맵 제시 ■ 지역 부동산 투자신탁 취득자산의 세율 완화

No.	발표일	주요 내용
12차	2016년 4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109위⇒40위권 진입 목표 ■ 10개 평가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13차	2016년 8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 인허가 33개 → 11개, 절차기간 981일→44일
14차	2016년 11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mmerce 및 디지털 시장 관련 규제 완화
15차	2017년 6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스템 개선 및 물류 경쟁력 강화 ■ 물류 원활화를 위한 교역 행정 간소화 ■ 운송업 역할 및 규모 확대
16차	2017년 8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허가 관련 절차 및 비용 간소화 ■ 정부기관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년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신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전임 유도유노 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온 자원보호주의와 보호주의적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간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신광물법」 시행(2014년 1월),²⁷⁾ △2014년초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자원보호주의 및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국산 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하며, 천연자원을 보호하려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특히 「신무역법」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

27)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 07. 2012)」이 20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

하기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기업법(1934년)」, 「상품법(1961년)」, 「상품통제법(1962년)」, 「물류법(1965년)」 등 4개 법안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향상 등을 통해 국익 확대, 국내산업 보호, 자국산 제품의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에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관련,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및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수입규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에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신무역법」의 경우 하위 법령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적용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신무역법」 주요 내용

- (자국산 제품 생산·소비 촉진 및 보호) 필수재·전략물자 수급 관리
 - 국내 수요 충족 및 원자재 확보, 원자재·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수출 제한 가능
 - 국내 산업 보호와 교역 균형을 위해 수입 제한 가능
 - 수입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산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편의·인센티브 제공
 -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반덤핑조치 및 수출국의 보조금 부과로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보상조치 발동
- (국제무역협정 관련 의회 감독 및 정부의 협정 검토·무효 권한 부여)
 - 무역협정 체결시 의회와 협의(정부는 국제 무역협정을 협정 서명 9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 의회는 무역협정이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shall reject)는 점을 명시
 -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비준한 무역협정 검토·무효화 가능
- (기타) 중소기업 우대,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
 - 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무역위원회 설립
 - 동 법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 규정 제정 의무

조코위 신정부는 행정시스템 및 투명성 개선을 통한 행정 개혁, 연료보조금 삭감, 인프라 확충 등 경제개혁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산업 보호를 통한 제조업 육성, 천연자원 관리 강화 등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해 수입관세 인상,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강화, 휴대폰 자국 부품 비율 의무화, 철강 SNI 제도 강화 시도 등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협상진전이 더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MFN 관세를 15~20%로 상향하였으며 2015년 7월 22일부터 소비재, 최종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중국·브라질·인도 등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평균 수입관세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유도요노 전정부와 조코위 신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임 조코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와 연계된 24개의 복합항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 시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탑 서비스센터를 2015년 1월 구축하고 빠르고 간단하며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2016년 9월 새로운 종합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정책의 3대 정책방향은 1)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료주의 철폐, 법 집행 강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 2)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3) 부동산 부문 투자 촉진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재도약의 토대가 되는 실물경제의 회복, 국내산업의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07년 「신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07년 7월에 발표되고, 2010년 5월, 2014년 4월에 개정된 투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of Investment)도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6년 5월 투자제한리스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며 관광투자와 관련된 요식업 등의 일부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을 완화 혹은 100% 인정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6억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FDI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임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외국인 투자는 루피아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612.8조루피아를 기록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두 자리수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달러 대 루피아 환율에 따라 달러 기준 투자액이 변동하는 바, 환율 안정이 인도네시아 FDI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 경제성장률도 6.5%를 달성하고,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2015년에 4.8%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5.02%로 약간의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에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6,000만 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실시한 가계지출조사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현재 7,400만 명 수준이며, 2020년에는 1억4,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산층을 일일 2~20달러를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1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은 78만5천4백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26.12% 증가한 44억 9천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오프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543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59% 증가,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전체 유통 시장의 82%로 전년 대비 0.07%p 증가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산층 증가로 2016년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 수가 8,9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5.6%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2016년 Statista의 통계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장에서 가구와 전자제품, 가전제품, 서적, 잡지, 장난감 등의 매출이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원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의 경착륙으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경기침체도 가속화될 우려
- 2014년 이후 급격한 루피아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

(2)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씩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개월 치씩 근속수당 지급(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자카르타 및 인근지역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2010년 8.2%, 2011년 10.3%, 2012년 18.5%, 2013년 44%, .2014년 17.44%, 2015년 12.1%, 2016년 11.5%, 2017 8.25%, 2018년 8.71%)
- 초과 근무 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비용이 매우 높은 편
-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허가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발생

투자매력도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조사 2013-2014’에서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54위(133개국 중), 2010년에 44위(139개국 중), 2011년에는 46위(142개국 중), 2012년 50위(144개국 중)에 이어, 2013년에는 14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면서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입증하였다. 반면 2017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매력지수(GFICA)가 65위(109개국 중)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2위가 하락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매력지수(GFICA) 기준 아시아 투자대상지로 유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25위(전년도 30위), 태국은 46위(전년도 43위), 말레이시아는 31위(전년도 29위)를 차지하였으며, 필리핀은 67위(전년도 68위), 베트남 58위(전년도 58위), 캄보디아는 82위(전년도 81위)를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선호도는 중간정도이나, 천연 및 인적 자원 풍부로 향후 동남아시아 투자유망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도네시아에 신설되는 법인 납세자 및 2011년 8월 15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구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업, 통신업 및 정보 통신업, 해상 운송 산업,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 최소투자금액 1조 루피아(약 1억 달러) 이상일 것 (다만, 첨단 기술(하이테크)를 도입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 및 정보 통신 산업은 최소 자본 투자 금액을 5천억 루피아까지 낮출 수 있음)
-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할 것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내국납세자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납세자로 국세청의 의해 발급된 납세자 등록증 보유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15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10%까지 면제(Tax Holiday)
 - * 다만, 재무부 장관은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활동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절차) 투자 조정 위원회(BKPM)에 승인 요청 → 재무부(검증위원회)의 심사 → 재무부 장관의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정기적으로 투자금 사용내역, 투자 이행 감사 보고서, 생산 이행 감사보고서 등을 국세청과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제, 천연가스정제업 등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 (1년 연장)
 - 최소 500명 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 (국세청) 이관(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 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 (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2016년 Negative List 개정안 발표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44 2016년」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2014년 발표된 「대통령령 No.39 2014년」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이번 리스트는 지난 2014년 리스트에 비해 이해가 쉽도록 수정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된 투자제한리스트는 투자금지업종(20개 업종), 조건부 개방업종(145개 업종),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350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창조경제 등 서비스 부문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부문들이 주로 개방되었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육성 분야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화산업은 부문별 대폭 개방이 주목을 받았다.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보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분야가 기존에는 자국 기업에만 한정되거나 49%의 지분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되었다. 또한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 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등에도 외국인 지분 취득률이 67%까지 상향되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국내기업에만 투자가 허용됐던 것에 비해 100% 지분 취득이 가능(단, 투자금이 1천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이며, 1천억 루피아 미만시 49%로 제한)하게 되었다. 통신 콘텐츠 서비스(벨소리, 문자메시지, 콜센터, 통신망 서비스 등) 부문도 49%에서 67%로 확대되었고,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도 100% 개방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외국인투자허용 지분범위가 상이하므로, 업종별 제한사항 및 투자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투자제한리스트 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것으로, 성장의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는 투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참고로 주요 대외기관에서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 참고 :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인도네시아 대외 평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IMD	37위 (총60개국)	42위(↓5단계) (총61개국)	48위(↓4단계) (총61개국)
WEF	34위 (총144개국)	37위(↓3단계) (총140개국)	41위(↓4단계) (총138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120위 (총186개국)	109위(↑11단계) (총186개국)	—

※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참고사항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 지역 지방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 진출 시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우회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자 제한 및 조건부 허용 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 업종 내 사업 확장을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 내 세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초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함.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5년 현재 13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림허가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 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 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원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원목수출금지 해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m³)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m³)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또한 2012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 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년 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세 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관련 규정: 농업부장관령 / 「No.42/Permatan/OT.140/6/2012」),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항구→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쌀, 사과, 감, 미역 등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판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수입통관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도네시아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자국민의 식품안전성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은 2016년 1월에 마친 상태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4년 9월 25일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되어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인증 의무화가 2019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비할랄 식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 지연, 컨테이너 보류 등의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BPOM)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인 AK-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인도네시아와 일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 FTA협정을 맺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으며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코위 대통령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진행중인 협상 또는 신규 협상에 대한 재검토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호주, EU 등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협상개시를 준비 중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2014년 2월 7차 협상이후 중단된 상태로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간 면담에서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상이 재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2개국 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미국이 2017년 1월 탈퇴함에 따라 11개 TPP 참여국가들이 CPTPP(C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을 출범, 정식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0월 조코위 대통령 방미시 TPP 가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TPP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6년 11월 트럼프의 당선 후 TPP 탈퇴는 인도네시아 대미 교역조건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현재로서는 RCEP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ASEAN FTA

2007년 6월에 발효된 ASEAN과의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와 대상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법령 작업 지연으로 실제로는 7.10부터 적용)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0~5%로 감축되었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의 초민감품목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시 시장개방 협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치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너 또는 인도네시아재무부 홈페이지(<http://eservice.insw.go.id/>) 법령코너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NO SKEP : 25/PMK.010/2017'을 찾아보면 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세율정보' 코너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각 나라별 양허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FTA 포털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AFTA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년 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년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9.11%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을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평균 관세율이 2009년 0.79%에서 0.5%로 낮아지게 되었다.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0년 1월 1일부터 5%로 관세율을 낮춘데 이어 2018년에는 대부분 철폐가 될 예정이다.

중·ASEAN FTA

2004년 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한 후,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하였다.

당초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년 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ASEAN FTA의 업그레이드에 합의하여, 2013년 중에 1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으나, 2014년말부터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도네시아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측과 재검토 시기를 타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 및 협상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재검토시 농산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맥주 신고가격에 60% 관세, 와인 및 과일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종가세 0~50%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맥주 L당 14,000Rp, 와인 및 과일주 L당 55,000Rp, 증류주 L당 125,000Rp 등)로 관세부과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 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WCO의 HS협약 가입국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하여 총 8단위의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있다.(2017년 3월 개정)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번호는 6단위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K Code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Database),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 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인도네시아 세관의 통관심사관

(PEPD)의 권한도 강화되어 민원인 대면이 불가하고 신고가격 심사 후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징이 강화되고 있다. 세액추징시 벌금은 누락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SURAT KEBERATAN) 작성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과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관에서 기각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PENGADILAN PAJAK)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세관 결정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

- 화학제품 수입 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 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위의 수입 항구 제한은 2017년인 현재까지도 적용되는 바이다.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0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385개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도 아래와 같은 비관세 장벽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

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선스 강화: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2017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5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1건이 진행 중이다.

➡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	반덤핑	'16.8.22	-	화학	- '16.8.22 :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자 주장 덤핑마진 : 30.51%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102.30.00.00	반덤핑	'15.6.01	'16.11.24	화학	- 제소업체 : PT Kaltim Nitrate Indonesia - 대상국가 :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 '16.11.24 최종판정
코팅종이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세이프가드	'14.6.24	'15.9.07	기타	- 제소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 '15.9.21 : 무역보호위원회, 산업피해 최종판정 - 15.09.07~16.09.06: 9% - 16.09.07~17.09.06: 7% - 17.09.07~18.09.06: 5%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가드	'14.2.12	'15.1.21	철강 및 금속	- Safeguards Import Duty . 1년차 : 26% . 2년차 : 22% . 3년차 : 18% - 대상국 : 한국, 모든 국가 기간: '15.1.21~'18.1.20
석도강판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2.6.25	'14.1.15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 반덤핑 관세 : TC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 실업 4.4%, 기타 7.9% 일몰재심 조사 중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부동산보유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 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1%를 최종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약 3천6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3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 (최대 3인, 각 3백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다.

▶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50,000,000	5
5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0 -	30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발생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 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 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16년 기준 네번째로 큰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2012년 65만5천 명, 2013년 71만3천 명, 2014년 81만5천 명, 2015년 83만3천 명, 2016년 80만3천 명이며 (2012~2015년 연간 연평균 5.2% 증가), 2016년 탑승률은 평균 75.8%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교역규모 또한 등락세(2012년 296억 달러, 2013년 247억 달러, 2014년 236억 달러, 2015년 167억 달러, 2016년 149억 달러 수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한 ·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급	837,204	883,248	945,366	1,152,950	1,143,707	1,059,436
수송	612,429	655,321	712,757	814,812	833,027	803,395
L/F	73.2%	74.2%	75.4%	70.7%	72.8%	75.8%

자료: 한국공항공사 (16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71.3% : 28.7%)

▶ 한 · 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 인도네시아	16,916	20,537	18,537	19,888	17,993	19,919
증감율	-4.6%	21.4%	-9.7%	7.3%	-9.5%	10.9%
인도네시아 → 한국	6,929	8,221	8,287	9,520	8,893	9,914
증감율	14.4%	18.6%	0.8%	14.9%	-6.6%	11.5%

자료: 한국공항공사 (16년 기준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70.3% : 29.7%)

▶ 한 · 인도네시아 교역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13,564	13,955	11,568	11,360	7,872	6,609
증감	52.5%	2.9%	-17.1%	-1.8%	-30.7%	-16.1%
수입	17,216	15,676	13,190	12,266	8,850	8,285
증감	23.1%	-8.9%	-15.9%	-7.0%	-27.8%	-6.4%
수지	-3,652	-1,721	-1,622	-906	-978	-1,677

* 자료 : 무역협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1982년 11월 10일 가서명을 거쳐 1988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으며, 1989년 5월 3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1989년 7월 12일 1차 개정 이후 1995년 11월 17일, 2000년 5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7년 3월 28일에 이어 2012년 6월 28일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PT.Indonesia AirAsia Extra, Lion mentari Airlines, Sriwijaya Air가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 한 · 인도네시아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인도네시아측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홍콩, 하노이, 호치민,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제지점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20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포지트기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운수권의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이 주1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7회를 배분받았으며, 덴파사르 여객과 및 화물 전용편은 주7회의 범위 내에서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을 전제로 운항이 가능하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2000년 5월 AM)이며 Code-sharing 등 상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2000년 5월 AM)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14일~15일 회담에서 신설된바 있다.

➡ 운항 현황('17년 동계시즌)

국적	항공사	노선 및 운항횟수
대한민국	대한항공 (주20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서울/덴파사르/서울(주11회) (貨) 서울/자카르타/페낭/서울 (주2회)
	아시아나항공 (주7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인도네시아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주13회)	(客) 자카르타/서울/자카르타(주7회) 덴파사르/서울/덴파사르(주6회)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의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 달러)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 루피아(약 263만 달러)
- G5등급: 10억~100억 루피아(약 105만 달러)
-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
-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

(2) 토지제도와 개발사업

- 인도네시아는 제도의 미발달로 토지와 관련된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여 상당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제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1960년에 제 정된 기본농지법 (이하 “기본농지법”)이다. 기본농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원으로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개간권, 별목권 등 7개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토지 이외에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토지가 아직 상당히 있고, 이들 토지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의 관습적 권리에 귀속되어 있고, 기본농지법상의 위 7개의 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될 수 없다.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대규모 사업부지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사업부지에 이러한 관습법적 미등기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국가 및 인 도네시아 자연인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은 물론이고 순수 내국인투자법인 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권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인정되는 토지의 권원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4가지이고,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인 건축 권과 사용권이 중요하다.
- 건축권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투자 법인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 예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농지법상 건축권은 최초 30년까지 인정이 되고, 그 후 20년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권 보유자는 정부에 새로이 건축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및 상속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다. 담보권은 건축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 사용권은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상의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법인 이외에도 외국인 개인 및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도 보유할 수 있다. 기본농지법은, 사용권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법은 모두 70년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법을 통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70년까지라고 이해된다. 사용권 역시 건축권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3)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제도

- 인도네시아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시행할 때 요구되는 개별 인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인허가의 종류나 절차는 해당 지역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인허가는 아래와 같다.
- 위치허가 (Izin Lokasi) :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업부 규정에 따른 위치허가(Izin Lokasi)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위치허가는 해당 토지가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이용된다는 증빙으로서 이후 토지의 양도, 임대 등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 항상 구비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허가(Izin Penggunaan Pemanfaatan Tanah) : 위치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허가는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토지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 주택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의 지역구획과에 사전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전 심의 신청시 사전심의 신청서와 함께 회사 설립서류인 영업허가, 회사등록증, 납세자번호와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구획과에 사전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업 예정지를 조사하고,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이 해당 지역의 기본 토지 이용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 사전 심의는 지역구획과 내의 용도지역, 도로, 건축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다. 사전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지역구획과는 사전심의 승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 를 마치면 본 허가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 전에 환경영향허가와 교통영향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및 유지법에 따르면 인도 네시아에서 사업 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AMDAL 또는 UKL/UPL이라는 환경영향평 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 향평가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하여 해당 지역 관청의 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만약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앞서 기술 한 사전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완납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한 다. 건축할 토지가 타인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 리 보유자와의 토지이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종교 용, 사업용, 사회 문화용, 기타 특수용으로 구분 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임시주거용 건물로 세분되어 있다. 이후 준공시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준공허가 후 준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아야 할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m²을 초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 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5)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년 1월 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역 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 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 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 소유자, 공공토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 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 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 참여(국영 공기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 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4)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 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 도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 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설턴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인도네시아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ICT 시장규모는 약 350억불 규모로 아시아 국가들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되나 매년 10%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ICT 성장률은 2011년 10.02%, 2012년 12.28%, 2013년 10.39%, 2014년 10.02%, 2015년 10.06% 수준이나, ICT분야가 국가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분기 기준 3.8% 수준으로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은 큰 국가로도 볼 수 있다.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발전지수(IDI)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111위를 기록하였다.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6년 기준 100명당 8.8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100명당 132.4명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38.4%수준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22%수준이고, 유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1.1명, 무선 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42.1명 수준이며, 유선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무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ITU, 2016) 스마트폰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 4G LTE서비스 개시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트위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6년 3G 서비스 개시 이후 2015년 하반기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수도권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나, 수입 스마트폰에의 자국산 부품사용 규제,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Telkomsel, Indosat, XL Axiata, H3I, Smartfren, Bolt 등의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Telkom, Indosat, XL Axiata 등 빅3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경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보건), e-Edu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8월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전자상거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시장은 젊은 중산층 중심의 ICT 기기 활용 확산, 소득 증대에 따른 ICT기기 구매 증가, 통신망 개선 등으로 민간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 30~40%의 성장률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최근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단위: 백만 달러)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률	92.7%	151.6%	84.3%	193.1%	120.0%

자료: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3) 통신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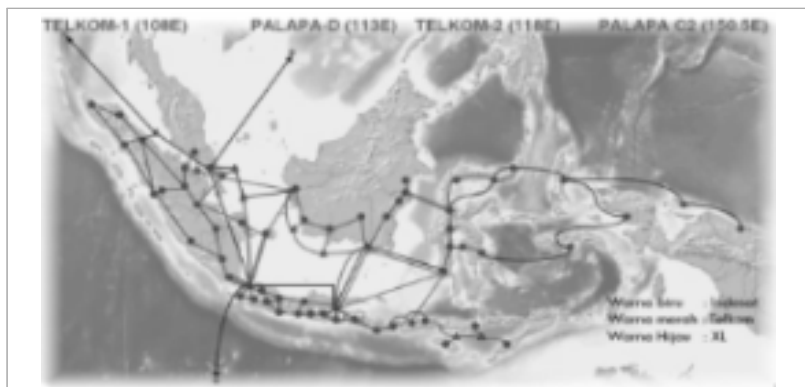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유선사업자인 Telkom은 국가 통신망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사업인 광케이블 설치 작업이 80% 이상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Telcom이 함께 추진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33개주 460개 지방을 총 길이 57천킬로미터의 7개 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국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시화정도에 따라 광케이블, Wireless, 위성 등의 통신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7만4천여개 마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USO 예산은 통신사업자 수익의 1.25% 기부로 충당이 되고 있다.

2014년 10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광대역통신망의 설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계획을 담은 2014~2019 브로드밴드 계획(Broadband Plan 2014-2019, IBP)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도시지역은 30% 인구에 대한 유선 20Mbps, 전체에 대한 무선 1Mbps, 농촌지역은 6% 인구에 대한 유선 10Mbps, 52% 인구에 대한 무선 1Mbps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Palapa Ring, Joint Pipes와 같은 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및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 USO펀드 개혁 및 ICT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 Palapa 프로젝트 광케이블 설치 계획



(4) 외국인 투자 규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016년 개정된 Negative List(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 라디오 및 위성궤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리와 운영, ②국내 중소기업과 조합에 한정된 업종 - 지역 방송국(라디오, TV), 인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③국내 방송사 독점 업종 - 공영 TV 및 라디오(국내 방송사 독점), ④국내자본 100% 업종 -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 ⑤외국인 투자비율 최대 67% 허용 업종 - 유·무선·위성통신,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운영, 콘텐츠, 콜센터 및 기타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공급, 데이터통신시스템,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NAP) 및 기타 인터넷서비스, ⑥외국인 투자비율 최대 49% 허용 업종 - 우편(POS), 전자상거래공급자(1,000억 루피아 미만/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가격비교, 온라인분류광고), ⑦사업 확장시만 최대 20% 허용 업종 - 사설방송국 및 청약제 방송국.

또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100% 국내 자본만 허용(외국자본 협력 가능)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년 10월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운영자’들은 데이터 센터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도록 되어(Data Localization), 관련 업종 투자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권 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분야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 관리시스템 등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 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 요구 파악 및 반응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 원칙(Post-clearance Audit)이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자의 경우 무역부가 발급하는 수입자 인증번호(API: Angka Pengenal Importir)를 받아야 하며, 수입자 인증번호는 일반 무역업자를 위한 API-U와 제조자를 위한 API-P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장난감, 신발,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BM), 부가가치세(VAT; PPN), 사치세(Luxury Tax; PPnBM), 소비세(Cukai)외에도 소득세(Income tax, PPh)가 부과된다.

수입통관절차는 ① 수입자는 수입신고서(PIB)를 작성하고 수입제세를 산정한 후 은행에 수입제세 납부 ②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선하증권(Air way bill), 포장명세서 등의 첨부서류와 제세 납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 ③ 세관은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또는 검사생략 결정 ④ 세관 승인후 화물출고 등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신고서 제출후 2년 이내에 세액 및 세번분류를 심사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를 통하여 부족세액이 적발될 경우 부족세액의 100% 내지 1000%의 높은 행정 과태료(Administrative penalty)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나, 관세율이 0%이고 부족세액이 없을 경우 수입신고건당 5백만 루피아(IDR)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세번분류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한편, 세관의 처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은 세번, 관세평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에 제기될 수 있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n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창고·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 등의 보세구역제도가 있다. 또한 보세업체는 아니지만 수출 장려책으로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²⁸⁾제도를 운영하여 관세면세(담보설정) 및 부가세 유예(담보설정) 혜택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1월부터 보세지역(KB)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였는바, 주요 목적은 보세지역 제도의 원래 기능 환원, 서비스 향상과 보세지역 통제강화, 보세지역 전산화 및 보세지역 위치 통합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보세지역으로부터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아 왔으나 2013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내수판매를 종전의 전년도 수출금액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세지역업체의 IT Inventory설치를 의무화(2014년 10월부터 실시)하면서 모든 보세지역업체를 위험도에 따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다. 보세지역에서 밀수 또는 보세물품 국내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관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보세물류센터(Bonded Logistics Center, BLC)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기존에 보세구역에 부과되었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보세구역에서 보다 광범위 작업과 사업(판매, 단순

28)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제도는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가공, 통관, 전시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입자 및 수입물품 위험관리제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른 통관경로(Channeling System)를 지정함으로써 수입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적색경로(Red Channel): 고위험 업체
- 황색경로(Yellow Channel): 위험 업체
- 녹색경로(Green Channel): 우수업체
- MITA 특급경로(MITA: Mitra Utama): 최우수업체
 - Priority Channel 업체
 -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법규준수도 및 신용도가 높은 우수 성실업체에 대해 MITA 채널로 지정, 혁신적인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당국에서 Channel 분류시 참고하는 항목은 법규준수도, 신용도 및 재정능력 등이다. 인도네시아에서 Red Channel 자격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 통관 지연 등 애로가 많으므로 가능한 Yellow Channel 이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관세법규 위반 내지 각종 신고오류를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
- 노동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tional)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6일 근로시 1주 1일, 5일 근로시 1주 2일, 연속으로 12개월 근무 시 최소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기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과도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이전비
-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
- 기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예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텍(JAMSOSTEK)이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하는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e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하여 전면시행됨으로써 산재·사망·노후·연금·건강보장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완성하고 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주지사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 항목에 대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 대통령이 서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 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어 2015년 10월 23일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이 제정되어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 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 2013~2017년 주요 지역 월 최저임금

(단위: 월, Rp)

주 또는 시·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카르타수도특별주	2,200,000	2,441,301	2,700,000	3,100,000	3,355,750
서부자바주 반둥군	1,388,333	1,735,472	2,001,195	2,275,715	2,463,461
서부자바주 반둥시	1,538,703	2,000,000	2,310,000	2,626,940	2,843,662
서부자바주 버카시시	2,100,000	2,441,954	2,984,000	3,327,160	3,601,650
서부자바주 버카시군	2,002,000	2,447,445	2,925,000	3,261,375	3,530,438
서부자바주 보고르시	2,002,000	2,352,350	2,711,000	3,022,765	3,272,143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2,002,000	2,242,420	2,655,000	2,960,325	3,204,551
서부자바주 까라왕군	2,000,000	2,447,450	2,987,000	3,330,505	3,605,272
서부자바주 수까부미시	1,050,000	1,350,000	1,645,000	1,834,175	1,985,494
서부자바주 수까부미군	1,201,020	1,565,922	1,969,000	2,195,435	2,376,558
서부자바주 수방군	1,220,000	1,656,857	1,928,000	2,149,720	2,327,072
반튼주 땅그랑시	2,203,000	2,444,301	2,710,000	3,043,950	3,295,075
반튼주 땅그랑군	2,200,000	2,442,000	2,710,000	3,021,650	3,270,936
반튼주 찰레곤시	2,200,000	2,443,000	2,760,590	3,078,057	3,331,997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시	1,740,000	2,200,000	2,710,000	3,045,000	3,296,212
중부자바주 스마랑시	1,209,100	1,423,500	1,600,000	1,909,000	2,125,000
중부자바주 살라띠가시	974,000	1,170,000	1,287,000	1,450,953	1,596,000
중부자바주 즈빠라군	875,000	1,000,000	1,150,000	1,350,000	1,600,000

국가표준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 시 SNI인증강제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6년 기준 249개 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이며 자발적 인증 품목은 6,975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기관의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 팩 스 : +(6221) 5747045
-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

- 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소요 기간 및 비용〉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 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2015년 7월 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의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 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자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25,000 상당액(송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 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지식재산권침해) 인도네시아를 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인 감시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을 2% 줄이는데 그쳤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의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상위 11번째 국가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가 불법 복제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3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의 불법 CD나 DVD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상표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 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 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재심사 실시 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위원회 (Appeal Commission)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상표권의 등록취소

- 상표가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등록 출원시 신청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4)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한 가지 발명에 대해 한 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할 필요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2)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공고
-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가능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항변서 제출

-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3)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

(4) 의장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효력

책, 팸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 기술, 비디오 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간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되며,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 존속의 증거가 된다.

(1)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물 등록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을 위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
- 형식심사 요건 누락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형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 저작권등록 증명서 발급

(2) 저작권 보호범위

- 인도네시아인의 저작물
- 인도네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맨 처음 공표한 저작물
- 인도네시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시민이 창작한 저작물

산업디자인권

「법률 No.19/2002」은 저작권, 「법률 No.14/2002」는 특허권, 「법률 No.15/2001」은 상표권, 「법률 No.30/2000」은 사업기밀, 「법률 No.31/ 2000」은 의장(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산업 디자인은 미적 인상을 주는 창작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등록 출원절차

- 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등을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
-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심사관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2)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카자흐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f
구분(단위)							
인구(만 명)		1,680	1,710	1,740	1,760	1,790	1,810
G D P	총액 (억 텡게)	298,320	347,270	391,500	397,570	432,780	473,690
	(억 달러)	2,001	2,283	2,185	1,741	1,265	1,495
	성장률	5.0	5.9	4.3	1.2	1.0	3.7
	1인당 GDP	12,118	13,386	12,557	10,188	7,151	8,116
인플레이션(%)		6.1	4.7	7.3	13.8	8.5	7.1
평균환율(텡게/달러)		150.27	153.61	179.12	222.25	341.76	323.27
대출금리(%)		6.6	6.3	7.2	9.6	9.5	8.1
무역 (백만 달러)	교역량	135,717	136,399	123,791	79,939	61,949	73,141
	수출	86,931	85,596	80,243	46,294	36,775	44,013
	수입	48,786	50,803	43,548	33,645	25,174	29,128
	무역수지	38,145	34,792	36,695	12,649	11,601	14,885
총외채(백만 달러)		135,498	149,653	157,651	154,288	163,827	159,249
외국인 직접투자(백만 달러)		27,007	24,137	23,888	11,391	14,529	-
실업률		5.3	5.2	5.0	5.0	5.0	4.9
외환보유고 (억달러, 국가기금포함)		861	955	1,031	913	907	893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Kazinvest. * f : 2017년 전망치

2007년 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8년 3.2%, 2009년 1.2%로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0년 7.3%, 2011년 7.5%, 2012년 5.4%, 2013년 6%의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4년부터 국제 유가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성장률이 2014년 4.3%, 2015년 1.2%, 2016년 1%로 하락하였으나, 유가 회복, 카샤간 유전²⁹⁾의 생산 재개 등으로 2017년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4년 2월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20%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8월 기존 관리변동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텡게화 가치가 약 50% 추가 하락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 1차 「2010~2014 산업혁신개발계획」에 이어 제2차 「2015~2019 산업혁신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5~2019년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년 1월 단일경제 구역(CES) 조성,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 되어 2015년 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발전, 비즈니스, 투자기회 확대, 노동력 공급 등 경제 통상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9)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해상유전으로 가채 매장량이 1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임 (2013년 10월 생산 중단 후 2016년 9월부터 생산 재개)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지속 증가해 2013년에는 1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수출이 9억 달러, 수입이 5.6억 달러 등 총 14.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카자흐스탄 경기 침체로 2015년 7.6억 달러, 2016년 6.4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주요 수출품목은 제어용케이블,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우라늄, 합금철, 비철금속 등 원자재이다.

2017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누적 투자금액(실투자금액 기준)은 약 38.7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LG전자 현지 생산 공장, 롯데제과의 라헷사 인수 및 생산공장 설립, 국민은행 BCC 은행 지분인수,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등이 있다.

▶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0월)
교역규모	1,134 (20.9)	1,193 (25)	1,323 (10.8)	1,468 (10.9)	759 (-48.2)	649 (-14.5)	1,095 (126.7)
수출	757 (25.3)	885 (17)	1,074 (21.4)	907 (-14.8)	454 (-49.9)	364 (-19.9)	449 (54.6)
수입	377 (13.2)	308 (-18)	249 (-19.2)	561 (185.3)	305 (-45.6)	285 (-6.5)	646 (234.3)
무역수지	380	577	825	346	149	79	-197

자료: KOTIS, WTA, KITA.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 되어 부과되는 경우 대부분이며, 평균관세율은 약 9%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³⁰⁾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기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 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통관신고는 상품 반입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30)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다.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벨라루스와 2009년 11월 27일 3국 관세법을 서명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무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경제활동에 있어서 관세 기관과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산지 결정 등에 관한 통합규정이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한편, 이들 3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켜 단일시장 구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도 추가로 가입하여 2017년 9월 현재 EAEU 회원국은 총 5개국이다.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만, 2011년 8월 설탕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이하 AEO)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제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 행정 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상기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유로, 기간: 1년 이상)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원산지의 기준은 상품이 충분한 처리 기준에 따라 완전히 생산, 또는 충분히 처리된 국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충분한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로 한다.

- 상품의 처리결과로 인해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
- 상품에 대해 특정국가의 특화산업, 기술이 행해진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00년~2002년 기간 중에 상품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

소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 벽지 등의 품목에 부과한 사례가 있고, 이후에는 동일사례가 없다.

수입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 무기 원료(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취소 증권 등이다.³¹⁾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들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 까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31) 구체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lry Loquo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o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했었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카자흐스탄 인증은 1993년 제정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 소련 시절의 강제인증인 GOST-K(Gosstandart of Kazakhstan)가 활용되었으나, 2015년 EAEU 출범에 따라 현재는 동 인증 대신 EAC라는 EAEU의 단일 인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GOST-K 증명서는 만료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만료일 이후에는 EAC 인증만이 인정된다. 다만,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새로운 ‘EAC’ 인증은 EAEU 회원국내에서 통일 적용되고 있다. 인증서는 러시아어로 발급되며, 1년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본 인증서 만료전 최소 2개월 이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CIS와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EAC 인증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EAC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타 EAEU 회원국에서 발행된 것도 유효하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EAEU 회원국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타당성 검토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공급 계약서, 송장, 위탁판매증서, 화물 관세 증명서, 본 제품 인증서, 기술 증명서, 사업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나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히, 의약품 등 품목에 있어서는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카자흐스탄 인증기관은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구분된다. 시험소·인증기관은 NACE(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공식 정부기관이다. 인증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등의 민간기업이 존재한다.

- 시험소·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아스타나지사(Astana Branch)

- 주소: 4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1506,1507)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astana@naceks.kz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221-0808, 221-9941, 221-9212
- 팩스: +7-727-228-565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 전화 : +7-727-262-1175
- 홈페이지 : www.ceska.kz
- 이메일 : info@ceska.kz

○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 전화 : +7-727-225-4631
- 홈페이지 : www.oskcs.kz
- 이메일 : info@oskcs.kz

○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 +7-727-274-9392
- 홈페이지 : www.intercert.kz
- 이메일 : talibayeva.g@standard.kz

○ 위생검역소(Sanitary Epidemic Station)

아스타나(Astana Branch)

- 주소: 46 Jeltoksan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전화: +7-7172-315-409
- 팩스: +7-7172-315-409

알말린구 관할(Almalinsk District)

- 주소: 130-A Tole-Bi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243-1393
- 팩스: +7-727-279-6577

아우에조브구 관할(Auezov District)

- 주소: 144 Dzhanosov Str., Almaty, 050042, Kazakhstan
- 전화: +7-727-220-7900
- 팩스: +7-727-220-6990

한편, ATAMEKEN(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Labelling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해야 하며,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조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너지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에너지부 지방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에너지부에 의해 결정된다.

품목별 장벽

2017년 9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산 및 중국산과의 경쟁에 불리한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5월 Local Contents(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 하였으며, 국산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투자개발부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50%인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 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12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 불허, 계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만,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의 Local Contents 관련 규제를 2022년까지 정비할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허법은 1992년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3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1991),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91),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2010),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지식재산권위원회(IPRC)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NIIP)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NIIP에 등록, 권한을 획득³²⁾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 걸쳐 보호를 받는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거의 유사한 상호 및 C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 관계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2)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NIIP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된다.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론 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재등록 시한 2012년 1월 31까지).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 농업분야 건물 (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석유 분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년 6월 2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립 국산화 진흥원(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향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인 구소련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광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주재국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년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 공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광권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원유수출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재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이었으며, 2016년부터 국제유가와 연동된 산정공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선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국내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년 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2007년에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년 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비율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자본 확충 요구 및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17년 3월 동 지분 전부 매각 후 철수하였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농지, 임업지 등의 제한)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 토지 매수가 불가하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은 영구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 임차기간을 기존 10년 → 25년(내국인은 49년까지 가능)으로 2015년 11월 개정하였지만, 동 발표 이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기간 연장을 향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 가능성과 연계,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2016년 4월부터 각 지방 주요도시에서 벌어져, 2016년 8월 개정토지법 시행을 2021년 8월까지 5년간 유예한 상태이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2013년 6월 18일)하였고, 2016년부터는 각종 인허가 취득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Window'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수출의무 부여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허가 및 비자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년 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년 7월 1일까지 상위직 5:5, 하위직 3:7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로 변경하였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실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정에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동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근무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매년 경제활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 데 통상 경제활동인구의 0.6% (2017년 기준) 규모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가 침체하면서 자국 노동 시장 보호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바,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2013년 경제활동인구의 1.2%에서 2014~2016년 0.7%, 2017년 0.6%로 급감했다.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2016년 4월 8일 동 협정 발효됨) 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원회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하였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1 MCI=2,269텐게)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 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채굴 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11%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 0.5%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농지의 경우 0.50ha 이하 20텡게/0.01ha, 0.50ha 이상 100텡게/0.01ha, 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0.48~28.95 텡게/sq meter (1ha = 10,000 sq meter)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엔진 배기량별 차등 (1-117MCI, 2016년 Monthly Caclulation Index(MCI) 2,121 텡게)
- 경매세(auction fee): 3%
- 관세: 평균 11%(품목에 따라 다름)

의무 의료보험제도 도입

카자흐스탄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진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³³⁾ 의무 건강보험제도(Mandatory Health Insurance Scheme)를 2016년 7월 도입하였다. 당초 201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험료 납부 부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2020년으로 시행을 연기하였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사회의료보험기금(Social Medical Insurance Fund)가 설치되며, 고용주와 고용인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1%, 2018년 1.5%, 2020년 2%, 2022년 3%를 납부하며, 고용인들은 2020년부터 연차별로 1~2%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고용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세(Social Tax) 세율을 2018년부터 당초 11%에서 9.5%로 1.5%p 인하할 예정이다.

33) 카자흐스탄 보건부 홈페이지(www.mz.gov.kz)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경찰 조사, 통관지연,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 등을 유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사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6(지번: 서울 용산구 도빙고동 1-48)
- 전화: 02-391-8906(영사과)
- 팩스: 02-395-9719(영사과)
- 근무시간: 09:00~12:00(월~금, 단, 매주 수요일 휴무)

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2014년 6월 체결된 한·카 일반사증면제 협정이 2014년 11월 발효되어 관광목적 입국시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단, 180일 중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회 방문시 3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180일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원할 경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절차이다(관광, 개인 초청, 비즈니스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관광의 경우 호텔예약서류 제출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가 다름)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름)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단기 90일 이내 관광, 개인초청,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면제된다. 다만, 입국목적에 관광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텔예약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 운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이 소비자 약 18백만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사항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탱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환율이 일정구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방어 지속해 왔으나, 2014년 2월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텡게화 가치를 20% 절하한 바 있다. 2015년 저유가 지속,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통해 전년 2월 수준(달러당 180~185 텡게)을 유지하여 시중의 텡게화 거래 위축, 외화예금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5년 8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을 전격 선언하였고, 이후 2016년 9월까지 텡게화 가치는 약 40% 추가 하락하였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8월 자유환율변동제 도입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 방어를 위해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최고 17%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후 환율 및 물가가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7년 12월 현재 기준금리는 10.25%이다.

현지은행의 2017년 9월 현재 예금금리는 9~12%, 대출금리는 11~17%이며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은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하여 부실 국영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룩 카즈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다. 현재 33개의 시중은행(2016년 말 기준)이 영업 중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야기된 은행권의 부실 채권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은 최소 자본금 상향 등 조건을 강화하여 은행간 자발적 인수 및 합병(M&A)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융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 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 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개발은행(DBK)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외국계 은행 16개를 포함하여 33개가 영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 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년 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세동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년 4월 재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년 11월 22일) 및 서비스 부문(2011년 9월 26일)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흐스탄의 가입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년 11월 30일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년 1월 관세동맹, 2012년 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A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2017년 4월 EAEU 5개 회원국은 통합 관세법에 서명하였다. 통합 관세법 발효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주요내용은 기존 회원국간 통용되던 관세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WTO의 틀에서 국제적 조건의 최대한 수용 등이다. 한편, 2015년 5월 EAEU-베트남간 FTA가 최초로 체결되었고, 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EAEU는 이란, 인도, 싱가포르, 이집트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과는 2016년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현재 FTA 협상 개시를 협의 중이다.

캄보디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세계은행(WB)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2016년 기준 총 GDP가 262억달러, 1인당 GNI가 1,140달러로서 수준으로 저소득국을 벗어나, 중저소득국 수준에 진입하였다. 또한,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경제활동의 90% 이상 달러 사용) 및 외화 유출입에 대한 상대적 자유화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심화,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WTO 무역정책검토가 있었으며 이후 원산지증서가 필요없는 국가에 대한 원산지증서 제출요구는 폐지되었으며, 수출시 수수료도 201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WTO 2차 무역정책검토는 2017년 11월 완료되었으며, 캄보디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발전해가고 있으나 법제도정비 및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WTO 가입시 요구된 상무부에 비즈니스 등록 온라인화, 수출입 물품 검사 및 위조상품관리강화(CamControl 설치), 정부조달법 제정, 사법체계개편(법원구조법, 판사 및 검사의 의무, 대법원조직법 등), 상업전문법원설치, Credit Bureau 설치, 캄보디아 통신규제국(Telecom Regulator

of Cambodia) 설치³⁴⁾ 통신법제정(2015년), 동물건강 및 가공법 제정(2016년)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에 제안되었던 경쟁법과 표준화, 전자상거래, 식품위생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캄보디아의 진출관련 주요지표

부패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156/175	2016년
기업환경	World Bank	131/190	2017년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95/128	2016년

캄보디아는 외국투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없으나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법적제도 미비와 선별적 실시 등이 투자가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의 법령(Prakas) 643호에 의거 기업은 캄보디아 공인회계기구(Kampuch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ors)에 등록된 독립회계법인으로부터 발급된 연례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기업은 매출액기준 KHR 30억(미화 75만) 이상, 총자산 KHR 20억(미화 50만)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중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캄보디아 회계국(National Accounting Council)은 2010년 유럽식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도입하여 캄보디아 재무보고기준(CIFRS)을 운영중에 있는데 금융기관은 동제도 도입을 2019년까지 유예하였다.

캄보디아 주요 산업 및 정책

캄보디아의 주요산업은 섬유(봉제.신발.가방), 관광, 농업, 건설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34) 현재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에서 운영 중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2014년 100달러 : 25% 상승, 2015년 128달러 : 28% 상승, 2016년 140달러 : 9.3% 상승, 2017년 153달러 : 9.3% 상승, 2018년 170달러 : 11.1%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의 경우, 앙코르와트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 외국 관광객의 방문(2016년 500만 명으로 전년대비 5% 증가)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캄보디아는 그간 민간에서 앙코르와트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2016년부터 압사라(Apsara)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입장료를 약 50% 인상(1일권 \$20→\$37, 3일권 \$40→\$62, 일주일권 \$60→\$72)하였음에도 관광객은 지속 증가추세이다. 2017년 앙코르와트의 외국인 방문자는 250만 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판매 역시 72% 증가한 1억 8백만 달러로 집계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1회 연장 가능케 하거나, 인터넷 예약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6.3%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57%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는 쌀의 생산과 수출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쌀 증산 및 수출확대 정책을 수립, 2011년 4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정책서의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를 쌀 수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2015년까지 최소한 100만 톤의 쌀을 수출하고 캄보디아 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유럽이외 신시장 개척이 쉽지 않음에 따라 농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캄보디아 쌀 수출량은 538천톤에 그쳤다. 중국정부의

캄보디아 쌀 수입으로 2016년 쌀수출의 30%가 중국이었으며 2017년에는 방글라데시 수출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캄보디아는 연간 3.1백만 헥타르에서 9.95백만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기시즌에 80%를 재배하고 있다. 대부분의 쌀은 기계화되었지만 관개수로 개발 미흡, 물류 수송비용의 높은 단점 등 인프라 기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쌀생산 과잉으로 2016년 쌀가격이 20%나 감소하였다.

건설산업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중 하나로 특히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2016년 승인된 전체 건설 프로젝트는 2,636건으로 1,400만^m² 넓이의 부지가 개발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85억 달러 규모로 2015년과 비교하여 약 155% 증가하였는데 프놈펜의 지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17년에도 전년대비 건설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여 6월까지 64%가 증가하였는데 전체 건설프로젝트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투자한 것이고 그 외 싱가포르,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건설투자국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캄보디아를 중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각전략과 함께 「산업발전계획 2015~2025」를 발표하였다. 모든 투자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정한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백만달러 이상으로 적격투자심사(Qualified Investment Project)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7년 59.5(2016년 57.5)점을 기록하여 180국중 94위(2015년 112위)로 평균 뛰었는데, 인도네시아(84위), 베트남(147위), 라오스(133위), 중국

(111위) 등과 비교할 때 시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서 특별한 관세 장벽은 없다.

▶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재산권 보호	42.4	정부 지출	88.1
경제 자유도	29.6	통화 자유	81.0
정부 신뢰	12.8	무역 자유	80.3
노동 자유	62.5	투자 자유	60.0
재정 건전성	95.7	금융 자유	50.0
법원 효율성	22.1	세금 부담	90.2

자료: 헤리티지 재단 2017 Index of Economic Freedom

캄보디아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 회원국으로서 2014년 ASYCUDA(관세행정 전산화)를 도입하여 통관일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QIP를 득한 품목의 수입의 경우 1.4일, 다른 경우 3.4일로 단축되었으며 세계은행의 물류지수도 2016년 160국중 83위를 하였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 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 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농산품은 부가세도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년 11월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요청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AKFTA의 E-CO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관세율도 90%의 물품이 0세율로 인하되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세관 통관 시 2017년 상반기까지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행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통관업체의 충분한 자료준비를 통해 대응이 필요하며 자유무역협정이 일선까지 제대로 적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5%: 등유
- 10%: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기타 과일음료
- 15%: 자동차용 디젤연료, kerosene
- 20%: 필터담배
- 25%: 윤활유, 시가
- 30%: 맥주, 승용차(1,000cc 이하)
- 35%: 포도주
- 40%: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승용차(1,000cc 초과 3,000cc 이하)
- 65%: 승용차(3,0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경우 150~250cc의 경우 15%이며 그 이상은 25%이다. 차량은 캄보디아 전체 관세금액의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함에 따라 통관이 엄격하고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배기량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차량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산 신차를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요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캄보디아 관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통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중고차의 경우 제조 연도에 상관없이 수입은 가능하나 2018년부터 2002년식을 최하년식으로 하던 것을 2004년식을 최하년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관업체에서 철저한 서류준비에 대응해야 한다.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ft 컨테이너 1대당 터미널 핸들링 비용이 \$600~700 정도이다.

과거 수입통관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년 4월 30일부로 선적전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

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 한국의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AKFTA) 관세율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인데 2017년 10월 반덤핑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조만간 발효예정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다.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수입전 사전 등록을 요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 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목재 및 모래 수출도 금지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개발이 우선시되는 국가로 지난 20년간 많은 산림이 개간되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만 20만헥타르의 산림이 일반 농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캄보디아 환경부는 환경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캄보디아의 쌀생산대비 수출감소로 쌀가격이 폭락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미화 20백만달러를 조성하여 쌀가공업체들의 적극적인 농민이 생산한 쌀구매를 독려했으나 그효과는 미미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당자금을 쌀가공(정미 및 건조) 시설에 저리로 융자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공기업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표적인 공기업은 전기구매 및 판매를 하는 Electricite du Cambodia, 프놈펜상수청(Phnom Penh Water Supplu Authority), Rural Development Bank, Green Trade Company(쌀 저장 및 유통), Phnom Penh Autonomous Port, Sihanoukville Autnomous Port 등이며 모두 정부조달법 대상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2014년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을 가입하여 캄보디아 대표 농산물인 캄팟 지방(Kampot)의 후추와 두리안, 그리고 바탐방(Battambang)의 쌀 등을 등록하고, 2016년에는 국제공동특허(PCT), 2017년 헤이크협약(산업디자인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WTO가 2012년 7월 1일 만료 예정이었던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기간을 8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미국,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EU, 한국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WTO가입 및 ASEAN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강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1년 토지법(Land Law)를 제정하여 부동산의 등록과 Title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오랜 내전으로 토지관련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토지소유가 불가하지만 외국인법인은 지분의 49%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정부(중앙 및 지방) 소유 토지에 대해서 50년간 임차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015년 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인터넷을 통해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하였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제품 대부분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2014년 불법복제방지 위원회(The Cambodian Counter Counterfeit Committee)가 설립되어 불법복제 단속 및 상표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씩 점검과 함께 복제제품 몰수 및 소각이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는 만연한 편이다.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100% 외국인투자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투자금지분야는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외국인 모두에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금지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금지
- 항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금지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금지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자료: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담배제조, 영화제작, 쌀가공, 보석 및 광산가공, 출판 및 인쇄, 라디오 및 TV, 목재 가공, 견직조 등의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승인비용(QIP 비용은 \$1,750)이외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의 면허를 대부분 인정(예 의사, 회계사 등)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로비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에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지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원천세를 부과, 본사와의 거래내역 보고 등의 까다로운 행정이 있어 법인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진출방법을 비교하여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One-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년 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년 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캄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 송금 관련

캄보디아에는 아직 외환규제가 없는데, 1997년 외환법을 통과한 이래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정기 보고서 적요해야 한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에 의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한 외국통화의 획득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의해 고지되고 있는 달러화와 현지 리엘(Riel)화의 비율은 변동폭이 매우 낮으며 US\$1-KHR4,000에 거의 일상화되어 교환되고 있다. 캄보디아 외환법에서는 비상사태시 3개월간 외환규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된 바 없다.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QIP 기업들은 원금과 이사에 대한 지급, 로얄티와 수수료, 이익, 투자자금의 회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등에 대해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2) 금융조달

캄보디아는 2011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증권거래소(Cambodian Securities Exchange)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개 업체(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2012, Grand Twins International 2014, Phnom Penh Autonomous Port 2015, Phnom Penh SEZ 2016, Autonomous Port of Sihanoukville 2017)가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다. 최근 CSX는 캄보디아 정부의 채권을 최초로 발행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협의중에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캄보디아에 대해 B2로 등급을 매겨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B3를 매기고 있다.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에 장벽은 없다. 2017년 현재 37개의 상업은행, 13개의 특수은행, 54개의 MFIs, 7개의 소형저축기관, 11개의 리스회사, 1개의 Credit Bureau가 각각 등록되어 있다.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나 2017년 3월부터 MFI의 최대 이자율을 18%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지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현재 캄보디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무려 10%에 달하고 있어 소형 MFI 들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최소자본금을 지속 인상시키고 있는데 2016년 3월에는 상업은행 75백만달러, 특수은행 15백만달러, MFIs 30백만달러 등으로 인상하였는데 각 은행들의 경우 10%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금융시장 자산의 90%가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6년 이들의 자산은 237.6억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118%에 해당된다. ACLEDA Bank와 Canadia Bank가 내국은행으로 전체자산의 19.3% 및 13.8%를 각각 점하고 있으며 2016년 총 저축계좌는 전년대비 13.4% 증가한 2,993,386개이고 총 대출계좌는 45.7%가 증가한 746,930개였으며, 대출금은 138.3억달러(전년대비 20.5% 증가), 저축금은 21.8% 증가한 137.5억달러였다. 캄보디아의 부실대출율은 0.4%로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상업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대부분의 금융대출은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인데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용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용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용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용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용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용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용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최근 캄보디아 재경부는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보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8년 캄보디아 정부채권 발행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 채권 발행 및 거래촉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ODA를

통해 금융결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예금자 보호장치를 위한 자문도 받고 있다.

(3) 외환구좌 보유제한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캄보디아의 높은 달러 이자율로 인해 2015년까지 비거주 외국인들의 캄보디아 달러저축율도 높았으나 2017년에는 대부분 저축이자율이 6% 미만으로 내려왔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등의 대출시 10%는 반드시 자국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은행들이 해당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였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없으며,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캄보디아 금융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30%, 보험 및 재보험은 총 프리미엄의 5%로 설정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CDC의 투자적격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도 0~20%, 원천세 4~15%(예 거주자 이자소득 4%, 비거주자 이자소득 15%, 용역 및 로열티14%, 임대소득 10% 등), 부가세 10% 등으로 분류된다.

경쟁정책

캄보디아는 WTO 가입시 경쟁법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고 있지 않다. 2016년 호주정부와 함께 캄보디아 경쟁정책에 대한 법안 초안(Draft Law)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활동에 대한 소식은 없다.

상품 · 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상용비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으며 2017년 캄보디아는 한중일 비거주자의 캄보디아 입국시 1년 복수비자(1회 체류시 최대 15일)도 발급하고 있다.

2015년 초부터 캄보디아 정부에서 노동허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노동허가 미소지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노동법 1조에서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대상들(사법부 판사, 정부 공무원, 외교관, 군, 경찰, 항공 및 해상운송종사자, 가사사용인)과 정부 간 협약이나 또는 해당 부서와 MOU 등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기 때문에 'E' 비자가 아닌

‘B’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취득한 자, 일을 하지 않은 은퇴체류자,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방문한 교수나 유학생 및 일을 하지 않는 순수 유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인 영리 또는 비영리(자선) 여부, 종교 또는 비종교 여부를 막론하고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년 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년 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2012년 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년 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북도 발간되었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동 서류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1년 10월 캄보디아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서를 국문, 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대사관은 KOTRA 및 캄보디아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기업지원협의회를 통해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섬유 제품 이외 항공운송시 즉시 통관후 관련서류제출, 신규농기계 수입시 관세율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진출기업과 신규진출기업의 현장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주요 경제 동향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이후 각종 교역 장벽 철폐 노력 지속, 10억 달러 규모의 키-러 경제개발기금 활용, GDP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경제의 양성화 계획 및 경제개발계획 채택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GDP 성장률 5.5%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키르기스공화국의 총 무역 규모는 27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수출액은 전체 교역액의 28.7%를 차지한 8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전체 교역액의 71.3%에 해당하는 19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38.9%였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은 중국(25%), 러시아(23.5%), 카자흐스탄(14.8%), 스위스(11.7%) 터키(5.3%) 등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 1달러당 69.23솀이었던 키르기스공화국 솀화의 미달러화 대비 환율은 주재국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2017년 10월 20일 현재 1달러당 68솀까지 하락하는 등 솀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꾸준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관세

관세에는 관세, 부가세, 소비세, 세관서류 작성세, 창고보관세가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지방심판소에서 3개월 이내에 해결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CIS FTA를 비롯한 여러 FTA를 체결하고, 최근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에 가입하는 등 대외적으로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의 종류에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계절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이 있다.

관세특혜

키르기스공화국은 타 국가와 교역 시, 국제협정에 준하여 관세동맹 국가에 특혜관세를 제공한다.

- 키르기스공화국과 자유무역지대를 공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면세
- 관세동맹의 통합관세특혜시스템 혜택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제3국에서 키르기스공화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재화에 관하여 일정량을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할당(tariff quota) 형식으로 수입품에 대한 통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키르기스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재화가 할당량(quota)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은 관세동맹의 일반관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 교역 참여국 사이에 수입된

재화와 관련, 관세할당 설정을 위한 수량 및 방법, 절차뿐 아니라 제3국과의 관세할당 분배는 관세동맹위원회 혹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의 관세동맹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2016년부터 키르기즈공화국은 EU로부터 GSP+ 지위를 인정 받아 키르기즈공화국에서 생산된 6,000여 가지의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출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제도 및 ISO(국제표준화기구) 기준 등을 도입해야 하고, 위생 검사 연구소를 현대화해야하며, 대량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 몇 가지 수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 면세 대상

- 주차용을 제외한 토지의 공급
- 농업인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
- 재정적 금융 서비스
- 보험 및 연금
- 택시를 제외한 버스 등 시내 교통 서비스
- 국유재산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자재의 수입, 착오로 인한 물품의 수입, 통과무역(transit trade)의 경우

통관절차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의 통관절차 담당 부처 및 기관으로는 교통통신부, 보건부, 관세청, 축산식품안전검역청, 국경수비대, 환경보호산림청이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신속한 통관절차 및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4월 「세법」을 개정(2005년 1월 발효)하였

으며, 동 「세법」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대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on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2004년 4월 채택, 2005년 1월 발효). 아울러, 정부는 2015년부터 상기 협약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2015)의 설문에 따르면 수입 통관 시 대개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조사되었는데, 세관당국들로부터 추천받은 통관 브로커를 통해서는 1~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관당국과 일부 통관 브로커 간의 결탁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며, 70% 이상의 설문 응답자들이 통관 건당 200~5000숨(KGS)의 뇌물성 비용을 지불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업무는 2009년 10월 정부 내각개편 이후 재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조달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부 조달 관련 입찰들은 입찰 마감 1~2일 전에 공고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간혹 내부정보가 특정기업에 넘어가는 사례도 간혹 발생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업무

키르기즈공화국 특허청은 산업자산, 저작권, 비전통적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허

외국인은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 특허 인가 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산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진다.

경쟁정책

반독점 규제

키르기스공화국은 반독점규제청이 「반독점법」에 따라 반독점 생산자들을 감시 및 규제하고 있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국내시장 지분의 최소 35%를 가진 생산자를 독점 생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7개의 자연적 독점 발생 분야(철도, 통신, 에너지, 가스, 물, 쓰레기, 담배), 7개의 허가된 독점 분야(민간 항공, 석유, 출판, 광물 등) 및 31개 한시적 독점 허용 분야(주로 기계 생산, 섬유, 식품산업 등)의 생산자들은 독점 생산자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투자

투자자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키르기스공화국 내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협회나 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법률로 특정 형태의 조직 형태 및 법적 형태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 및 경영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현지 또는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과 자유로이 협력할 수 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FDI)제한 최소화

키르기스공화국의 경우 관련 법상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지인 또는 현지법인과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단독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현지 법인의 1/3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의 직접 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 분야는 제한될 수 있으며, 항공 산업의 경우 외국인은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한국(2008년)을 포함하여 중국, 터키, 미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영국, 카자흐스탄, 스웨덴 등 세계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2013년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동년 2013년 11월 22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최근 신설된 키르기스공화국 경제부 산하 투자진흥청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내에는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비쉬켈(3), 카라콜(2), 나른, 마이막, 레일렉)이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원자재, 최종재에 대한 이윤세 및 수출입 수수료 비과세, △각국 통화 무제한 반입 가능, △간소한 세관 통관절차, △투자 및 과실의 100% 송금 가능, △외국인 근로자의 간소한 입출국 절차, △저렴한 임대료와 같은 혜택이 있다.

조세제도

세금의 종류

키르기스공화국 「세법」은 세금의 종류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토지세, 지방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세금에 대한 개념과 세율, 납부방법, 과세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세법의 적용 범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분야 이외의 모든 조세이다.

소규모 기업과 자유경제구역에서의 과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 관련 고려사항

키르기즈공화국의 세율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편이므로 조세 측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진출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환급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세수 확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매출부가가치세가 매입부가가치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양자 간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매입부가가치세가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시에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2010년 키르기즈공화국은 기업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세금을 감축함으로써 기업체의 세금납부 부담을 줄였으며, 2012년에는 판매세를 감축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부동산세를 도입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었다. 법령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국기업에 대해서 보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은 키르기즈공화국 내 사업 착수 전에 세금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금융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2017년 10월 현재 키르기즈공화국 내에는 25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주요

은행의 자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 Kyrgyz Investment and Credit bank (Kyrgyz Republic), 자산 : 243억 쉘
- Optima bank (Kazakhstan), 자산 : 225억 쉘
- RSK bank (Kyrgyz Republic), 자산 : 193억 쉘
- Aiyl bank (Kyrgyz Republic, 1996년 세계은행 지원 하 설립), 자산 : 188억 쉘
- Demir Kyrgyz International bank (Turkey), 자산 : 154억 쉘

노동

근로자 관련 고려 사항

키르기스공화국의 경우 구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으로 국가의 경제개발 수준 대비 노동법 등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관련한 제도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력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후진국의 유연한 상태의 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키르기스공화국의 근로 제도는 적합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최소임금 등은 저렴한 편에 속하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키르기스공화국의 문화적 특성상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경우 정확하게 업무를 종료해야 하고 초과 근로 업무를 시킬 경우 반드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키르기스공화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해서 키르기스공화국 노동사회개발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허가서 수령 시 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키르기스공화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키르기즈어 또는 러시아어로 labeling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키르기즈어 및 러시아어 병기를 권장하고 있다.

EAEU 가입에 따른 기술규제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EAEU 가입에 따라 EAEU의 기술규제를 자국에 점차적으로 도입시켜 기술규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기술규제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공화국에 도입된 기술규제는 2017년 10월 현재 34개이며 이 중 13개는 2016년 2월자로, 3개는 동년 8월자로 도입이 되었고, 나머지 18개의 기술규제는 2017년 8월부터 발효하였다. 최근 도입된 기술규제 중 9개가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제며, 그 밖에 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아동용품, 장난감, 엘리베이터, 경공업 제품류 등에 관한 규제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키르기스공화국내 인증 기관은 2개(2개 건설중)뿐이며 시험 연구소는 부재하는 등 이행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관련 기술규정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기업은 EAEU 시장으로 수출을 위해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해야하는데, 동 제도 도입 비용이 개별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19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16년 GDP는 약 69.5억 달러(세계은행)이며, 제조업 발달이 미미하여 수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거주 노동자들의 이주노동 송금액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바, 2014년까지 연평균 6~7%대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 2%대로 감소하였다.

▶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GDP(억불)		76.3	85.1	92.4	78.5	69.5
1인당 GNI(불)		1,140	1,310	1,340	1,240	1,110
GDP 성장률(실질)		7.5	7.4	6.7	2.0(추정)	-1.0(추정)
물가 상승률(%)		5.8	4.9	6.1	5.1	6.1
환율(불, 연평균)		4.74	4.76	4.94	6.99	7.84
인구(백만)		8.0	8.2	8.4	8.48	8.74
무역 (백만불)	경상수지	-248	-203	-258	-472	-265
	무역수지	-2,420	-2,958	-6,981.4	-2,544.30	-2,132.5
	수출	1,358	1,163	1,078.4	890.6	898.7
	수입	3,778	4,121	8,059.8	3,434.9	3,031.2
외환보유액(백만불)		297.9	460.7	177.4	64.4	107.3

* 출처: GDP, GNI: 세계은행, 무역통계: 주재국 통계청(2016년), 외환보유액: EIU(2016년)

타지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40% 차지) 및 면화(연 30만톤),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외화 소득원이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접국 우즈베키스탄이 항공 교통은 물론 육상 교통로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도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타지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유입 되면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자국 화폐인 소모니(Somoni)의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정치 인프라의 불안정으로 인한 리스크,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잦은 법률제도의 변경, 높은 세금, 운송 인프라의 낙후,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가스 및 전력 공급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타지 교역 현황

(단위: 만불)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역 규모	4,273	4,447	5,130	2,426	2,296
수출	3,811	4,429	4,849	2,029	1,780
수입	462	18	281	397	516
무역 수지	3,349	4,411	4568	1,632	1,264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무역규모는 2011년 1억 930만 달러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수입 감소로 2016년 무역규모는 2,29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타지키스탄 수출은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5년 타직 경제 위기로 수출액이 2,029만 달러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도 1,780만 달러를 기록,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기계류, 폴리에틸렌 등이며, 이중 기계류는 주로 차량 부속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타지키스탄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으로, 2010년 1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입하였으나, 2011년 이후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 수입액은 515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타지키스탄 진출 우리 기업은 K 자동차 현지 대리점과 H 자동차의 현지 딜러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진출은 KOICA 원조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업체인 D 엔지니어링이 유일한 실정이다.

1995년 국내 섬유 기업인 'K방직'이 면사, 면직물 연간 2,900만불 규모로 투자한 바 있으나, 2008년 4월부터 합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 K사가 2010년 타직정부의 ADB 차관(600만불 규모)으로 후잔드 지역 관개수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품목 평균 양허 세율(8.0%)-농산물(10.4%), 비농산물(7.6%) 11개 서비스 섹터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으며, WTO 가입으로 인한 향후 관세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법인 등록에는 약 20~30일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타직 세금위원회 산하, 통합 민원 창구인 '이딘노예 아크노(Unit window)'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 이딘노예 아크노: <http://www.andoz.tj/index.php/ru/edinoe-okno>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회사 정관(노어, 타직어 각 2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직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미불 U\$ 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 신고
- 미화 U\$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산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지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4%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4%

- 개인 소득세 13%
- 부가가치세 18%
- 소비세, 사회 보장세
- 도로세 1%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승용차 기준) 7.5%
 - *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 토지세: 타직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발표
 - * 두산베: 500TJS/헥타르
 - *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375TJS/헥타르
 - * 공화국직할주·호록: 250TJS/헥타르
 - * 기타 농촌지역: 180TJS/헥타르)
- 부동산세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² 이하: 12.75%
 -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² 이상: 15%
 - * 지방계수: 두산베 1%,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0.8%, 공화국 직할도시, 호록: 0.55%, 기타 농촌 지역: 0.4% 등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 제조분야 신설기업의 정부등록 첫 해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등록 1년 이후부터 설립자는 타지키스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투자액을 명시된 기간 이내에 신설기업의 공인 자산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설립자가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조건아래, 신설기업에 국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U\$ 500,000 미만 -2년
- U\$ 500,000 이상 U\$ 2,000,000 미만 -3년
- U\$ 2,000,000 이상 U\$ 5,000,000 미만 -4년
- U\$ 5,000,000 이상 -5년
- 부가가치세 면제

- * 타지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체 수요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된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히 중요한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사회(보장)세 면제

- * 타지키스탄 영토 내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이며, 타지키스탄 국민이 아닌 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관세 제도

관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 6.1%이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스탄 외환법은「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명시하고 있으며,「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타지키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년 9월 3일)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 현지 은행의 외환화(달러 등) 보유 부족으로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당일 출금이 불가하거나 현지화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현재 한-타지간 ‘투자보호협정’(1995년 7월 발효) 및 ‘이중과세방지협약’(2016년 9월 발효)이 체결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그리고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직 진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한 점을 주의하고, 낮은 금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타지키스탄 투자법(영문): <http://gki.tj/en/base/investment/>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http://www.andoz.tj/index.php/ru/>

타지키스탄 관세청: <http://www.customs.tj>

[입찰 정보]

타지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즈니스 정보]

<http://www.doingbusiness.org/>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년 12월 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 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 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AHS,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 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5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이 7.96%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은데, 채소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0.81% 이며 조제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키퍼물량내는 20%, 키퍼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약품 (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역내 교역 및 경제 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2017년 9월 현재 12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 칠레 6개이며,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벵골만 국가 등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과거 진행되어 오던 태국과 EU사이의 FTA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태국은 파키스탄 및 터키와 각각 2017년 말 및 2018년 말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중이다. 또한 현재 아세안은 홍콩과의 FTA협상을 2014년 7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Exempted	125
4	Onion	27	142
5	Galic	27	57
6	Coconut	20	54
7	Dried Longan	30	53
8	Coffee bean	30	90
9	Tea	30	90
10	Pepper	27	51
11	Maize (Corn)	20	73
12	Rice	30	52
13	Soybean	Exempted	80
14	Copra	20	36
15	Onion seeds	Exempted	218
16	Soybean oil	20	146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년 10월 31일)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7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8	Coconut Oil	20	52
19	Sugar	65	94
20	Instant Coffee	40	49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2011.1.1-12.31	2	119
	2012.1.1부터-	10	119
22	Raw Silk	20	226
23	Tobacco leaf	30	72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2%에서 최대 5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전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적용하였던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년 8월 1일에 폐기되었다. 반면, 2001년 2월 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10개분야 116개 품목(2017년 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i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 방식을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년 9월 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서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Gold Card 업체(우수업체) 및 우량 관세사를 기준·여건에 따라 사전에 선별한 후, 여기에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들을 환급 신청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왔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태국에는 총 271명의 AEO(수출입업자 138명, 세관 브로커 133명)가 활동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의 일반원칙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40% 이상의 권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447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조합기준, 특정 공정 기준 등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것은 6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 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18일 재심에 회부되어 2017년 5월 16일부터 2.81%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년 7월 제소되어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 2013년 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이후 2015년 2월 도색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반덤핑관세율이 10.7%로 변경되었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5년 9월

조사에 착수, 2016년 9월부터 5년간 반덤핑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세아제강을 제외(세아제강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11.96%)한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관세율은 51.53%로 결정되었다.

2017년 7월 20일부터 5년간 강관 및 튜브(Iron Steel Pipe and Tube)에 관하여 3.49~53.88%의 반덤핑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세아제강 3.49%, 현대제철 32.62%, 세아 FS 16.10%, 일반 기업 53.88%)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12년 11월부터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여 2013년 9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였으나 2015년 7월 재심결과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적용관세율: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 또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조사에 착수, 2014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확정하였으나 2017년 6월 재심결과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적용관세율: 1년차 21.00%, 2년차 20.87%, 3년차 20.74%).

▶ 반덤핑 조치 사례(2017년 10월)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H-shape Steel	China	10/10/12	13.905%
Hot-rolled boron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26/12/12	14.28-19.47%
Cold-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 plate and strip	China	10/12/13	0.67-33.32%
	Japan	26/02/15	0-50.92%
	Republic of Korea	26/02/15	50.99%
	Taiwan	26/02/15	0-33.99%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Cold-rolled steel in coil and not in coil	China	06/02/14	9.24-20.11%
	Taiwan	06/02/14	8.80-17.47%
	Vietnam	06/02/14	14.35%
Cold-rolled steel coat/dip-galvanized with aluminum or zinc	China	10/02/15	2.65-29.50%
	Taiwan	10/02/15	5.85-24.14%
	Republic of Korea	09/01/13	13.82-22.55%
	Vietnam	25/03/17	3.20-40.49%
Cold-rolled steel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or Cold-rolled steel with aluminum and zinc hot dip galvanized and painted	China	10/02/15	5.56-42.88%
	Republic of Korea	10/02/15	2.51-10.25%
	Taiwan	10/01/13	18.39-44.77%
	Vietnam	25/03/17	4.30-60.26%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조선/철골조 공사용으로서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3/05/15	33.26%
	Argentina	23/05/15	37.94-53.09%
	Brazil	16/05/17	34.4%
	China*	12/08/11	30.91%
	India	23/05/15	20.02-31.92%
	Indonesia	23/05/15	24.48%
	Iran	16/05/17	7.25-38.27%
	Japan	23/05/15	0-36.25%
	Kazakhstan	23/05/15	68.11~109.25%
	Malaysia*	12/08/11	23.57~42.51%
	Republic of Korea	23/05/15	13.58-58.85%
	Romania	23/05/15	27.95%
	Russian Federation	23/05/15	24.20-35.17%
	Slovak Republic	23/05/15	51.95%
	South Africa	23/05/15	128.11%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Taiwan	23/05/15	3.45~25.15%
	Turkey	16/05/17	27.27~38.23%
	Ukraine	23/05/15	30.45~67.69%
	Venezuela	23/05/15	78.44%
Pipe and tube made of stainless steel	China	17/09/16	145.31%
	Republic of Korea	17/09/16	11.96~51.53%
	Taiwan	17/09/16	2.38~29.04%
	Vietnam	17/09/16	310.74%
Citric acid	China	20/01/14	57.79%
High carbon iron wire	China	22/12/16	12.26~36.79%
Low carbon iron wire	China**	10/03/16	12.81~31.15%
Inner tire for motorbike	China	28/11/12	30.34~112.51%
Iron steel pipe and tube	China	20/07/17	3.22~66.01%
	Republic of Korea	20/07/17	3.49~53.88%

* 연간 1천톤 이내의 조선산업용은 0%, 연간 1천톤 이내의 JIS G 4501 grade S45 C 또는 HS code 7208.5100.003, 7208.5100.053, 721490.90은 0%임

** HS코드 7229.9000.090에 한해 12/08/17부터 0%적용

자료: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http://btir.dft.go.th/Home.aspx>)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수입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최저 2%~최대 50%, 픽업트럭 최저 2.5%~ 최대 40%의 높은 소비세와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반면, 이로 인하여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 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 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년 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기존 배기량에 따른 소비세 부과체계에서 탄소배출량, Gasohol E85 주유 가능여부, 에너지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에너지 소모가 큰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비 높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 산정 기준을 과거 현지생산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을, 수입차의 경우 CIF 가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단, 개별소비세국은 권장 소비자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기준으로 시장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CIF) 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 태국 자동차 개별소비세(Exercise tax) 세율 변동 내역

종류	2016년 1월 1일~				2017년 9월 16일~ (권장소매가 기준)			
	CO2 배기량 (g/km)	세율			CO2 배기량 (g/km)	세율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E10/ E20	E85/ NGV	하이 브리드 /BOI
승용차 (10인 이하)	≤ 100	30*	25*	10	≤ 100	25*	20*	8*/4*
	101-150			20	101-150			16/8
	151-200	35	30	25	151-200	30	25	23/10. 5
	>200	40	35	30	>200	35	30	26/13
	> 3,000 cc	50	50	50	> 3,000 cc	40	40	40
PPV/ Double Cab/ Space Cab/ Pick-up	≤ 175	23*/10			≤ 175	18/8		
	≤ 200	25*/12/5/3, 18			≤ 200	20/10/4/2.5, 15		
	>200	30/15/7/5, 18			>200	25/13/6/4, 17		
	> 3,250 cc	50			> 3,250 cc	40		
에코카 /E85, 81	≤ 100	14*/12*			≤ 100	12*/10*		
	101-120	17			101-120	14		
전기차 /BOI		10/2				8/2		

* 주: 안전성기준(active safety)을 충족해야 함.

자료원: 태국 재무부 개별소비세국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 경제협력협정(Thailand/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하고 2007년 11월 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차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된 이래 2017년 1월 1일부터는 무세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차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산 3,000cc급 자동차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종전 80%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1년 7월 총선당시 집권당인 프어타이당 공약사항으로 2011년 8월 신정부 출범이후 2011년 9월 14일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First Car Buyer Incentive”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업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와 Pick up차로 소매가격이 1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비세를 10만 바트 이내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 제도의 혜택은 1,500cc이하 차량을 태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사로도 요다,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들이 최대 수혜를 받았다. 1,500cc이하 차량을 판매하지만 태국내 공장이 없는 플로톤(말레이시아), 타타(인도), 현대(한국) 차량이 제외되었으며, 태국내에서 생산하지만 1,600cc를 판매하는 포드(미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물질, 동·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많아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년 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감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 개발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년 10월 31일, 상품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하지만, 상당수 상품들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도 포함되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560만 명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 보유량 및 20~30위권의 원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년 9월 채택한 헌법에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후 경제구조 다변화와 점진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국영기업 및 시설의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신헌법에는 경제/금융 체계에 관한 제7장이 별도로 신설되었으며, 제7장은 △시장경제 체제 강조 및 중소기업 활동 장려(135조) △조세시스템(136조) △재정시스템(137조) △국가예산시스템(138조) △중앙은행 등 금융시스템(139조) △화폐제도(140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올해 10월 개최된 원로이사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 동안 무료로 공급하던 가스, 전기 및 수도 등 유틸리티 및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지방 차원의 자급자족,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를 위한 신속한 조치, △중소기업 육성, △식량 안보를 위한 사농업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2018~2024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서 에너지, 건설, 수송,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 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의 천연가스와 1억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TAPI 가스관,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 자원으로부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가솔린, 경유 등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연평균 성장률 10%를 유지하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2015년부터 GDP 성장률이 6%대에 그쳐 그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을 2017년 6.5%, 2018년 6.8%로 예상하고 있다.³⁵⁾

35) 경제전문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자체 분석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성장률이 2015년에 4.0%, 2016년에 2.5%에 머물렀다고 추정했고, 올해 1.5%, 2018-19년에 2.8%로 예측했다.

재정정책

니야조프 前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가스 및 전력을 무료로 공급하고, 명목상의 가격으로 주택이나 기본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가스 공급가격을 인상하며, 수출량을 증대하자 재정수지가 개선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및 자원, 물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개최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은 반면 국제유가 하락과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년,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 이후 대러시아 가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2012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³⁶⁾

물가상승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8.5%, 2013년 9%, 2014년 11%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1월 마나트화 평가절하,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5년에도 16%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³⁷⁾. 올해 말 추가 마나트 평가절하가 예측되고 있어 2018

36) IMF에 따르면, 2014년에 28억 달러, 2015년에 51억 달러, 2016년에 76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7) EIU 통계 참조

년도에 또 한 차례 높은 물가상승이 예상되지만, 2019년에는 거시경제 환경 호전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³⁸⁾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고, 그해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여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진입 및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터키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서는 터키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신차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다. 2014년 6월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과 2015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향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38) EIU 인플레이션 전망(2017)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야 이외에도 자동차, 건설, IT, 섬유, 농업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한·투르크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가 교환되고 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2016년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56%에 이르는 37.3bcm에 이르는 천연가스를 중국 및 이란에 수출하였고,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29.4bcm에 달해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7.33억배럴, 2016년 6배럴 생산)와 2,500억㎥(2016년 668억㎥ 생산)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붕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되었다. 2008년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2bcm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와 가스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가스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0년 1월 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4bcm으로 줄었으며,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 1월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한 상태이다.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자, 국영기업인 Turkmengaz는 2006년 4월 중국 CNPC와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 배관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년 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 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으며, 2014년 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대 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 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대중국 가스관의 총 용량은 2020년까지 80bcm(전체 중국 가스 수입 물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D 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건설이 2019년 말에 착공될 계획으로 늦어도 2022년 말에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년 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년 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 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아 2단계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25bcm, 2014년 25.5bcm, 2015년 27.7bcm, 2016년 29.4bcm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가스수출대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ghanistan-Pakistan-India)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22차 추진 운영위원회에서 TAPI 가스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르크

메니스탄의 Turkmeno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TAPI 가스관 착공식이 있었다. 그간 Total, Chevron 등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 사회 발전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보 문제로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6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IsDB와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내 TAPI 파이낸싱 계약 서명에 합의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GDP(십억 달러)	29.2	35.1	39.1	43.4	35.8	36.2
경제성장률(%)	14.7	11.1	10.2	10.3	6.5	6.2
CPI 상승률(%)	5.3	5.3	6.8	6.0	7.4	3.5
상품수출(십억 달러)	13.0	16.5	16.8	17.5	14.0	11.0
상품수입(십억 달러)	7.6	9.6	10.0	10.0	8.0	7.0
경상수지(십억 달러)	-0.243	-0.308	-2.880	-2.769	-5.054	-7.605

자료: 세계은행, IMF

▶ 한·투르크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 출	242,714	193,509	141,189	192,987	182,162	361,773
수 입	472	837	126	156	31	92
총 액	243,186	194,346	141,315	193,143	182,193	361,865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對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은 2016년 362백만 달러이고, 수입의 경우 2016년 92천 달러로 매우 미미하여,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교역은 흑자 편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역량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플랜트·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산업기계, 철구조물, 밸프, 철강관 등 플랜트 건설 기자재와 자동차, 정보통신 제품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 면사 제품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몇 견직 카페트는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 당 20달러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야채, 과일, 주스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점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질적인 경제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국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식료품, 화학제품, 섬유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관세를 높이고 있다.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건설 기자재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재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권리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외국인 투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시부터 10년 동안 투자 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보 접근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외국인 투자법 제8조에 의거), 외국인의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대부분 49%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지상권 설정 장벽

내국인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에서, 식량 안보 및 자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단체, 기업을 포함하는 자국 국민 및 법인에게 최대 99년 동안 농업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법을 개정하였다.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토지 임차권만 허용이 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임차권의 제공 대상 :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물, 임시 시설물
-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은 최대 40년까지 허용되고, 토지 사용권,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상가 등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년 1월 1일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나트에서 3.5마나트로 평가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하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매입 기준은 3.4913 마나트이며, 매출기준 3.5175 마나트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요 외화 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입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를 10% 인상하였지만, 2015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16%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급여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현지 기업과 개인에 대해 US달러 매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시가바트 신공항,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외환 부족으로 추가 평가절하 요인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나, 송금 금액 및 횟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참고로 외환 송금에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for private clients(USD)
up to 500	30
from 501 - 1,000	45
from 1,001 - 5,000	60
from 5,001 - 15,000	70
over 15,000	0.25% from amount, min 100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ies	1% from amount, max 20,000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for legal entities and entrepreneurs without formation legal entity:(USD)
up to 500	35
from 501 - 1,000	65
from 1,001 - 5,000	80
from 5,001 - 25,000	90
from 25,001 - 50,000	115
over 50,000	0,20% min 150 USD, max 600

정부 보증 및 상업 신용장 개설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은 차관 공여 사업에 대하여 정부보증(Sovereign guarantee)을 하지 않기 때문에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정부보증이 필요한 공적 개발원조 형식의 차관 공여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며, 상업차관만 제공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을 개설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의 상업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현재 상업신용장은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범위 내의 금액을 본인 거래 은행이나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어음 할인 또는 수출 선대금 용자가 가능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상품 수취 후 하자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Certification 형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은행이 하자있는 신용장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장벽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체직원 중 현지인 고용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³⁹⁾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통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정부 발주사업 종사자의 노동허가 신청 시에는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에 발주관청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 노동허가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중 주민등록상 다른 주 출신의 근로자도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별도의 노동 허가가 필요하다.

39) 다만 1인 지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내지 예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므로 신규 여권으로 다시 비자 초청장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⁴⁰⁾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약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1%, 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부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세는 간주급여를 포함한 과표의

40)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회 불이행 시 485달러의 벌금, 2회 위반 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한다.

10%(인별 기초공제 50마나트),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비거주외국기업의 경우 법인세 선납 제도가 적용되어 분기단위로 신고서 제출 및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前분기 선납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예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적의 외국기업(지점 등)이 투르크 메니스탄 내 세적등록 및 소득귀속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 15%(선박 및 항공기 임차 등은 6%) 및 부가세 15%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지방세

법인의 경우 도시 발전세는 이익의 0.5%(분기납부), 주거환경조성기금은 이익의 1%(연 1회 납부, 개인의 경우 매월 2마나트 납부), 농업 발전세는 이익의 3%를 부과(분기납부)하고,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봉급월액의 10% 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행정 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기타 지방세로는 광고세(아시가 바트의 경우 광고비의 5%, 기타지역 4%), 주차장 임대세(5%) 및 반려견 등록세(최저급여의 0.4배) 등이 있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분담금이 부과되며, 분담금은 해당 공종에 따라 차별된다.

공공요금

그동안 자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던 가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2017년 10월 원로이사회(Elders Council)를 통해 전격 유료화되었다. 원로이사회에서 승인된 주요 공공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천연 가스)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시민 : 1000m³ 당 20마나트(무료 공급량을 초과 사용할 경우)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와 난민 : 천연 가스 1000m³ 당 20마나트.
- 상기 이외의 소비자(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제외) : 천연가스 1000m³ 당 20마나트
- 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주재국 내에 외화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건설 계약자 : 천연가스 1000m³ 당 50달러
- 주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 액화 가스 킬로그램 당 20텡케(무료 공급량을 초과 사용할 경우)

(전기)

- 주정부 예산 및 동등한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 법인체 : 3.31 마나트/100kWh
- 주 소유의 자립 법인체, 사업에 종사하는 비 국유 법인체, 개인 기업가 : 6.28마나트/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 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난민 : 2.17마나트/100kWh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주재국에 등록된 사무실과 지사를 통해 설립된 법인 : 3.58US달러/100kWh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인된 외교 공관, 외국 영사관, 각 주 및 정부 기구, 국제기구와 이들 기관의 주재국 지사 및 영구 대표부 : 3.31 마나트/100kWh
- 기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재국 시민 : 무료 공급량을 초과하여 소비한 전기에 대해 2.50마나트/100kWh(부가가치세 포함)

(수도)

- 월 입방미터 당(무료 한도 초과) 50탱게
-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용수는 10m³ 당 2.75US달러

법인, 대표부 및 지사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투자자 회의 회의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및 은행 거래 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나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부 설치에 필요한 서류

- 대표부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부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대표부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부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부 대표(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재정경제부 경제위기예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치에 필요한 서류

-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한 계약서 사본(번역공증)
- 지사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지사 설치 및 지사장 위임 등을 명령/의결하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지사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의 위임업무범위 및 기한을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공증 및 외교부의 영사 확인,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등기부등본(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동)
- 본사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비외감법인의 경우 세무서 발급 표준 영문재무제표)
- 본사 주거래은행 추천서(혹은 거래확인서) 및 예금잔액확인서(공증 및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영사 확인)
- 본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표
- 본사 보유 면허 사본(ISO 등)
- 본사 등기임원 및 주주 여권사본(상동)
- 본사 주주명부
- 본사 소개서 및 해외투자 혹은 진출 실적(건설업의 경우 해건설 발행의 해외건설실적)
- 지사 사무실 임차 예정확인서

- 재정경제부 소속 경제위기에방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부 및 지사 설치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 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부 또는 지사 설치 시 매 2년마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 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업무 활동 번호(code)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기서류들을 재정경제부⁴¹⁾에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인 경제위기에방청(Agency on Economic Risks Prevention)으로 이송한다. 경제위기에방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41) 2017.10.05.자로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로 통합

투자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경제위기 예방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경제위기예방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 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재정경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사 또는 사무소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에 3,00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무 활동 번호(code)를 재확인⁴²⁾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 하고자 하는 대표부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무활동 번호(code)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경제위기예방청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제 개발부에 이송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경제위기예방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42) 재정경제부 및 경제위기예방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 활동 번호(code)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인해 전문 법률 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 조약(1991년 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년 9월 가입) 등 8개의 국제조약과 WIPO의 9개 기구에 가입하였고, EAPO(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허권의 경우 현재 연간 70~80건의 특허 출원이 있고, 이중 90% 정도가 등록되고 있으며, 상표권의 경우 연간 약 4,000건의 상표 출원이 있고, 이중 80% 정도가 등록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명권 보호법이 제정되고 발의되었으며, 12월에는 건축물 특허 등록과 관련해 저작권 및 관련권법이 개정되었다.

정부 조달

2011년 7월 23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나트(약 7,034달러)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수송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수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과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1~2030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럽-아시아, 중앙아-중동·남아시아 등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중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물류 복합시설 건설, 자국 수송망의 국제 수송망과의 연결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6월 ‘TAT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14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이 완공되었고 2018년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 운송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건축중인 기존의 주요 도로들과 신규 건설 고속도로를 모두 합하면 약 1,700km에 달하며, Ashgabat-Turkmenbashy 고속도로, Turkmenbashy-Garabogaz-카자흐스탄 국경지역 연결 도로, Turkmenabat-Gazojak-Dashoguz 연결 도로, Mary-Serkhetabat 연결 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를 운항하는 상선단(일반 화물선, 탱커, 페리선 등) 구축, 현대적 항만 인프라 시설(선석, 선박수리소, 해운물류 센터 등) 개발을 통해 투르크멘바시市를 카스피해의 주요 국제항구로 조성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르크멘바시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년 8월 Erdogan 터키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 수송 시스템 발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의하여 국제 수송 관련 법적 기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⁴³⁾, 인근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16 11월에는 UN의 지속 가능한 수송망 국제 컨퍼런스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개최하였으며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기본료 1마나트로 저렴하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⁴⁴⁾ 무선 전화의 경우⁴⁵⁾, TMC社, 투르크멘텔레콤社가 있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서, 발신, 수신에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인공위성 발사한 이후 통신비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되레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전화 모뎀 인터넷 속도와 3G 인터넷 모두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현지 기업인 Altyn Asyr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3G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망을 이용하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43)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보장'에 있어 수송 및 환승 루트의 역할에 관한 결의'가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속가능한 복합 수송망 촉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간 협력에 관한 결의'가 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에 관한 결의'가 2017년 12월 채택되었다.

44)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 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45) MTS社(러시아)의 서비스가 2017년 10월 돌연 중단되었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 확인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보관)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 시에는 기 발급받은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⁴⁶⁾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 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서가 2016년 11월 26일 아시가바트에서 교환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되었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4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제1차 : 2010년 6월 제2차 : 2011년 3월, 제3차 : 2014년 8월, 제4차 : 2015년 1월), 일부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측은 문안 협의를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46) 현지인은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현지인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가 양등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주요 사치성 소비재 397개 품목에 대해 규제관세를 15~50% 부과한 바 있다. 2011년 7월 이중 5개 품목(담배, 1,800cc이상 자동차, 타일,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관세를 폐지하였지만, 2015년 2월 재차 주요 사치성 소비재 314개 품목에 대해 규제 관세를 5~15% 부과하였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출·수입에 대해 모두 부과한다. 일반 세율은 수입 관세(Custom Duty, 0~30%), 규제관세(15~50%를 초과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과), 판매세(Sales Tax, 0~25%: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 등이 있다.

파키스탄 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다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거래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시 인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는 거래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품 및 소비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인보이스와 관계없이 국제표준가를 적용한다.

파키스탄의 관세 부과율은 2013~2014년 기준 간접세 17.4%, 직접세 10.6%이며, 보통 1차 원료에 대해서는 0~5%, 2차 부품에 대해서는 5~10%, 완성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주요 관세 변동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009~2010년

수입자동차에 대해 당초 50%의 관세에서 800cc이하(50% 유지), 1,800~2,500cc(90%→100%), 2,500~3,000cc(100%→150%)로 인상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콘텐서(5%→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

주석판 제조를 위한 CRC Black Plate(10%→5%), 변합기와 컨트롤 패널 원자재 세율인하, 선형 알킬벤젠(Linear alkylbenzene)의 관세 면제, 태양열관련 설비의 면세범위 확대

2010년 7월 롯데의 현지 투자업체인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7.3%→3%) 인하

○ 2011년도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 소재시 50%, 국내 유관 제조업체 미 소재시 35% 관세 부과

의약품 중 항생제, 항알러지제, 항당뇨성, 결핵치료에 필요한 22개 필수 의약품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의 면제

○ 2012년도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4%) 인상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대 관세면제, 태양 수증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증치료·정수기계 및 장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훈련용 항공기·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수리·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장비·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2016년도

- 2016-17 회계연도 내 한시적으로 직물, 가죽, 스포츠 용품, 수술도구, 카펫 등 5개 영역 품목에 있어 무관세를 적용
- 기존 2%, 5% 관세를 병합하여 3% 관세로 통일
- 기존 10%, 15% 관세는 각각 11%, 16%로 상향 조정

○ 2017년도

- 스탬핑 호일(stamping foils)에 대한 관세 면제
- 조립식 모듈 패널(pre-fabricated modular clean rooms panels)에 대해 당초 20% 관세에서 3%로 인하
- 의약품 산업 용도 논우븐 패브릭(non-woven fabric)에 대해 당초 16% 관세에서 5%로 인하
-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 of polyesters) 수입에 대해 5% 규제관세(RD) 부과
- 알루미늄 음료수 캔에 대해 당초 11% 관세에서 20%로 인상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은 2012/2013 회계연도 정부예산 편성시 세계관세기구(WCO)가 매 5년마다 제정하는 HS 코드에 자국 관세 코드를 맞추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컨테이너 안에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를 넣어두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선적지와 서류 작성지가 다를 경우나 선적 후 인보이스가 작성되는 경우,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 경우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5월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58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년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특히 2008년 8월에는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년 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국내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가 2011년도까지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도에 신규 제소된 건수는 없다.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는 2004년 PVC 합성수지, 2005년 폴리에스터 섬유사(PFY), 2006년 폴리에스터 원면(PSF), 2009년 무수프탈산(P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우리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자동차안전벨트(증거불충분으로 기각), 2009년 총 3건(과산화수소, 무수프탈산, 편면코팅판지), 2011년 포름산 85%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고 일부 우리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2007년 이후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파키스탄 기업이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외국경쟁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 파키스탄 덤핑제소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관세(%)	비고
2004.6월	PVC resin	대한민국, 이란	10.18	2016.4.8 재신청
2006.8월	Polyester Staple Fiber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2.14 4.34~10.26 5.04	2018.1까지 일몰재심(Sunset review) 연장
2008.9월	Seat Belt	대한민국	종료	
2009.5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36 6.17 11.84 5.84 27.28	15.9.23.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2009.6월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	대한민국(한솔), 대한민국(HM),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5.32 7.86 20.61 11.66 12.35	2016.1.30 판정 재신청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벨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터키	14.77 9.2~84.48 3.82~25.04 25.2 71.93 35.61 25.61	'15.9.2.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관세(%)	비고
2010.12월	Filament Yam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6.92 29.07	TK Chemical 신규사업자로 지정 반덤핑 미부과 판정('11.10.8)
				'12.1.17. 일몰재심(Sunset review) 종료후, '10.12.4부터 반덤핑관세(6.92%) 부과
2011.2월	Formic Acid 85% 이상	대한민국, 중국	44.1 3.48	2012.2 종료
2015.12월	Offset printing ink	대한민국, 중국		2015.12 판정 신청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관세 세입 성과

2014~2015년 주요 관세항목 중 자동차 수입이 지난해 32% 증가하여 총 관세 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석유제품이 약 8%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위 10개 주요 수입 품목의 관세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조사되었다.

▶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백만 루피. Rs)

관세 항목	2015~16	2014~15	성장률	점유율(%) 2014~15
자동차 및 부품	61.9	49.4	25.4	14.8
POL 제품	38.0	24.4	55.6	9.1
전기제품	21.4	22.6	(5.3)	5.1
식용 기름	25.9	21.2	22.3	6.2
기계류	26.2	20.3	29.1	6.3
플라스틱	15.8	13.2	19.8	4.2
쇠, 철 류	30.2	10.7	182.2	3.8

관세 항목	2015-16	2014-15	성장률	점유율(%) 2014-15
제지류	8.9	8.2	8.9	2.1
유기화학물류	9.9	6.4	53.9	2.4
계	238.3	176.4	35.1	57.0
기타	179.9	138.9	29.5	43.0
총 계	418.1	315.3	32.6	100.0
환불/반환	12.0	9.1	31.9	-
순 총계	406.1	306.2	32.6	-

자료: Fiscal Policy Statement 2016-17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표준(standard)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PSQCA(Pakistan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로서, 2010년 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농산물에 대한 전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에 따라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 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년 7월 1일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2(로마자자로 변환)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환경, 안전, 보건 상의 이유로 술, 음란물, 마약, 무기류 등 6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2009년 8월 발표된 파키스탄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조류 독감 발생 전력이 있는 다수국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e.pk/wp-content/uploads/2016/10/IPO-2016.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또한 중고 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년 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 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8년부터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고, 2016년부터는 감시대상국에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며,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 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진출 기업으로는 대우고속버스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현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서비스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non-industrial alcohol plants)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상기 5개 분야 외에는 투자시 관련기관의 허가외의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금융업종 상세 후술).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청(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4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를 국세청(FBR)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1년 7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신규 지사·사무소설립을 희망하는 외국 회사는 보안심사통과(security clearance)를 내무부로부터 받도록 규정 하였으나, 2013년부터 SECP가 발급하는 외국투자자 등록증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제조업 중 수출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어 면세 및 기타 특혜 등을 향유 하는 투자의 경우,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가죽, 섬유, 신발, 수술 용구, 스포츠용품, 카펫, 수산물, 광업 등이 있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 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감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순이익금의 0.5%~1.25% 세금만 부여된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년 9월 10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법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기 인센티브 제공시 중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투자청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며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 2, 3의(경우에 따라 수십 명의) 사람이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 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현지 금융조달상 제도적인 제한은 없다. 단기 금융은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 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여 (1998년 5월 핵실험 직후 외환계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년 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77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2016년 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부터 재차 66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았고, 2016년 9월 약 236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함으로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과거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 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는 보고된바 없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달러계좌 보유가 금지되어 현지화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달러 송금시 환전을 하여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5~35%), 소득세(10%), 일반판매세(17%),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 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 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은행(35%), 공기업·민간기업(35%), 소기업(25%)으로 부과한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년 7월 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그 효력을 2005년 7월 15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내에 발생하는 외국인관련 각종 분쟁 발생시에 국제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분쟁 해결에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년 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 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년 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우리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상호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간접 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관료사회의 느장행정과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만연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회교 문화에 따른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 등이 대표적인 교역/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 10월 은행 총예금 4조 1천억 루피, 총대출 3조 3천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81%이상의 상업 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납입자본의 총 47%는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30억 루피 이상의 최소요구

자본(MCR)을 보유하여야 하며, (추가) 본사가 납입자본금을 최소 3억 달러를 보유하고 최소 자본적정성비율(CAR)이 8% 이상일 경우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http://www.sbp.org.pk/about/banks_nbfis/capitalbanks/creq1.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업종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점유율 86%)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하여,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파푸아뉴기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는 금, 은,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광물산업은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16년 광물산업 수익(31억불)은 전년대비 38%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세에 있다.

최근 들어 천연가스는 파푸아뉴기니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엑손모빌 등 다국적 기업이 참여한 190억불 규모의 PNG LNG 프로젝트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그 밖에도 파푸아뉴기니는 목재, 수산물 등 천연자원 및 커피, 코코넛, 코코아, 팜오일 등 농산물이 매우 풍부하여 이와 관련한 농수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에 이어 Peter O'Neil 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업, 수산업, 산림업 분야에 초점을 두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석유, 가스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8월 글로벌 통상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을 발표하고, 비광물 분야 특히 농수산물에서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무역구조를 개혁하고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공개하였다.

이는 파푸아뉴기니의 대외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 및 원자재에 집중(70% 이상)되어 있어 경제 상황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정책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 △수출 관련 해외 시장접근 강화, △농수산물 등 부문별 정책 마련, △해외 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통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경제전망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 및 ADB, IMF 등 국제기구들은 2017년 파푸아뉴기니가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및 광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지속 높아질 것을 감안할 때 파푸아뉴기니 내 LNG 산업 관련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도 제2차 PNG LNG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시장가격 상승, 농작 기술 발전, 최근 우호적인 기후 조건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 정부 역시 비광물 분야 육성 차원에서 농수산임업 분야에서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파푸아뉴기니 경제에 있어 위험요소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제정치경제 상황 및 파푸아뉴기니의 경제 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ADB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회귀 가능성 등 글로벌 보호 무역기조가 강화될 경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파푸아뉴기니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외환거래 통제로 인해 변동 환율제가 대외충격 완화 기제로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012년 이후 주재국 정부가 대외충격에 취약한 에너지광물 자원의 수출 기대액에 근거하여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온 점 등과 결합되어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

엑손 모빌 사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190억불을 투자한 파푸아뉴기니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사업인 PNG LNG 프로젝트는 2016년 기준 5억6천만 배럴의 LNG를 생산하였으며 이렇게 생산된 LNG는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APEC 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내 에너지 부존량은 천연가스 4,400억 입방미터, 석유 6억6천만 배럴, 가스 콘텐세이트 2억6천2백만 배럴이다.

현재 진행중인 파푸아뉴기니의 차기 대규모 프로젝트는 Gulf 주 PRL 15 지역에 위치한 Elk-Antelope 가스전으로서, 이는 예상 가스 부존량이 6-7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파푸아뉴기니내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다.

〈광물분야〉

2016년 파푸아뉴기니내 광물산업 수익은 31억불로서 이중 금이 78%, 구리가 13%, 니켈이 5%를 차지하고 있다. Lehigh 금광, Teah 동광, Porgera 금광 등 3개 광구가 파푸아뉴기니내 전체 광물 수익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Madang 지역에 Ramu 니켈-코발트 프로젝트는 2016년 2억2천만불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주재료인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동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파푸아뉴기니 총 인구의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및 관련 산업이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예산의 약 2% 미만(약 7천만불)이 농업 분야에 사용되는 등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커피, 코코아, 코프라, 팜유, 설탕, 고무, 고구마 등이며, 커피, 코코아, 팜유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수산업〉

전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5%가 파푸아뉴기니 EEZ에서 어획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태평양해양산업구역(PMIZ)을 Madang 지역에 설정하고 수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무역협정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AT)〉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이 체결한

PICAT 회원국이다. PICAT는 회원국간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회원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정이다.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무역 관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2008년 상호간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등 파푸아뉴기니에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을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과 이중과제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있다.

〈APEC〉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에 APEC 회원국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현재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SEAN〉

ASEAN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로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Cotonou 파트너십〉

Cotonou 파트너십은 정치, 개발, 무역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지역 국가 79개국 회원국으로 있으며 EU 15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EPA를 체결하는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였다. 2009년에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EU와 파푸아뉴기니는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EPA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 수출을 위한 특별 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WTO〉

파푸아뉴기니는 1996년 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상 및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을 높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영세율(Zero Rate) 0% : 대부분의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상품들.
-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
-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과일, 채소, 알콜, 목재, 일부사치품)

이 밖에도 설탕 7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동차는 0~11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파푸아뉴기니의 평균 수입관세는 5.1%로 최소 제한 무역제도를 운영하는 범위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수입세율은 수입된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IRC(Internal Revenue Commission)에 문의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 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물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 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산림부, 외교부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 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랍스터 등	수산청
파푸아뉴기니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a Industri Koporese)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 PNG 상공부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 및 저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 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식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을 시행하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 및 저작권접권을 시행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 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 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 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서울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서울
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30%
Non-resident 기업 (광물자원 관련)	40%
석유기업, Resident, Non-resident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Resident, Non-resident	30%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 활동 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 및 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 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200
2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을 찍어준다.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 토지 가치 35,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5,001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1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14일	토지 가치의 5%
3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다.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300
4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었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22일	PGK 200

자료: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6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 석유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별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Department of Mining & Petroleum : 광물, 석유, 가스
-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 농산물
- 3) Department of Fisheries & Marine Resources : 어업
- 4) Department of Forest : 임업

이밖에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용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 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은 신규 외환계좌 개설 및 해외송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1998년 4월 21일 발효)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시에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포기가 많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파푸아뉴기니는 전체 189개국 중 145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평가의 세부 항목 중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은 138위를 차지했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1천만키나 이상, 5년 이상 파푸아뉴기니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파푸아뉴기니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 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16년말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29건이며, 신고법인은 21개, 신고금액은 147백만불이며, 투자금액은 122백만불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6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822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관세율(%)	적용품목(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470	495	495	496	496
1	2,088	2,229	2,229	2,242	2,242
3	2,117	2,280	2,280	2,268	2,268
5	563	651	651	659	659
7	837	969	969	963	963
10	1,076	1,360	1,360	1,369	1,369
15	1,006	1,213	1,213	1,202	1,202
20	138	187	187	191	191
25	4	4	4	4	4
30	154	229	229	227	227
35	23	27	27	35	35
40	125	146	146	136	136
45	5	6	6	6	6
50	18	19	19	19	19
65	4	5	5	5	5
총계	8,986	8,990	9,820	9,822	9,822

자료: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09년 평균 7.34%로 높아진바 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7.10%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부문이 11.83%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6.16%, 광업 2.30% 수준이다.

➡ Average Nominal Tariffs, 2009–2015(%)

연도	농업	광업	제조업	평균
2010	11.94	2.28	6.18	7.02
2011	11.99	1.77	5.81	6.53
2012	11.97	1.76	5.79	6.51
2013	11.98	2.29	5.76	6.71
2014	11.92	2.30	6.16	7.12
2015	11.83	2.30	6.16	7.10
2016	11.83	2.30	6.16	7.10

자료: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폐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년 7월 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2006년 2월 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고,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 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 필름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1년 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년 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 담배 및 맥주는 2016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별도로 물품가격의 15%가 종가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년 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 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 · 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년 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핑 · 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년 7월 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년 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13년 6월 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년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첫째(2016년 6월 12일~2017년 6월 13일)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 845.80페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수입판지에 대한 주재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2015년 5월 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15일 후 세이프가드가 발동을 하게 되어 실제로 2015년 5월 27일 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필리핀에 수입되고 있다.

동 세이프가드는 2018년 4월 31일까지 발동될 예정으로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년 5월~2016년 4월) PHP 980(약 22달러)/톤이 부과되며 두 번째 해(2016년 5월~2017년 4월)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PHP 640(약 14달러)로 관세가 조정된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년 7월 15%로 인상한 바 있고, 2004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에는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4월 한국정부는 페놀 등 5개 석유화학제품을 민감품목에서 일반품목으로 전환(관세 0%)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필리핀측에도 상호대응세율배제를 요청하였고 필리핀도 국내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이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년 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를 적용하고 있었다(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 페소 이하 2%, 110만 페소 이하 12,000 페소+6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 페소 이하 112,000페소+1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 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2007년 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년 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한바 있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Cagayan)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으며, 수빅(Subic) 경제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년 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년 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년 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앰블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 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40~50%,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다. 대상 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외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 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종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Camcording), 기술이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는 2014년 기준 총 2억 8430만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자료를 적발하였고 이는 2013년 1억 6776만 달러보다 1.7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어 지식재산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정부 보호정책 아래 메트로 마닐라의 대형 소매업자들은 불법 음반 및 비디오 CD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고 길거리 소매상의 불법 복사본 판매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 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

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국제경쟁 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다.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 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은 최소 10만 달러, 필리핀투자 유치기관인 PEZA, CDC, SBMA 등록시 4만 달러, 100% 수출기업은 자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의 외국인 직원 워킹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후 25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여,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 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위: 달러)

품 목	최소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1천만
트럭 조립	8백만
모터사이클 조립	2백만

자료: Executive order No.156 of the Philippines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년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고,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1986년 11월 9일 한국과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년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mployment) 등 9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7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호주는 GDP기준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튼튼한 경제 기초를 자랑하며 1인당 GDP도 5만 1천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자 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서비스의 GDP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호주의 주요 산업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인데 특히 농업, 광업, 보건, 관광, 교육, 금융 등이 높다. 실질 총부가가치(GVA) 성장률 기준으로 정보통신, 금융, 과학기술, 건설, 광업 순으로 높다.

▶ 호주의 산업별 실질 총부가가치(GVA)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VA 비중	2.4	7.4	6.4	83.8

자료: Austrade

2016년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호주정부의 순부채는 GDP대비 21.1%로서 선진국 평균 72.9%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FDI)의 총액(Stock)은 2015년 현재 7,350억 호불이다. 호주의 수출은 지속 증가해왔는데 주요

수출품목은 철광석, 석탄, 교육, 금, 천연가스 순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해외 여행, 자동차, 정제석유, 통신장비, 운송서비스 순이다. 호주의 교역은 2016년 기준 총 6천6백억 호불이며 GDP의 40%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기구(APEC) 국가와의 교역이 7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수입대상국별로는 2016년 기준 중국(22.7%), 미국(10.5%), 일본(9.1%), 한국(4.1%) 순이다.

➡ **호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Stock) 산업별 비중**

(단위: %)

	광업	제조업	부동산	금융	기타
FDI Stock 비중	40.1	11.7	8.7	8.1	31.4

자료: Austrade

호주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보유국으로서 금, 철광석, 우라늄, 천연가스 생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주요 10대 농산물 생산자이며 호주산 농산물은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융분야에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금융자산 보유국이다. 교육·관광분야에서는 세계 3위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세계 11위의 해외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자원 가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이어져 호주 경제에 광산 붐(Mining Boom)이라는 전례없는 호황을 가져다 주었지만 2011년 이후 호주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 이어 2014년 국제유가 마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호주내 자원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분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Mining Boom 쇠퇴 이후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산물의 60%를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로서 미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014~20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잇따라 FTA를 체결·발효하였으며, EU 등 다른 주요국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주요 산업 환경

광업 및 에너지산업

광산 붐(Mining Boom)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업은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고규모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등의 자원을 보유·생산하고 있는 에너지·자원부국으로 OECD 국가로는 드물게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2015년 기준으로 1,334억 호주달러의 자원·에너지를 수출하여 호주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한다.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광종	단위	매장량				2015년 호주 생산량 및 세계 비중(%)	
		호주(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76,400	891,540	8.6	4위	275	7.2
우라늄	톤U	1,670,000	5,404,000	30.9	1위	5,654	9.5
철광석	백만톤	54,000	190,000	28.4	1위	824	24.8
동	천톤	88,000	720,000	12.2	2위	960	5.1
아연	천톤	63,000	200,000	31.5	1위	1,580	11.8
니켈	천톤	19,000	79,000	24.0	1위	234	9.2
천연가스	Tcf	122.6	6,599	1.9	11위	2.34	1.9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6(석탄, 천연가스), 산업부 Resources Energy Quarterly 2016.9

재생에너지는 호주 전체 전력생산의 14%를 담당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광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풍력발전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2.1%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업생산의 6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주요 수출 지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기, 밀, 설탕, 낙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2014~15년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는 등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요증가로 인해 농업(Dining Boom)이 광업(Mining Boom)을 대신하여 호주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총 450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약 19% 상승한바, 이런 추세라면 호주 최대 수출품목인 철광석 수출을 조만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조업

호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수준으로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 이내에 호주내 생산 공장을 폐쇄할 예정으로 향후 호주내 제조업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와 함께 정부도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산, 고용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립 시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our'라고 불리는 4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National Australia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호주 금융기관 보유 자산총액은 7조 5천억 호불이며, 운용자산은 1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 관광산업의 경우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5%씩 증가 중이며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1위의 해외관광객 유입국이다. 연간 방문객이 743만 명에 달하고 약 5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호주 방문객수를 당초 6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2배 늘리는 'Tourism 2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역시 호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3위의 해외유학 유입국가이며 2015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스 수출이 188억 호주달러로 총 서비스 수출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호주 무역·투자 현황

2016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한편 호주는 한국의 12위 수출국, 7위 수입국으로서 8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2016년 한국은 총 75억 달러를 수출하고 152억 달러를 수입하여 7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한·호주 상품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
수출	92.5	95.6	102.8	108.3	74.8
수입	229.8	207.8	204.1	164.4	151.6
교역규모	322.3	303.4	306.9	272.7	226.5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18.7억 달러), 경유(11.4억 달러), 휘발유(10.0억 달러), 제트유 및 등유(5.0억 달러), 자동차 부품(1.6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37.0억 달러), 철광(28.3억 달러), 천연가스(17.7억 달러), 가축육류(11.6억 달러) 등이다. 2017년 1월~7월간 우리나라 대호주 수출은 주력제품인 석유제품의 하락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선박(FLNG) 인도 등에 따라 155억 달러로 전년대비 동기대비 246% 증가하였고, 수입도 113억 달러로 39% 증가하였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26억달러를 호주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투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현재 대호주 투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호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누적 9.5억 달러이다.

▶ 최근 한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도착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건 수	179	176	177	129	130	155	3,593
금 액	1,382	2,237	2,669	1,565	870	840	12,153

주: 누계는 1968~2016 합계금액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WTO에 따르면 호주는 2016년 기준 평균관세율 2.5%,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2.7%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4.5%)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2.9%), 일반 기계(2.9%), 기타 제조업(1.3%)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년 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⁴⁷⁾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47)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할 예정(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이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년 6월 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정부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SPS 조치들을 WTO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하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 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호주정부는 달팽이, 두꺼비, 벌, 개미 등을 고위험 병충해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검역하고 있다.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밀폐되지 않은 고기, 씨앗 및 견과류, 생과일 및 채소는 개인적 목적으로도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수입하지 못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또한 수입식품의 해당지역내 판매에 관한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별 규정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⁴⁸⁾.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6개 품목(총 20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8건은 반덤핑 조사 6건(11개국), 덤핑관세부가 연장여부 조사 2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6건(4개국), 재조사 1건(3개국), 면제 조사 3건(6개국)이다. 이는 2017년 1월 대비 조사 중인 품목은 2개가 감소(20건 → 18건)한 반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부과 품목은 2개 품목이 증가(24개 → 26개)한 수치이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6건) 중 16건(전체 대비 62%)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4건⁴⁹⁾(2017년 1월 대비 1건 감소),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8개 품목⁵⁰⁾(2017년 1월 대비 변동없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4건 모두가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인 8개 품목 중 7개(88%)가 철강 제품이다.

48)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49) 선재(반덤핑), 열연코일(반덤핑연장), 철강재 파이프(반덤핑 재검토), 아연도금강판(면제)

50) 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열연구조섹션(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풍력타워(Wind Tower)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반덤핑 관세 계산은 복합과세(Combination Duty)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계산되는 덤핑 마진(Fixed Amount = 정상가격-신고수출가격)에 덧붙여,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신고수출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Variable Amount)만큼 추가하여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덤핑마진을 줄이는 노력 뿐만 아니라, 차액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덤핑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감소 등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임금효과, 고용효과, 산업형성 저해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호주 반덤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반덤핑 조사기간이 매우 짧은 점(185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장상황과 반덤핑 제소 동향을 파악하고 덤핑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회계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장관(산업부 의회차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시 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출 제품의 호주 내 수요기업들이 조사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수요기업들이 호주 제품과의 차이점, 호주 수입의 필요성, 산업 무(無)피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하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공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주 재무부 산하의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사전 심사⁵¹⁾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자산의 경우 2.5억 호주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지는 15백만 호불, 기타 자산은 55백만 호주달러 초과 투자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⁵²⁾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54백만 호주달러가 투자 심사 면제 상한이다. FIRB는 거의 모든 사전심사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상한이 2.5억 호주달러에서 10.78억 호주달러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51)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0.78억 호주달러이다.

52)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제상한은 54백만 호주달러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0.78억 호주달러 미만의 투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또한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 35%, 개인 25%)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년 1월 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 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

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한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 혁신 특허의 보호기간은 8년인데, 일반특허는 5년, 혁신특허는 2년째되는 해부터는 매년 유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의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trade marks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되며 총 16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2003년 음반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학생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개관

홍콩은 세계적인 무역과 서비스 거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2016년 기준 홍콩의 무역액은 9,739억 달러로 우리나라(9,010억달러)와 경쟁하는 세계 Top 10 무역국이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훨씬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국가들보다 많은 무역액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무역성과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정부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지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무역의 특징은 중개무역과 중국 광둥성 지역의 둥관, 심천 등의 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가공무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842년 난징 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유럽과 중국 본토 및 아시아를 연결했던 전통적 중개무역 센터로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홍콩정부의 무역,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난징조약 이후 1940년대까지 홍콩은 중국과의 중개무역 거점(Entrepot)으로 성장해 왔다.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 홍콩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과 정치적 안정, 충분한 항만시설 등은 홍콩이 중개무역항으로 발전

하고, 은행 및 무역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본토는 국제경제와 단절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홍콩은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 지게 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는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의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기타 노동집약적 제품들로 다양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다만,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발적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홍콩은 다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한국과 대만 등 경쟁 신흥공업국에 비해 기술발전이 뒤처지면서 홍콩제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자 홍콩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기업들이 광둥성의 주강삼각주(PRD: Pearl River Delta) 지역으로 가공공정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기준으로 홍콩의 주강삼각주 투자액은 광둥지역 총 FDI의 약 80%인 48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중국 이전과 함께 홍콩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90년대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주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창출된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은 광둥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중국 생산 상품에 대한 무역서비스,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가 중국내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 전문화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 홍콩 GDP의 24%에서 2000년

4.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도 2000년에 87%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부문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은 23%에서 10%로, 서비스산업은 52%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더욱 심화되어 2012년 홍콩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5%, 서비스업 비중은 93%까지 증가하여 극단적인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유통, 무역, 숙박업 (29.0%), 금융, 보험, 전문서비스업 (2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9.5%)과 기타서비스업(10.3%)도 그 뒤를 잇고 있다.

혹자는 홍콩의 산업구조가 극단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해 제조업을 등한시한다고 지적하나, 유심히 살펴보면 홍콩의 서비스업은 상품의 기획-디자인-설계-제조-물류-판매 등의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조활동이라는 일부 기능을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풍부한 중국으로 재배치 것이고,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다른 활동들을 여전히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콩의 기업들이 주로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10~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이보다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유통 등의 단계에서 70~8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프로세스는 홍콩의 대외무역 추이 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6년 홍콩의 상품수출은 4,600억 달러였는데 이중 98%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한 것이다. 이중 53%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홍콩의 2016년 홍콩의 수입액은 5,139억 달러였는데 이중 48%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은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외무역액 9,739억 달러를 기록, 세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보다 훨씬 많은 인구나 넓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도 홍콩과 비슷한 규모의

교역액(2016년 9,010억 달러)이고, 러시아, 캐나다 등도 홍콩보다 작은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홍콩이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홍콩의 수출입 총괄

(단위:억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4/13	'15/14	'16/15
총 수출	4,563	4,708	4,622	4,600	3.2	-1.8	-0.5
수입	5,206	5,409	5,187	5,139	3.9	-4.1	-0.9
(재수출)	4,494	4,637	4,562	4,545	3.2	-1.6	-0.4
무역액	9,769	10,117	9,809	9,739	3.6	-3.0	-0.7
수지	-642	-700	-5,65	-539			

*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류기기, 의류, 화장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 지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체들은 제품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Offshore Trading의 규모는 6,436억 달러로 홍콩을 거쳐간 무역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이는

단순 무역상사로서 홍콩회사들이 기능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국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제조 또는 가공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추정된다.

제조업 분야 홍콩의 주요 교역품은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다. 이들 관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제품 또는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주강삼각지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다시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2016년 재수출액 중에서 전자·전기·통신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르고 있는 바, 홍콩회사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의 가공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비싼 임대료 및 임금 때문에 홍콩에서 부피가 큰 상품의 조립 및 생산 등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는 부피나 중량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주얼리나 금·은 등의 신변장식용품 등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얼리 품목은 2016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베트남 등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과는 원자재, 부품, 완성품까지 다양하나, 미국은 주얼리, 과일, 육류, 예술품이 무역액의 약 25%, 대만은 반도체와 통신장비가 41%, 일본은 반도체·통신장비(약32%)외에도 원유, 시계, 화장품, 생활용품, 자동차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무역액도 감소하고 있는 바, 2016년에는 수출은 -0.7%, 수입은 -0.9% 감소한 바 있다. 이 중 무역액의 50% 수준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0.4%) 및 수입(-3.4%) 감소가 큰 원인이나, 이밖에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수출 -5.3%), 일본(수출-4.9%) 등과의 무역액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홍콩무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화기, 통신장비, 컴퓨터 전자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10~15% 감소하고 있으나,

홍콩 최대 수출입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교역증가(7.2%)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주얼리 부분품의 수입이 증가(8.1%)하고 있다.

▶ 홍콩의 주요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국	2016			수입국	2016		
		금액	비중	변화		금액	비중	변화
	전체	4,600	100	-0.5	전체	5,139	100	-0.9
1	중국	2,491	54.2	0.4	중국	2,457	47.8	-3.4
2	미국	415	9.0	-5.3	대만	374	7.3	6.4
3	일본	149	3.3	-4.9	싱가폴	335	6.5	6.4
4	인도	149	3.3	14.6	일본	316	6.2	-5.2
5	대만	96	2.1	14.6	미국	265	5.2	-2.0

자료: 홍콩무역발전국 (對한국 무역액은 우리나라 무역협회와 통계치 상이)

홍콩과 우리나라의 교역도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무역규모면에서 홍콩은 한국에 있어 중국, 미국 다음가는 제3대 교역국가로서 2016년 수출금액은 328억 달러, 수입금액은 16억 달러로 한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는 311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교역품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플라스틱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류의 수출이 최근 연간 30~4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산 화장품의 홍콩시장 점유는 유럽 및 일본제품에 밀려 7위였으나, 2015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한·홍콩 상품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309.7 (22.4)	326.1 (5.3)	277.6 (-14.9)	272.5 (-1.8)	304.2 (11.6)	327.8 (7.8)
수 입	23.2 (19.0)	21.0 (-9.3)	19.3 (-6.3)	17.5(-9.3)	14.9(-14.3)	16.1 (8.1)
총교역	332.8 (22.2)	347.1 (4.5)	296.9 (-14.5)	290.0 (-2.3)	319.2 (10.0)	343.9 (7.8)
수 지	286.5	305.1	258.3	255.0	289.3	311.7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홍콩 상위 15개 품목별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수출액	비중(%)	증감(%)	수입액	비중(%)	증감(%)	수지
반도체	14,476	44.2%	24.1	465	28.8%	-1.8	14,011
전화기/통신기	5,057	15.4%	1.6	110	6.8%	8.8	4,947
선박	1,873	5.7%	10.7	17	1.1%	-56.3	1,856
화장품	1,082	3.3%	78.7	4	0.2%	0.9	1,078
석유제품	938	2.9%	-27.4	4	0.2%	-39.8	934
컴퓨터 부품	594	1.8%	-13.6	109	6.8%	23.6	485
액정디바이스	558	1.7%	-11.0	11	0.7%	-19.2	547
금(반가공)	520	1.6%	24.1	157	9.7%	106.4	363
은(반가공)	466	1.4%	157.4	3	0.2%	2,248.	463
판독기	457	1.4%	16.9	10	0.6%	-41.7	447
다이오드	352	1.1%	-20.1	36	2.2%	-21.4	316
축전지	333	1.0%	26.8	14	0.9%	104.2	319
스티렌 중합체	290	0.9%	-15.3	3	0.2%	169.6	287
인쇄회로	252	0.8%	-34.2	11	0.7%	-10.0	241
디스크 등 기억장치	223	0.7%	-6.5	34	2.1%	-10.3	18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홍콩은 서비스 분야의 무역도 활발하다. 2015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입액은 1,7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 수출액은 1,043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등 서비스 교역이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 서비스업 교역 중심에는 역시 무역, 물류, 유통업이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무역·유통 분야의 GDP 비중은 22.7%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체수 기준 50%, 고용기준 30%를 차지하고 있다.

좁은 면적과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계 각국과 경쟁하면서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는 홍콩 경쟁력의 원동력은 크게 비교우위적 요인과 경쟁우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복합성 및 개방적 태도, 무역업 종사자들의 언어능력(중국어, 광둥어, 영어) 등을 손꼽힌다. 이러한 점들은 홍콩이 오랜기간 영국의 식민지로서 태생적으로 얻어진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진 비교우위적 측면 외에도 홍콩 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구축한 제도적 장치들도 홍콩이 다른 경제권에 비해 가지는 경쟁우위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무역항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홍콩의 무역업체들은 제품의 조달 및 판매에 있어 다른 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10~20% 수준의 관세와 15~20% 수준의 특별소비세를 사치품에 부과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러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나 신발, 가방, 주얼리 등의 제품을 자국내에서 보다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강점은 홍콩을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홍콩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신규 진출 도시 기준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단일세율 법인 소득세(16.5%)를 부과하고 해외수익,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지정학적 요인과 영어사용 환경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낮고 간단한 세제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홍콩을 선택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아시아 각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각국 지사에서 헤드쿼터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홍콩에서의 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이니 다른 나라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해외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를 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셋째, 일국양제하에서도 독립된 사법부와 법의 지배(Rule of Law)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 중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나 장애물을 만들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국내기업과 분쟁이 있을 경우 해외기업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요인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은 안정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해외기업이 가지는 위험요인을 크게 해소시켜준다.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제무역은 WTO rule에 따르고 있다. 홍콩은 2001년부터 시작된 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참가한 첫 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후 2017년까지 12회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이러한 무관세 품목은 1,800개 품목에 이른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둥성의 153개 서비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dong)을 체결하였다. 2016년 양측은 이 협정을 중국 본토 전역으로 확대하여 CEPA의 서비스 무역협정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의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국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Commercial Presence) 134개의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국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야에 따라서 외자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중외 합작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2017년 중국은 홍콩의 중국반환 20주년에 맞추어 6월 30일 중-홍간 투자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역시 CEPA의 틀 안에서 홍콩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홍콩투자자들의 투자자산 양도 및 과실의 홍콩 송금 등을 허용함으로써 홍콩투자기업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차례로 체결된 중-홍간 CEP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 분야의 보충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홍콩과 중국간 경제 교류의 장애를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면서 나가고 있다.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홍콩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기업운영 실적이 있으면 CE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CEPA 협정상 홍콩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내에서 3~5년간 사업이력을 보유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홍콩정부는 중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자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약 1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조정, 브랜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홍콩은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7년 연말까지 ASEAN과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홍콩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등의 등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4,251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특허권 조례(The Patent Ordinance)에 따라 중국, 영국, 유럽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등록된 특허는 5,932개이며 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을 설립하여 혁신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를 설치, 2014년에 9억 달러를 투자, 4,300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ITF내에 홍콩 대학내 창업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 6개 대학에 각각 4백만 달러씩 투자해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홍콩내 각종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을 샤틀(新界)지역에 구축하여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지원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은 창업보육기능, 기업과 지역내 연구소 등과의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홍콩의 산업 및 무역을 위한 정부기구 및 관련 기구

우선, 홍콩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정부부처는 CEDB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이다. CEDB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중앙정부 기구이며 CEDB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이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은 기업과 대학의 혁신 및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Invest Hong은 대내외 투자유치를,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실행을 맡고 있다. Economic and Trade Office는 홍콩과 다른 나라간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해외주재 홍콩정부 기구로서 중국 본토내 5개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록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외교권이 없는 홍콩정부로서는 ETO를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ETO 및 ETO 직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은 홍콩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한 민간기구로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전람회 등을 기획하고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산하 기구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각종 협회나 상공회 활동이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홍콩 상공회의소 (HKGCC: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와 홍콩 중화총상회(HKCGCC: Hong Kong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들 수 있다. 상공회의소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공유 포럼 등은 물론, 연구사업,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홍콩상공회의소 (HKGCC)는 1861년 설립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재계 모임이다. 현재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해외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홍콩의 Hang Seng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이 회원이며, 회원사들이 홍콩근로자의 1/3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홍콩중화총상회(HKCGCC)는 1900년에 설립된 국내외 화교 사업가들 위주의 상공회로 약 6,000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전 회장인 Dr. Jonathan Choi Sunhwa Group 회장은 한국과 홍콩기업간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모임인 한·홍콩 비즈니스카운슬의 의장으로서 한국정부의 명예 한국투자대사로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각국 상공회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홍콩 현지에 진출한 1,700여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상공회의소 (KCCHK;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Hong Kong)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홍콩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금 또한 최소화한다. 전체 정부 수입의 2.1% 밖에 되지 않는 소비세를 철폐함으로써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일례로, 홍콩정부는 와인에 부과되던 80%의 소비세를 2007년에 40%로, 이듬해에 철폐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와인제조업자들이 홍콩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홍콩 와인경매 시장은 뉴욕과 런던 시장을 넘어섰으며, 2015년 10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소더비(Sothebys) 와인 경매시장 매출이 약 160만 USD로 2006년 뉴욕 경매에서 세웠던 약 100만 USD를 능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468/kg
수입시가	HK\$ 2455kg
수입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목적으로하지않고제조된그외모든담배	HK\$2309/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자료: 홍콩세관

또한,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를 내야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2016년에 초기등록세금은 정부 수입의 2.5%를 차지했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에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다.

수출입허가(라이센싱)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선싱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라이선싱은 홍콩이 거래국과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보안상의 목적으로 혹은 내부의 안보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은 무역·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공업무역서)의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수출입은 홍콩의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무역·산업국으로부터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무역·산업국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라이선싱 혹은 인증 제도를 통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쌀에 대한 라이선싱 요건은 주식(主食)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라이선싱의 목적은 오존층 위협물질에 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물질 규제에 있다.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에 의한 수출입 라이선스 규제가 필요하다.

물품	수입 라이선스	수출 라이선스
직물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쌀	필요	필요
비정제 다이아몬드	필요	필요
전략 물품들	필요	필요
오존 파괴물질	필요	필요

또한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의 위임을 받은 정부 부서에 의해 수출입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물품	수입 라이선스	수출 라이선스	라이선싱 담당기관
중국산 약초 및 중국 특산 약품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냉동 육류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살충제 이외의 위험 화학품	필요	필요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기구	필요	필요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살충제	필요	필요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약학품 및 의약품	필요	필요	Department of Health
방사성 물질 및 방사능 처리 기구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직물 통제 정책

2005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직물·의류협약(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부합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직물과 의류에 대한 양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홍콩의 직물·의류산업은 쿼터제도 없이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4년 11월 21일 정부에 의해 모든 면허제도가 철폐되어 직물과 의류의 수출입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전략 물품 규제

무역·산업국은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비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당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역·산업국은 홍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무역센터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에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192차례의 불법적인 전략물품거래를 단속했으며 98개의 범법주체를 체포하여 118만 HKD 상당의 범칙금을 징수했다.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라이센싱을 발행하는 서비스 외에 홍콩의 무역·산업국은 홍콩 수출품들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다섯 개의 기관들은 무역·산업국 외에 원산지 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인인증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들이다.

-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원산지 인증서 발행은 Import and Export Ordinance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의 수출규제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다음 GACO들로부터 발행된 원산지 인증서들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에 의해 보호된다.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rtificate of Origin Processing
-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New Zealand
- Certificate of Origin - RE-export

SPS(위생검역)

식품 환경보건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의 식료품업 관련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다. FEHD는 제한품목(중국 차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를 내준다. FEHD는 또한 주류허가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한다.

2013년 한해 동안 FEHD는 7,537개의 식료품업 라이선스, 658개의 제한품목 허가, 1,556개의 공공오락시설 허가, 919개의 주점 및 클럽 허가 등을 발행하였다.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받고 있다.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2013년에는 약 65,000개의 샘플을 추출해 화학, 미생물, 방사선검사를 실행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99.9%였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채소를 운반하는 32,700대의 차량과 돼지, 소, 염소 등의 살아있는 식용동물을 운반하는 43,000대의 차량들이 식품 관리청과 동물검사청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500만 마리의 가축들이 동물 원성 질병에 관한 검사를 받았다. 2012년 6월에 통과된 식품에 대한 농약 관련 법안(「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은 201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12년 11월에 정부는 두 달간의 공공협의를 통해 유아 및 36개월 미만의 영아용 유동식품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은 2014년 6월 입법회 심의를 거쳐 10월 발효 예정이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들은 지정된 몇몇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제조업체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2013년에 CFS는 5,151개의 제품을 검사했으며 505개의 제품을 화학검사 하였다.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들은 전체의 97.71%였다.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은 2012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식품 거래업자들은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환경

홍콩정부는 정책 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평가도 적용한다. Public Works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s Finance Committee로 제출되는 모든 개발·정책 계획은 환경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법」은 특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에 피해 완화방안을 찾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EIA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고 필요시에 적용되는 피해완화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 111건의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모니터링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가 필수다. 「EIA법」에 따라 20헥타르 이상, 100,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의 경우 EIA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상의 주요 환경문제와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홍콩정부는 Green Manager Scheme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게 환경관리를 촉진한다. 모든 정부부서들은 지정된 green manager들이 있으며 연간 환경보고서를 제출한다. 2007년 이래로 모든 연간환경보고서는 홍콩정부가 대기 청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Clean Air Charter”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홍콩 내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환경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을 촉진한다.

New Territories 교외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2년에 정부는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10가지 법들이다.

- 「폐기물 처리법」
- 「수질오염 규제법」
- 「대기오염 규제법」
- 「소음공해 규제법」
- 「오존층 보호법」
- 「해양투기 금지법」
- 「환경영향평가(EIA)법」
- 「유해 화학품 규제법」
- 「상품 환경책임법」
- 「차량 공회전 금지법」

홍콩정부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 관련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 법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을 운영하여 환경보호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에 환경보호부 조사관들은 19,955건의 위반사례를 고발하여 759건을 기소하고 671만 HKD 이상의 벌금을 추징했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와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그리고 사용을 규제한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Ordinance)」의 허가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 협약을 따르는 것이다. WDO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바젤협약을 준수한다.

유전자변형품목에 대해서는 Cartag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적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의 국제거래를 관리한다. 유전자변형품의 수입 및 판매는 농수산보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지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들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위협종을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총 30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약 15만kg의 물품을 압수했다.

수입규제

홍콩은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법이 없으며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지식재산권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부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2016년에는 36,181개의 상표등록신청이 접수되었으며 35,504개(전년 대비 5.3% 감소)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2016년말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총합은 396,823개이다. 주요 10개의 신청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홍콩	13,336	프랑스	838
중국	6,550	영국	826
미국	3,823	독일	814
일본	2,350	스위스	729
한국	1,205	대만	565

「특허권 법령(Patents Ordinance)」은 중국 지식재산권부서, 영국의 특허청 그리고 유럽의 특허청의 특허 승인기준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 내의 공식 시험과정을 통해 단기특허권을 부여한다. 2016년에는 14,092개의 일반 특허권 요청과 762개의 단기 특허권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5,698개의 일반 특허권과 485개의 단기특허권이 승인되어 전년 대비 특허 신청은 15% 증가한 반면, 등록은 4.3% 감소하였다.

홍콩정부는 원천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과 단기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허권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에 홍콩정부는 4,936개의 디자인에 대한 2,515건의 의장디자인 접수를 받았으며 4,432개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7% 감소한 숫자다.

홍콩의 「저작권법」은 문학/드라마/음악/예술/영화 등 지역 내의 저작권자들을 보호한다. 국제적 관행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는 어떠한 요건도 없다. 홍콩정부는 2013년 이후 국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한다. 당국은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 등에 관한 보고사례에 대해 수사하며 광디스크와 스탬퍼(stamper) 공장의 라이선싱 규제를 유지하고 상업적 목적에 의한 위조품의 제조, 배포, 판매, 수입, 수출을 막는다. 관세/물품세국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 판매에도 대응한다.

2016년에 관세/물품세국은 124건의 저작권침해 사례를 적발하였고 158명의 위법자들을 체포하였으며 300만 HKD에 상당하는 물품(이 중 대부분은 광디스크)을 압류했다. 당국은 또한 노상 위조품판매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며 그러한 불법상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을 통해 위조품의 유통을 억지했다. 2016년에 관세/물품국은 845건의 위조상표 사례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1억 6천만 HKD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저작권침해와 위조품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해서 해당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매년 9개의 무역협회와 소매상들은 지식재산권부서의 “No Fake Pledge” 계획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교육(public education)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식재산권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지역 내의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알린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한다.

보조금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 산업에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인 부분은 물론 소프트웨어부문도 지원하여 기술개발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한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

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2016년 8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115.2억 HKD를 펀딩하여 총 7,028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년 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4년 7월말까지 4.7만HKD 가량의 지원금이 391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2012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이 ITF SERAP가 개선되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
-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트,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 HKD 규모이다.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총 연구개발비용의 30%에서 40%로 증가했다(2016년 2월 24일 개정).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11월 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 (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 체이다. 2015년 11월 현재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P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으며,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장

명세서 등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 건강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 제도가 없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년 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화물이 홍콩을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ROCARS는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해 복합수송화물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Intermodal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2012년 4월에 개시된 관세/물품세국 하의 홍콩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업들은 공인경제주체(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BT(기술장벽)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섯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재,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여기에는 중국 약초에 대한 정품테스트, 식료품에 대한 위생 관리 인증,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 등이 포함되어있다. 2012년 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폐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광둥 협정(Agreement between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gdong, 2014년 12월 체결)에 따라 홍콩의 테스트 기관은 중국에서 지정된 기관과 함께 홍콩에서 디자인되거나 시험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시험/인증 관련 업체의 광둥성 지역에 대한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 199건의 단속을 시행하여 3명을 체포하고, 33만 HKD의 물품을 압류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서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이 정확한지 또한 검사하였다. 2015년 기준 홍콩에는 총 640곳의 사설 실험실 및 인증/검사기관이 있으며, 13,580명의 관계자가 종사하고 있다. 동 산업이 홍콩 GDP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70억HKD에 달한다.

제품표시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하여 허위표사,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였다. 관세/물품세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방송/통신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관련법을 집행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이 홍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4%, 2010년 2.8%, 2011년 1.8% 정도의 낮은 비율을 유지한다.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의 13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 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40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 경쟁력 이외에 신뢰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 서비스 또한 고려한다. 홍콩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의 국내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하고 일치한다.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 서비스는 정부의 개발부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개발부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143만 HKD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나 400만 HKD을 초과하는 건설서비스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조달된다.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의 규모로 인해 이러한 선발적 입찰은 주로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한적 입찰은 드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5년 행정수반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최근 친환경 공공 조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정부에 의한 친환경 조달 규모는 11.3억 HKD로 연간 전체 조달규모의 40%에 육박한다. 2014년도 친환경 조달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40%는 2011년도 비중 22%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나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은 자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되며, 이는 홍콩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래의 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분야이다.

민간항공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홍콩에서 활동하는 국제 항공사들에 대한 규제는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홍콩과 중국내 다른 지역 간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허가는 홍콩정부와 중국정부의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텔레비전 방송	홍콩 내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이 홍콩의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참여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홍콩 내의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폭넓은 세금 감면혜택은 없다. 그러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은 합법적인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출입 서류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홍콩에 들어오거나 홍콩으로부터 나갈 때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는 홍콩이 국제적 의무(공중보건, 보안, 환경,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를 준수하기 위해 서만 필요하다.

정부의 전자거래서비스는 무역업자들이 전자상으로 특정 무역 관련 서류들을 제출도록 하여 효율적, 환경친화적으로 서류작업을 한다.

〈참고자료〉

Hong Kong Trade Policy Review (2010, WTO)

- Hong Kong 2014 (2015, 홍콩통계청)
- Hong Kong 2016 (2017, 홍콩통계청)
- 2016 Gross Domestic Product (2017, 홍콩통계청)
- 홍콩무역발전국 홈페이지
- 상무경제발전부 등 홍콩정부 홈페이지

2017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 · 대양주 －

◆ 인 쇄 | 2017년 12월

◆ 발 행 | 2017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